

■ 목 차

○ 해외사례	3
- ICA 사례공유 : 서울 CONGRESS와 ICA 2030 전략계획	5
- JCA 사례공유 : JCA 설립과정과 전망	9
○ 성과공유	13
- 2020협동조합 미래포럼 지역분과보고서	15
- 2020협동조합 미래포럼 업종분과보고서	21
- 2020협동조합 미래포럼 정책분과보고서	27
- 2020협동조합 미래포럼 종합결과보고서	33
○ 토론문	47
○ 분과의견서	67
○ 부록	179
- 협동조합 정체성인식조사 분석	181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DECADE 2030	221
- 사람중심의 협동조합 두 번째 10년 전략 2030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237

해외사례

서울 CONGRESS와 ICA 2030 전략계획

: 브루노 롤랑츠(ICA사무총장)

JCA 설립과정과 전망

: 후루무라 노부히로(JCA 이사)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ICA사례 공유



서울 CONGRESS와 ICA 2030 전략계획

브루노 콜랑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사무총장

2020협동조합미래포럼

□ 서울 CONGRESS와 ICA 2030 전략계획 : 브루노 롤랑츠



- 브루노 롤랑츠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

먼저 협동조합 미래포럼을 기회로 나를 초대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큰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25년 전에 설립되어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11개국에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세계협동조합운동의 목소리이다. 그런 연맹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고 싶다. 또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 그리고 제33회 세계협동조합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협동조합운동 전체가 보내준 지지와 협력에도 감사를 표한다.

서울Congress는 많은 점에서 특별하다. 먼저,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125년의 ICA 전체 역사를 통틀어 유럽 밖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대회라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주관한 대회는 평균적으로 12~13년에 한 번씩 매우 특별한 시점만 개최되었다. 둘째, 이번 대회는 1995년 개최된 대회와 그 이전 1937년과 1966년의 단 두 차례 대회처럼 협동조합 정체성과 그 구성요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다름 아닌 하나의 세계적 현실로서 존립하는 데에 중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번 대회는 2019년 10월의 키갈리 ICA총회에서 새롭게 승인된 ICA 2020-2030 전략계획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이 전략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개최된다는 것이다. 넷째, 이번 대회는 최근 100년의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최된다는 점이다. 팬데믹은 보건, 환경, 경제,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포스트 팬데믹 시기 인류가 내릴 많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선택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협동조합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Congress는 ICA 2020-2030 전략계획의 핵심 주제이기도한 협동조합 정체성 관련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향후의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이들 주제의 적합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첫째, 대회는 교육, 문화, 포용성 등의 몇몇 주요 관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대회는 경쟁, 기술, 가치사슬, 자본, 혁신 등의 관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이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어떤 이점을 지니는지 고찰할 것이다. 셋째, 대회는 환경, 개발, 평화, 경제위기 등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들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성찰할 것이다. 넷째, 대회는 고용, 보건, 식량 안정, 주거, 에너지에 특별한 초점을 맞춰 협동조합 정체성이 어떻게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할 것이다.

서울Congress가 2021년 12월로 1년이 연기되었지만 대회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의 보건·경제 위기가 그 형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의 대회 연기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서는 이번 행사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여는 상징적 개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모델은 지구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뉴 노멀" 시대의 사업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 협동조합 운동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추진력이 대회를 통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매우 생산적인 토론회가 앞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내년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서울 Congress)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JCA사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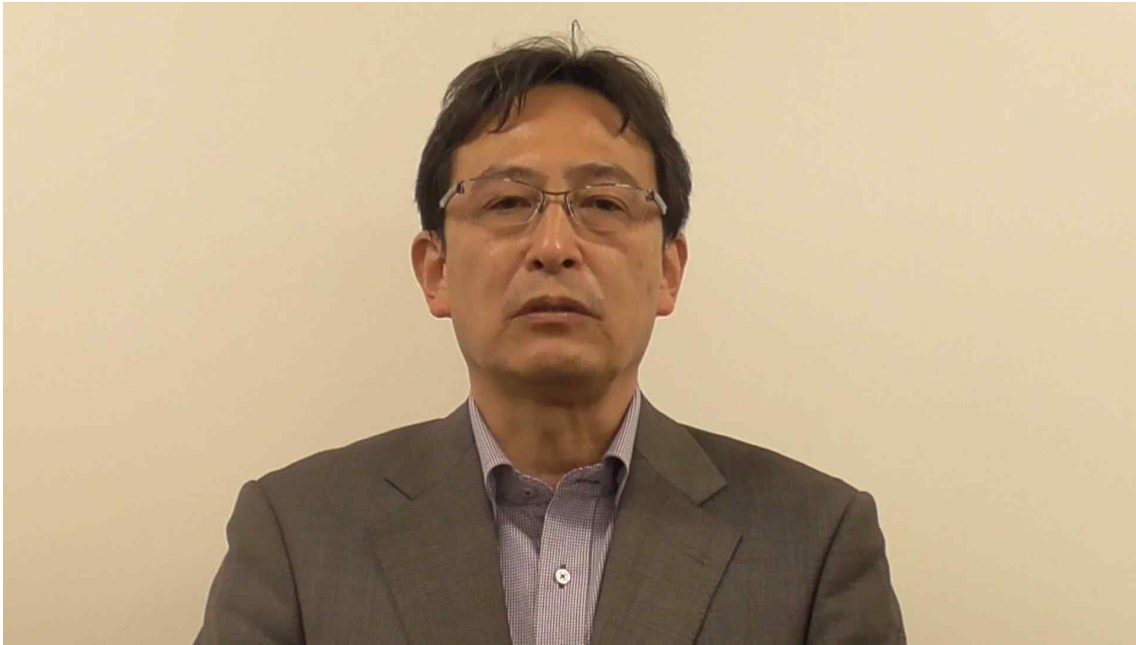
JCA 설립과정과 전망

후루무라 노부히로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 이사

2020협동조합미래포럼

□ JCA의 설립과정과 전망 : 후루무라 노부히로



- 후루무라 노부히로 :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 이사
일본노동자협동조합(워커즈 콰)연합회 이사장

협동조합 미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나는 일본노동자협동조합(워커즈 콰) 연합회 이사장이기도 하나 오늘은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 이사로서 축하인사를 보낸다.

JCA는 2018년 4월에 농협, 소비생활협, 어협, 산림조합, 금융·공제 협동조합, 의료관련 협동조합, 대학생 협동조합,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 등 각 섹터의 19개 연합회가 1호 회원으로 가입하여 2호, 3호 회원으로 650개가 넘는 협동조합 조직이 참여한 연계 조직이다. JCA 설립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역사가 있었다. 1956년에 일본협동조합연락협의회(JJC)가 설립되어 농협, 생활협, 어협, 산림조합 등 ICA(국제협동조합동맹)에 가입한 협동조합들이 모여 주로 국제활동 창구로 활동을 해 왔다. 우리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는 1999년에 JJC에 가입하여, 그 후 노동금고협회나 의료 생활, 대학생협 등이 가입함으로써 JJC가 다양한 조직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2012년 "국제협동조합의 해 (IYC)"에는 "국제협동조합의 해 기념 협동조합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 협의회에는 JJC가맹단체와 함께 신용 금고, 신용 조합, 노동복지단체 등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모여, IYC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렇듯 일본의 협동조합은 다양한 경험을 거쳐 연대의 관계를 쌓아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나 빈곤, 고립이라는 사회적 과제. 이러한

지역과제에 협동조합이 단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연대해 대처하자’라는 기운이 역사 속에서 양성되어 JCA의 설립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새로운 협동조합의 전국적인, 지역에 뿌리를 둔 연대를 심화해 나가자는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2018년에 "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JCA)"가 설립되었다.

JCA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 보다 나은 삶, 일자리 만들기"를 기본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 조성을 협동조합이 연대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회적 과제가 많다고 들었다. 이러한 일본의 조직적 연대 활동은 한국 여러분께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 더 나은 삶, 일자리 만들기"라는 기본 목표는 서로 다른 성격과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들이 수평적 연대를 통해 목표를 향해 활동해 나갈 것에 더 많은 기대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과 임업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한 소비생협을 비롯한 생협의 활동, 기타 서로 돕는 방식으로서의 공제, 금융,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람들의 협동조합이 하나로 모여 "지역"이라는 주제로 손을 맞잡는 것. 이것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큰 사회 섹터로서의 역할이 기대 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현재 저희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협동조합이 드디어 법제화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협동조합법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 정비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관련 협동조합 법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 한국에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성립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다. 일본의 협동조합법제도 한국을 따라잡는 형태로 비로소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법이 갖춰지고 있다. 나아가 연대의 연결고리, 그리고 커다란 연대의 요체로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마침내 전국 협동조합들의 힘을 받아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노동자 협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목적은 앞서 소개한 JCA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협동조합 분들이 역사적으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노동자협동조합법 제정에 힘써주었다. 이것 또한, 새로운 연대의 질이나 확대의 폭을 확인 할 수 있는 일로서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일들이었다. 이러한 일본 협동조합의 경험이 한국의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국의 협동조합과 일본의 협동조합이 상호 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상호간의 협동조합 발전을 함께 기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협동조합 미래포럼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다.

성과공유

지역별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협업 방안

- 유수일(광주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장)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 방안

- 경창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 강민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2020협동조합 미래포럼 종합결과 보고

- 박강태(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지역분과보고서



지역별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협업 방안

유 수 일

지역개발 분과위원장

2020협동조합미래포럼

1. 지역별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강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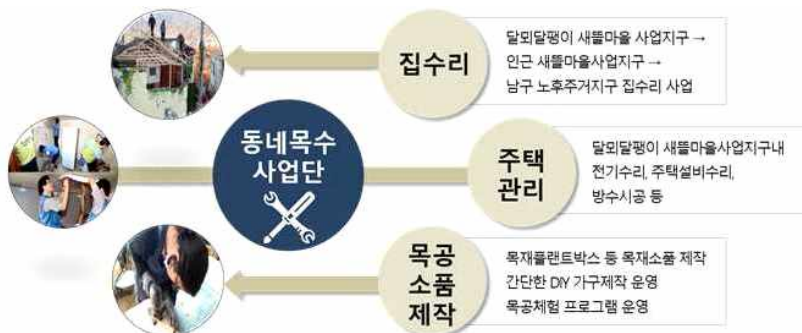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 및 성장

-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협동조합 사업
 - 집수리, 주택개보수, 주택정비자금 지원 등 주민 참여형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젊은 계층과 근로자, 노인계층, 사회취약 계층 등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 추진
 -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한 골목길 재정비, 주차장 조성, 공·폐가를 활용한 텃밭 만들기, 쌈지공원, 쉼터조성 등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지역 거주민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인식, 공동체 사업, 공동체 운영, 주민조직화, 교육 등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마을미디어 발간, 마을협동조합 구성 등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과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커뮤니티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지원

-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배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프로그램 도출
 - 협동조합 구성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상업지역 내 빈 상점 및 공·폐가 활용)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Net-work 사업
 - 다양한 주민제안사업 발굴·육성

- 마을 소식지 발간, 마을 축제 기획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주민조직 지원, 협동조합 리더 양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역량 교육
 - 주민의식 고취와 협동조합 역량 배양으로 지속가능 마을을 창출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마중물사업의 연계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마을 협동조합 집수리 사업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집수리 : 도배장판, 창호교체, 보일러수리, 지붕수리, 화장실 보수, 리모델링 등



2. 지역별 협동조합들의 특성과 장·단점 : 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자리와 인구 모두 사라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산하 일자리 사업평가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소멸위험지수는 포항시 0.629, 광양시 0.895로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속하는 수치다.

이런 와중에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일본 후쿠이현 사바에 시(市)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인구 7만여 명이 채 되지 않는 후쿠이현 사바에 시(市)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은 없지만,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콘테스트를 통해 시정 발전 계획을 세우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과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보육,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바에 시(市)는 일본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삶터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사례로는 산림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다. 국내 산촌은 영세한 산업구조와 낮은 경제성 탓에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전체 산촌 가운데 97%가 소멸위험에 빠져 있을 정도다. 산림이 가진 탁월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외면으로 일관한 인과응보다.

변화의 조짐은 2018년 충남 태안에서 시작됐다. 산림청이 안면채종원에 접한 4개 마을(중장1리, 중장2리, 중장4리, 누동리) 주민에게 채종원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다. 채종원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 조림에 필요한 우수 산림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일종의 산림 과수원인 셈이다. 1981년 99ha 규모로 조성된 안면채종원에는 국내 곳곳에서 발굴한 우수 소나무가 철저한 관리 속에 자라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면지소가 담당했던 안면채종원 관리업무를 4개 마을 주민 공동체가 설립한 협동조합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줄이고, 주민 일자리와 공동체성은 강화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산림청의 제안을 받아들인 마을 주민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립 당시 5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불과 석 달 만에 200명을 돌파했다. 4개 마을 주민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숫자다. 설립 1년만인 지난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채종원둘레사람들협동조합은 올해부터 안면채종원 관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정이 직접 담당했던 산불 보호를 비롯해 소나무 종자(솔방울) 채취, 소나무 거름주기와 같은 주요 사업들을 위탁받아 수행했다.

3. 지역별 협동조합 사업체들의 협업 방법 제시

: 농협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간 지역 내 협력사례 및 시사점

□ 한살림안성마춤식품

- 사업내용 : 두부 제조 및 체험
- 협력유형 :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간 협력(생활협동조합/안성시 6개 농협)
 - 농협 : 출자, 콩 등 농산물 공급, 유통망 제공
 - 한살림연합, 한살림 회원 생협 : 출자, 소비지정보·유통망 제공
 - 푸른들영농법인, 한살림가공생산자 : 출자, 노하우 공유, 가공지원(업무제휴)
- ※ 상품판매·홍보 : 농협하나로마트, 한살림 매장
- 협력효과
 - 농산물 판로 확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
 - 이종 협동조합 간 상생협력 모델 기반 확보

□ 엄마손꾸러미

- 사업내용 : 경기 안성시에서 컬러배말랭이 등 생산
 - 배, 도라지, 대추, 비트 등 국내 생산 농산물 활용 제품 생산
- 유형 : 영농조합법인(귀농 다섯 농가가 설립)과 농협 간 협력
 - ※ 가공공장 설치비용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이 어려운 현실은 감안하여, 가공공장 운영 농가를 참여시킴
- 농협의 역할 : 귀농인 창농 지원
- 협력효과 : 안정적인 판로 확보, 귀농인 정착 지원 강화

【 시사점 】

-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주체 간 협력 또는 이종협동조합 간 협력 필요
 - 농협과 이종협동조합 간의 협력은 농촌지역 주민,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기여
 - ☞ 예시) 농협과 생협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은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산물 구매 기회 확대

4. 지역별 협동조합의 협업지원 체계 확립 방안 제시

: 제주지역 협동조합 협업지원

■ 사업 부분

1) 도내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지원

- 추진목적 : 협동조합의 지역 공동체성 강화 +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업종별 연합회에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의 사업 지원
 - 지역별 연합회에 지역 유희자산 운영 위탁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2) 연합회 역할 강화 지원

- 추진목적 : 연합회의 위상 제고를 바탕으로 연대를 통한 자생력 강화
- 주요내용
 - 연합회를 통한 회원 협동조합 자율감사 대비 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 연합회 회원 조합의 교육 및 컨설팅 수요 발굴 & 자체 교육 설계 지원

3) 협동조합 간 협업 사업 발굴 기반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추진목적 :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협동조합의 날 행사실시
 - 협업 사업 발굴 및 정기적 소규모 네트워킹 행사

■ 제도 부분

1) 협동조합 전담 주무관

- 추진목적 : 법인격인 협동조합과 면허제인 사회적기업 등 업무 분리
-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제도 활용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전담 직위 또는 부서 신설
 - 경제정책과 및 소상공인 기업과 등 도청 내 유관부서 연계 권한 부여

2)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협의회 구성

- 추진목적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방향 제시를 위한 민관 협의체
- 주요내용
 - 도청 / 각 연합회 / 중간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례화
 - 추후 기재부 소속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정비

5. 기타 (자유 의견)

: 협동조합의 창업지도자 2급 자격증 과정

■ 교육 사업

1. 교육 목표

정부 시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을 장려하고자 시도
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형 창업 컨설팅이 가능한 협동조합 창업지도자를 양성

2. 교육 목적

- 1)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 2) 경제 민주화 실현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비즈니스모델 수립
- 3) 협동조합을 통한 scale up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

3. 교육 방법 : 언택트 방식(동영상 20시간, 비대면 강의 25시간)

4. 연수 인원 : 회당 30명 내외

5. 연수 이수 시간 : 45시수 교육(시험 후 자격증 수여)

6. 주최 주관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업종분과보고서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 방안

경 창 수

업종개발 분과위원장

2020협동조합미래포럼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여러 곳에서 사회적경제는 연대경제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7원칙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현대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33차 ICA 대회 발표하려던 전략계획 4개 중 3번째가 ‘협동조합간 협동’입니다. 협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칙과 전략계획에 이렇게 중요한 ‘협동조합간 협동’은 동종연합회라는 씨줄과 지역연합회라는 씨줄로 강고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는 첫 번째로 ‘협동조합 연합회 역할 강화’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업종과 지역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세계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그 중요성을 너무나 명백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협동조합 미래 포럼에서는 4개의 업종연합회(공동육아,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전문가들(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북서울신평,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이 참여하여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업종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를 진단하여 보면 더디게라도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종연합회의 경우 임의단체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20년 전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성과이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협동조합(이종이라는 용어는 빨리 고쳐야 한다고 의견 일치)에 관하여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10월 15일 대경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1호로 인가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개별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향후 연합회가 참여하는 연합회를 만들 수 있는 법률이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위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필요와 욕구에서 시작되듯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아직은 필요와 욕구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도 업종 내에서든 이종협동조합간 연대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협동조합이 확산되고 성장하는데 연합회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현재의 연합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신규협동조합 설립지원, 브랜드개발, 컨소시엄 시업을 통한 사업 전개, 인적자원개발, 홍보, 자체 사무 행정, 사업개발 및 확산, 조사 연구, 정보공유, 정책개발, 거버넌스 활동, 입법 추진, 연대사업 등의 업무를 실무자 1~2명으로 벅차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다. 여러분들이 연합회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도 개별 협동조합 지원에서 협동조합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협동조합 연대의 핵심은 업종연합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업무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강력한 사업연대까지 나아가게 하기에는 현재 역부족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모두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법적, 행정적인 요구가 많았고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연합회만 살펴보면, 신협이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에너지협동조합에서의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개별법 협동조합과 동등한 세제 혜택 요구, 공동육아협동조합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공증면제 요구,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바우처 제도 및 돌봄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요구 등 많은 법적, 제도적 요구가 여러 연합회 차원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규제 개혁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과감한 조처해야 합니다.

단위조합들의 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다루는 자본의 양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신협이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금융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황무지에서 이 정도라도 공급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것으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 사회적금융환경이 좋아지더라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를 기본으로 자립하는 원칙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업종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최종 목표는 한국협동조합연맹 같은 협동조합 총진영의 연합체이겠죠. 그러나 10년 동안 이러한 강력한 연맹을 결성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UN이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고 2020년까지 9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협동조합 발전전략을 펼쳤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각 연합회가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고 편차가 너무 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 국민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고 하는 실체가 광범위하게 보여야 하기에 10년 동안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협, 생협 진영은 어느 정도의 연합회의 실체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협동조합연합회(83개)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20개)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동종협동조합연합회는 계속 설립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초보적인 연합회 내부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원 협동조합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네

트위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앞선 조합이 뒤쳐진 조합을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연대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공동 구판이나 유통, 공동 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제도개선과 시장확대를 위해 연합회가 나서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업종연합회는 지역의 여러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연합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회원조합들의 회비가 기본이 되고 자체 수익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결속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앞선 연합회들도 이러한 신생 연합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임의 단체기간까지 합치면 20년이 넘는 업종연합회도 규모화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업종연합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연대해서 큰 전략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업종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출자금, 조합원 수, 매출 등 기본요소들을 수치화해서 2030년까지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금은 그 협동조합의 규모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치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조합원 수(조합원 수가 중용하지 않은 업종도 있음)와 함께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합회가 이러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동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협은 228개 자치구마다 1개씩 설립하기 위해 1년에 20개씩 만든다든지 하는 양적 수치를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출자금을 통한 자본을 튼튼히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자체 공제기금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자금확보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사회적금융과 함께 많은 진전을 이루었듯이 많은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들이 협력관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관계도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금융환경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방자치 제도도 많이 발전해 나가리라 예측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연합회가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겠지만 업종 연합회의 성격에 따라 지역 거버넌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도 좋은 성과이고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레생협의 각 지역에서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좋은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합회에 가입한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는 자율감사를 제시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소속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천 수만 개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하였습니다만 무늬만 협동조합의 탈을 쓰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도 많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전체를 욕 먹이고 신뢰를 추락시켜 협동조합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소속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협동조합 정체성

에 맞게 운영되게 지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총연맹이 출범하더라도 이러한 연맹과 연합회의 감사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업종분과 토론회는 업종연합회를 주제로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의 업종연합회 전체를 포괄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조사와 연구작업이 이루어져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끝에 이야기하다 만 업종연합회와 각 지역의 지원기관간 역할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이냐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충분히 토론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하여 발표하였지만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는 첫 번째 과제 '기후변화'에 전 협동조합 진영이 선구자적으로 함께 실천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 협동으로 무장한 튼튼한 협동조합이 대세를 이루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시대를 앞당기는 꿈을 꾸며 글을 마칩니다.

정말 바쁘신데 끝까지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정책분과보고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강 민 수

정책개발 분과위원장

2020협동조합미래포럼

□ 지원체계의 개념

○ 개념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 의해 수행되는 협동조합 정책 중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연계망을 말함

그림1. 사회적경제 정책전달체계



출처 : 한국의 사회적경제(20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개념의 확장

- 지원체계 또는 정책전달 체계를 정부의 정책으로 한정하지 말고, 민간의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사고하여야 함
- 이에 협동조합의 지원체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연합회, 민간전문조직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협동조합의 정체성

○ 협동조합 정체성 논의의 필요성

- 바람직한 협동조합 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20,000개 이상 설립, 운영 중인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필요 함

○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란?

- ICA는 탄생 100년이 되는 1995년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을 정체성 선언하였음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and soci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 ICA의 협동조합에 관한 정의는 1)주체 2)목적 3)조직성격 4)소유 및 운영방법 5)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1)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이며 2)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3) 인적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4)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5)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라고 하겠음

- ICA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체성 선언은 국가별 입법의 기초가 되거나 협동조합 교육에 있어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정체성

-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협동조합 다음 또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아래의 논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협동조합 정체성 논의에서 포함해야 할 개념들

자조, 자율, 자치
호혜성, 민주성, 연대성
상호성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기업의 소유권 (재산권)¹⁾

- 이상의 개념을 기초로 협동조합 정체성 논의를 확장해 나가야 하며, 2021년 ICA 서울 대회에서 심화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구조

○ 바람직하다는 것의 의미

-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당사자를 지원체계 구조 내에 포함하여 한다는 것을 의미

○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대한 평가

- 일반적 생각과 다르게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음

○ 지원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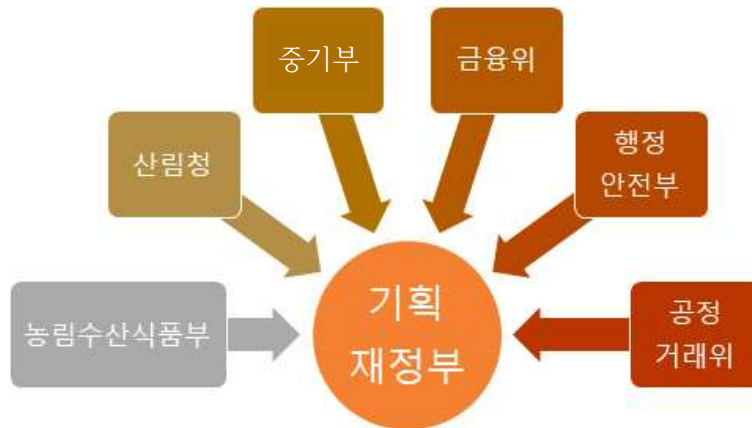
- 민간은 협동조합을 스스로 규율하고, 행정은 협동조합을 장려함
- 협동조합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 통합지원의 의미

- 첫째,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지원하지 말 것

1) 재산권(property right)이론은 조직구성원이 제공한 생산요소에 귀속되어 있는 권리의 계약관계에 관심이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의 유인행위는 재산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재산권'이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자산 혹은 이익에 대하여 명시된 권리나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 상 소관부처 현황



- 농업협동조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수산업협동조합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산림조합법 : 산림청 산림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외청)
-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국무총리실 소속)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벤처부 정책총괄과

- 둘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지원하지 말 것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조달역량 강화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 및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조달역량 강화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대상	대기업(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기간	20.10.15(목) ~ 20.11.26(수)	
교육 방법	프론트-99 예방을 위한 온라인(ZOOM) 실시	
교육 일정	각 2주씩 14:00 ~ 16:00 (2시간)	
일차	일정	교육내용
1	10.21(수)	사회적기업 지원
2	10.28(목)	공공구매 계약 실무
3	11.03(수)	공공구매 계약 실무
4	11.09(수)	다수종교간 협력(FASS) 실무
5	11.23(목)	한국사회적기업 협회 실무
6	11.26(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활동 가능성 관련 강연(대중)

신청 방법 : 내선번호 온라인 신청 (선착순 마감)
문의 사항 : 02-958-3381 | yoon@careerice.c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와같이 협동조합 지원에 있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지 않아야 하겠음

-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 지원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것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종합보고서

박 강 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

2020협동조합미래포럼

서론

한국의 협동조합인들은 2020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기획하는 협동조합미래포럼을 개최하였다.

최대한 많은 협동조합조직과 협동조합인들이 참여하는 집합적 토론의 장을 만들고 협동조합 현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로에 대한 중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포럼은 지역과 업종을 망라한 기본법 협동조합조직, 생협, 신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 협동조합 학회, 협동조합 지원기관, 협동조합 정책당국 등 협동조합과 관계된 거의 모든 부분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20협동조합미래포럼은 부제를 ‘2030협동조합미래개발 대토론회’로 정하고 2020년 10월 13일 오프닝웨비나를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협동조합 미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충분히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어 이번 토론은 향후 10년간 벌어질 수많은 토론의 일부이자 출발이라는 의미를 두기로 하였다.

지역개발, 업종개발, 정책개발 세 부분으로 토론 구도를 설정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분과별로 소주제를 정하여 11월 13일까지 분과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외 온라인 의견수렴, 인식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 24일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성과발표회를 끝으로 종료하였다.

이 보고서는 포럼 전 과정의 논의를 종합한 보고서로서 11월 24일 성과발표회에서 발표되고 검토되었다.

엄형식 ICA전략분석담당과 장승권 성공회대학교수,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가 기초발제를 담당했고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 우수일 광주시협동조합협의회장이 각각 정책개발, 업종개발, 지역개발 분과위원장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었다.

[분과위원 명단]

분 과	위 원	소 속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유수일 강성복 김민석 김정원 김호곤 김홍섭 박미옥 서재교 이재배 추영민	광주시협동조합협의회 대구쿠팡협동조합연합회 경상남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영등포구협동조합협의회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전북우리협동조합연합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업종개발 분과위원회	경창수 김경환 김준모 문보경 신동한 유길의 장지연 전재홍 정영화 최현호	한국의료복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단법인커뮤니와경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북서울신탁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강민수 김대훈 김병규 김아영 송재일 양찬희 윤형근 이상윤 이현배 최은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세이프넷지원센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성공회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명지대 법학과 중소기업중앙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과 성남주민신탁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위의 분과위원 명단과 같이 많은 분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분과위원으로서 토론에 임해주었고 김대훈, 이현배, 장지연, 전재홍 분과위원과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안인숙 해봄사회적협동조합 감사는 성과보고회 토론자로 나서주었다. 브루노롤랑츠 국제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과 일본협동조합총연합 사무국에서도 사례발표를 통해 참여해 주었고 이선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인식설문조사를, 김동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과 CN협동조합, 협동조합본부 제도지원팀은 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었다.

이 외에도 많은 협동조합인들이 포럼 현장 또는 온라인 중계로 함께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본 론

1. 현황 평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결정한 UN총회 결의안의 일부이다.

- “3.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4. 또한 정부는 협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 및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약들을 제거하는 관점에서 법적, 행정적 제약의 검토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UN의 권고에 힘입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갖춰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의 가장 큰 사건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꼽는다 해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포럼 전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어디까지 왔는지 전체 상황을 대략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었다.

기본법 협동조합 수가 2만 개에 육박했고 크고 작은 업종조직과 지역조직이 생겨났으며 초보적 수준이지만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이르렀다. 이 가운데는 제법 규모 있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출현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새로운 업종과 넓은 지역에 협동조합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개선에도 진전이 있었다. 5차례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가 반영되었고 여러 가지 차별과 제약들이 제거되었으며 기존 금융권의 차별완화에 더해 사회적금융의 형성으로 다소나마 자금조달 접근성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로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본부, 전국 16개 위탁지원기관들이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간 1~2차에 이어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희소한 상태에 있는 지자체 설립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과 춘천에 설치되어 지역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하고 있고 거의 모든 광역에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부분적으로

협동조합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생협과 신협을 선두로 개별법 협동조합들과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교류, 협력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첫 사례가 선을 보이는 등 지역 내, 지역 간, 지역과 업종, 업종 간에 간헐적이거나 점층적이 형성되어 나가고 다소간의 협력 사례도 증가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적지 않은 협동조합들이 생성되었고 초보적이거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나름의 지원체계가 작동하고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미약하지만 기본법과 개별법 경계가 흐려지고 협동조합간의 자생적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협동조합 제도의 진전은 협동조합조합의 생성과 확산에 확실한 지렛대 역할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부실한 협동조합의 양산이라는 부정적 결과도 동반되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협동조합의 가동률이다. 협동조합 좀비론, 협동조합 무용론 등 부정적 논평이 회자 됐었고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회적경제로 인정할 것인지 회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등 부실협동조합, 불량협동조합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확히 측정된 통계는 없지만 적게는 1/2, 많게는 2/3까지 휴면조합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법이 발효 이후 물꼬가 터지듯이 협동조합들이 생겨나면서 그중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준비가 안 된 채 협동조합을 시작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거나 유인되어 협동조합을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과잉기대와 오해를 갖거나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겠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협동조합 제도의 진전은 협동조합의 생성과 확산을 촉진하지만 협동조합 제도만으로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발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게 해주었다.

협동조합제도는 협동조합의 최소강령을 규율한다면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의 최대강령을 추구한다. 협동조합제도는 협동조합의 외연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의

내포를 강화한다. 운동 없는 제도는 맹목이고 제도 없는 운동은 공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하여 협동조합 제도를 획득하고 양적 팽창을 감당하는 경우와 협동조합운동이 미비한 가운데 협동조합 제도로 터진 물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경우는 협동조합 전개 양상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협동조합운동이 왜소한 가운데 확장된 제도의 공간은 진용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했다. 전방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운동이 미력한 상태에서 협동조합 제도로 후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전후방 간의 간극이 없는 혼란상태, 오히려 제도가 선행하고 운동이 후행하는 역전상태가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현황을 평가하면서 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공감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을 보다 협동조합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며 협동조합이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의 대안이 되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 역할을 증진하는 의식적 활동을 포함한다.

향후 10년간 불균형한 협동조합 진용을 재정비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은 협동조합의 중요한 과제이다. 가야 할 길이 멀고 과제가 작지 않지만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담대하고 긴 호흡으로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향후 10년의 방향과 진로

2-1 협동조합운동 강화의 핵심은 협동조합 정체성의 강화이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역동적인 상황은 기존 협동조합들과 새로운 협동조합 모두에게 다시 한번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계기를 안겨주었다.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은 다른 존재인가?
법적 협동조합과 진정한 협동조합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당신은 협동조합입니까? 당신은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입니까?

협동조합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회구성요소의 하나로 그 고유성을 인정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인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협동조합을 선호하여 협동조합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나라 협동조합인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과제는 협동조합 본령에 따른 활동을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이 보다 나은 생활의 대안이 되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하며 기본적인 노력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모두가 수준 높은 정체성을 애초부터 지니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협동조합을 하면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협동조합 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이다. 그 과정에 적응하며 변화 발전하는 사람과 조합은 성장할 것이고 주소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잘못 태어난 조합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이 부족하거나 어설픈 협동조합들이 생겨난다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협동조합은 생활상 필요가 있고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참여로 외연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책임은 오히려 협동조합운동에 있다. 협동조합운동이 강성하면 입문하는 최대한 많은 협

동조합들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토양이 될 것이고 있을 수 있는 불량요소의 입지는 효과적으로 축소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을 희망하는 이들이 유력한 경로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접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며 충실하게 준비하고 설립 이후에도 협동조합관계망을 통해 생동하는 모범과 규범을 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기대한다면 이는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가능하다.

2-2 협동조합의 전체조직화를 발전시키자.

협동조합 정체성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협동조합 정체성의 주요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 중 앞의 5원칙은 내부작동원리로서 각각의 협동조합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할 협동조합 정체성의 요체이다. 협동조합 7원칙 중 뒤의 2원칙은 외부작동원리로서 협동조합들 사이에서 작동되고 협동조합조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집합적 정체성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자족적인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남들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정체성의 정수이다.

정체성은 협동조합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고민과 토론, 많은 도전과 경험들 속에서 모범과 규범이 창출되고 전통과 문화로 전화되어 축적되는 과정에서 강화된다.

협동조합 정체성은 문헌에만 있는 관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협동조합들이 역사적으로 구축한 전통과 문화로 실체가 된다. 이러한 전통과 문화의 존재는 협동조합들에게 협동조합 정체성을 쉽게 느끼고 동화되며 내면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문화의 형성 과정을 구축하고 담지할 그릇이자 관리 주체인 협동조합조직과 귀를 같이 해야한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조직의 구조가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의 관계망 속에서 정체성은 확인되고 자극되고 성장할 것이다.

협동조합 정체성은 선언과 표방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외화됨으로써 실체가 된다. 제도가 규율하고 있는 공동소유와 민주적 절차 이상으로 협동조합 가치

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동을 촉발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이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삶으로부터 배우고 전수되는 것이 기본이다. 선배 조합원의 삶과 행동을 보고, 선배 조합의 활동을 보고 닮아가고 유전되는 집단적 문화와 전통이 일정 수준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020협동조합미래포럼은 분절되어 있던 주제들을 연결하여 그간 미진했던 협동조합운동의 현재를 재인식하게 해 주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한 계기로 기획한 행사였으나 이러한 토론이 일상적이고 세부적이며 협동조합 전 층위와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느끼게 해 주었다.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과 수단들도 개발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임원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의 소정교육 이수 의무화 하거나 산업안전교육처럼 협동조합조합원이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연합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 경영공시나 연합회 감사제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점검하는 방안 등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협동조합은 정체성 강화를 중심으로 전체 조직화를 증진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정체성은 관계망 속에서 발견되고 성장하며 증식하고 강화된 정체성은 협동조합 본령의 실현을 촉진하여 협동조합의 내부작동원리와 외부작동원리의 다른 행동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포럼 기간 중 실시된 인식설문조사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2-3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앞에서 정리했듯이 협동조합 운동이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펼쳐야 할 노력은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와 전체 조직화를 진전시킴으로써 각 영역과 층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협동경제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지난 기간 자생적, 일회적,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긍정적이고 우량적 요소를 향후 10년간 정체성과 조직의 강화를 통해 보다 의식적, 상시적, 전체적으로 증진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활동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도전, 사례와 모델 등의 출현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협동조합조직망을 타고 공유되고 토론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적용되고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협동조합 전 부분과 영역에서 협동조합 활동의 성과와 진전을 측정하고 분석하며 유효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계획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많은 도전적 활동들을 유발하는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전국과 지역에 협동조합조직, 지원기관, 정책당국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운동을 주도하고 발전시키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이러한 노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 전국과 지역의 협동조합 운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협동조합조직의 상근자, 활동 공간, 프로그램과 예산 등을 적당한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협동조합운동의 효과는 협동조합운동에 동원되고 이용되는 자산과 자원에 비례할 것이다.

2-4 협동조합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인들이 협동조합을 보다 협동조합답게하고 협동조합 정체성에 따라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이다. 당사자의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을 진흥하는 국가와 정부의 지원과 협동조합 이외의 다른 사회요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시행착오를 통해 갈필을 잡아가듯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또한 빠른 시일 안에 맥락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간 정책당국이 협동조합 지원에 소극적인 원인 중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조, 자립, 자율 등의 원칙을 가진 대상에 대해 어설픈 지원에 나설 수도 없고 특성에 걸맞는 지원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은 아이디어도 공감대도 부족해 여러모로 난감할 수 있겠다 싶다.

어쨌든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설립행정지원과 법제개선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 등 제한적인 상태인데 더 아쉬운 점은 이 중에서 가장 적극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시행 효과가 잘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는데 있다. 3차 기본계획의 시행상황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특성에 적합한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람직한 협동조합 지원은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나아가 협동조합운동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정체성 증진을 중심에 둔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한 결과는 분명 사회적 기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지원은 협동조합 조직화 활동, 협동조합들의 교류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협동경제개발을 육성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유효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특질을 이해하고 협동조합 운동과 제도 사이에 권장되어야 하는 많은 활동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활동과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지방정부의 인식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중앙정부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성격이나 정책기관의 인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협동조합에 적합한 지원이 일관되고 정합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정책 근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아직 협동조합조직의 형성이 미진하고 정체성 강화, 교류와 협력 증진, 사례와 모델의 개발 등의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능 등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사회의 이익과 연결되는 만큼 공공의 적절한 역할을 터부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상태에 적합한 지원이 제때 적절하게 시행됨으로써 실기하지 않고 협동조합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지퍼나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지원방법과 체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되고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결론

2020협동조합미래포럼을 통해 주요 협동조합 관련 이슈에 대하여 협동조합인들의 공통 인식을 모으고 중론을 도출하여 향후 10년 보다 진전된 공조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였다.

이런 포부에 사로잡힌 나머지 포럼의 부제를 미래개발 대토론이라 명명하고 지역개발, 업종개발, 정책개발이라는 거창한 토론 구도를 설정하는 과욕을 불렀지만 역시 집단지성은 훌륭했다.

토론 과정을 통해 개발의 실행은 오히려 결과이고 그것보다 선행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협동조합운동의 강화이고 그 핵심은 정체성 강화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ICA가 125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서울콩그레스의 주제가 왜 ‘협동조합 정체성의 심화’인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그 의미가 매우 심대하다.

우리 사회에서 펼쳐질 장대한 협동조합의 역사를 상상하며 도래하는 새로운 10년 동안 정체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일적으로 전개할 것을 모든 협동조합인들에게 제안한다.

정체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조직의 성장, 협동조합들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 머지않은 미래에 생활의 대안이 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경제의 융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협동조합 정체성의 등대이자 교류협력의 구조로서,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본산이 될 한국협동조합총연합(KCA)이 탄생될 것을 고대하며 하루빨리 모든 협동조합들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는 협력과 연대에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코로나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협동조합들은 자신조차 돌보기 벅차서 코로나위기로 위협받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적극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전체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답게 대처한다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기대 섞인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이와 같은 아쉽고 혼란한 상황이 감동적인 협동조합의 활약상으로 변모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하면서 다짐하듯 다시 한번 묻는다.

당신은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입니까?

2020년 11월

토론문

2020협동조합 미래포럼 토론문

- 김대훈(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2020협동조합 미래포럼 토론문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협동조합운동의 최전선은 어디인가

- 안인숙(해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 이현배(주민신탁)

2030 미래기획과 사회적금융

- 장지연(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

협동조합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언

- 전재홍(북서울신탁)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토론회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 김대훈

1. 협동조합 제도 환경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탐구와 연구의 필요성과 제안

1)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의 개별법이 독립적으로 병립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법제도 환경에 있어서의 편차,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하여 종합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협동조합섹터의 역사, 규모, 영향력, 소관부처의 태도 등에 따라서 협동조합이 기초하고 있는 제도 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여타의 기업조직에 비해 차별되거나 과잉금지, 규제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임.

2) 방향

-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의 정체성(협동조합의 상호성 등) 강화, 사업체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통의 제도 환경을 기본법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섹터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적인 필요사항을 개별법에 더하는 방식, 체계로 정비
- 단기적으로는 개별 협동조합법률 간에 존재하는 격차, 지체현상을 신속히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법과 개별법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
- 여타의 다른 기업조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문제들 검토, 시정방안 강구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세체계 정비, 금융/공제(보험) 금지, 채권발행 금지와 같은 자본조달제도의 불비 등)

3) 제안사항

-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의 비교연구 : 국내 협동조합 법률체계 간에 존재하는 제도 환경의 편차, 모순, 지체, 불균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 규명하고 문제해결 방안 도출
-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조직에 대한 비교 :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금지사항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협동조합 법제의 균형적 발전과 일관된 정비체계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현황파악, 문제 진단, 대안 제시 (협동조합 관련 법률 - 조세제도에 대한 법률 - 금융, 공제,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등)
- 민간(협동조합 섹터), 정부, 국책연구원 등이 공동의 과제를 선정해 체계적인 연구를 기획,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2. 협동조합 지원체계의 새로운 구성방향에 대한 제안

1)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역할은 설립 희망자에 대한 교육과 실무교육, 설립절차에 대한 상담과 자문, 협동조합 운영 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4,500개의 협동조합 중 7,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지원정책 수요는 1순위 자금지원, 2순위 판로지원, 3순위 세제지원이었음.
-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원정책은 대체로 협동조합의 사업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인데 현재의 지원기관의 역할에서 현장의 필요가 잘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방향

- 협동조합의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편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은 당사자 조직(협동조합, 협동조합들 간의 네트워크, 협의체, 사업연합/콘소시엄, 연합조직 등)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업종 단위의 규모화, 커버리지 확대(범위의 경제), 공동전략에 기초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의 역할은 기존의 관설-직영 또는 관설-민영의 지원기관보다는 당사자 기반의 연합조직/사업연합조직이 스스로의 동기, 욕구를 기반으로 더 적극적,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기반으로 사업개발, 규모화, 생태계 구축, 사업 분야에 특화된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민간조직(협의체, 콘소시엄, 연합조직 등)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1층이라면 지자체, 정부 섹터에서 출발한 지원기관(관설-민간위탁의 형태 또는 직영 지원기관 등)의 역할은 보다 전문화하여 1층의 당사자 체계를 강화하는 2층의 지원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를 통해 자조와 협동에 기반해 현장의 주도성을 높이면서 전문화된 지원체계(협동조합(연합조직)이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자원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가 연결되어야 함. (기술개발 지원, 정책자금 및 금융자원 활용, 시장 확장과 판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기능 등)

3) 제안사항

- (공통기반)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공통기반 구축 : 협동조합의 가치, 정체성,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증진, 통계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제도환경의 정비작업 -> 민간은 자조, 자치, 협동에 기초해 협동조합의 정체성, 사회적 역할을 강화 +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식증진에 노력하며 다른 기업부문에 비해 협동조합이 배제, 차별되지 않도록 제도 환경을 정비하고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개발 (협동조합 정체성 인지 정책)

- (1층) 연합조직/협동조직 중심의 조직, 사업, 역량개발 : 역량강화, 사업개발, 규모화, 생태계 구축 -> 새로운 사업개발, 콘소시엄 구축 등 자조역량과 협동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
- 이를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협의체, 콘소시엄, 연합조직, 연합회를 ‘현장기반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업종,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생태계 강화를 위한 활동, 사업을 지원(사업비, 전문인력 지원 등)할 수 있을 것임.
- (2층) 공공기반의 지원기관의 역할을 전문적인 역량강화(기술개발, 공적자원 및 지원정책 연계, 마케팅, 시장개척 등)를 돕는 역할로 발전 -> 전문적인 경영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신용보증, 정책자금, 사회적 금융, 자조금융활용 등)의 활용역량을 높여주는 역할 -> 사업개발과 혁신, 규모화를 맞춤형으로 지원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토론문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김성오

1. 업종분과관련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들

- 1) 일자리 문제
 -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성의 문제
- 2) 양극화 문제
 - 자산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의 문제
 -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
- 3) 고령화 문제
 - 복제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 존엄케어의 수요증가
- 4) 기후문제, 코로나이후 등등...

“전략적협동조합의 육성”

-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육성
 - : 사업고용협동조합, 혹은 노동자협동조합, 스마트협동조합
 - : 문화예술, 과학기술, 플랫폼 분야
- 택시를 비롯한 운송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의 육성
 - : 대구택시협동조합, 버스협동조합
 - : 돌봄협동조합들
-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육성
 - : 소협아카데미,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시도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
 - : 고령화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응답

2. 지역분과관련

“협동조합지역사회의 육성”

- [협동조합지역사회론의 제기]-1980년 레이드로 박사

 - [협동조합지역사회]의 핵심 키워드
“요람에서 무덤까지 협동조합으로!”
출산,보육...교육...생산,제조...의료...여행,레저...주택,생활편의...요양,장제 등 기본적인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협동조합으로 풀어나가는 것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연대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볼로냐, 캐나다 퀘벡지역)

 - 현재 사회적경제로 커버되는 생활 영역들
 - 1) 농업생산과 유통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2) 금융과 생활자금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3) 친환경 먹거리 - 생협
 - 4)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일부 - 자활

 - 사회적경제로 커버해야 하는, 남아있는 영역들
 - 1) 보육 및 교육
 - 2) 의료
 - 3) 레저, 여행, 생활편의 서비스
 - 4) 실버, 요양, 장제
- ***일자리****
- **일자리,2개 집중적인 주제를 발굴하여 힘을 모은다!
→ 모델을 만든다! → 다른영역으로 확산한다! **
- 협동조합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것!

 - 보편적인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 지역사회전체가 동감할 수 있는 것!

 -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3. 정책분과관련

“인프라 개선”

- 법률과 제도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및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설립지원기관 확대 : 유형별, 업종별 전문지원기관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교육체계 : 학부과정확대, 대학원과정 확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확대
- 자금지원체계 : 투자와 대출이 가능한 전문펀드 설립과 운용
- 인력지원체계 : 협동조합경영스텝 양성과정 개발 및 확대

4. 전반적으로...

- 1) 일반기업과 협동조합의 스타트업 기간문제
- 2) 일반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경로
- 3) 협동조합의 세 마리토끼
 - 기업으로서 존속
 - 조합원편익
 - 지역사회 기여

그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협동조합운동의 최전선은 어디인가

해봄사회적협동조합 감사 안인숙

- 현재를 성찰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전략을 모색하는 시도에 지지를 보낸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 및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뜻깊다. 이후 협동조합 설립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었고, 협동조합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고, 개별법 조직과 기본법 조직 간의 협동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 8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협동조합의 발전은 법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협동조합운동, 정체성 강화에 주력하자는 제안 앞에 서있다. 2만여 개의 협동조합과 100여개의 연합회는 한국사회 630만개의 중소기업(2017년 통계)에 비하면, 앞으로 지속적인 양적 확산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때, 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 정체성은 행동과 실천으로 실재가 되고, 그 과정에서 규범, 전통과 문화의 양태로 단단해지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자극받고 확인되어 가는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국제협동조합의 실천과 궤를 같이 하는 우리의 역사적 토대 속에서 협동조합의 자율성, 독립성, 자조성, 연대협력성이라는 고유성, 즉 정체성을 뚜렷하게 각인할 때이다.
-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협동조합이 겪을 수 있는 위기로 이야기 되었던- 신뢰성의 위기, 경영의 위기, 이념의 위기-는 크게 보면 단계적으로, 가까이서 보면 복합적으로 상존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협동조합 리더십은 경영의 위기조차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그리고 가치와 신조’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실천강령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인적결사체는 자본의 지배력보다 참여자가 발휘하는 리더십의 영향력이 크다.
- 협동조합운동, 정체성 강화라는 과제 앞에서 최전선에 설 조직은 어떤 곳일까? 지역과 업종 연합회가 그것이라면, 기초 단위에서부터 쌓아 올라온 조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정치 환경에서 민관거버넌스의 필요성에서 조직된 곳에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서 정체성 강화라는 과업을 잘 수행해 내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에서부터 대표성과 신뢰를 얻은 조직과 리더를 광역으로 보내는 과정이 설계되도록 하는 조직화의 룰과 프로세스 구축이 전제 되어야 한다.
- 연합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회원교육과 감사 및 성과보고 관리는 우선 시도해 볼 것이다. 다만, 이 역할이 법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한정 될 때, 이 또한 형식과 제도로 흐르기

쉽다. 연합회의 역량과 권위 없이 단지 법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협동조합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권위있는 내부 감사와 협동사업을 권고할 수 있는 내부환경을 구축하는 계획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에 있어 협동은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이다. ‘자유로운 개인의 협동’이란 수단이 효과성을 발휘하는 영역은 이익, 배당 등이 끼어들 틈이 없는 살림살이 경제의 영역이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 영역으로 도시재생을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 자원과 사람이 부족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조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인구문제까지 겹쳐져 지방소멸의 문제는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하기에는 거대한 문제이다. 협동조합이 몇 개의 열만한 규모의 경제사업을 벌여야 지역을 구제할 것인가? 단지 ‘소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자구책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그곳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지역민의 관점에서 비전을 그려야 할 일이다. 사람들을 불러들일 교육, 의료, 교통, 사회서비스 등이 갖춰지기 위해 협동조합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협동조합의 결의가 있다면 협동조합을 넘어선 다종다양한 지역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략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제시된 연합회의 역할에 논리적 시간적 순서가 있을 것이다. 자율감사로 협동조합의 기초 네트워크가 강고히 하고 나서, 유희자원의 위탁운영과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정부재산의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을 위탁 계약 업체로 취급하지 않고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초대하는 일은 드물다. 우리의 일을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연합회가 갖춰야 할 것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 바란다.
-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사업 제안, 이를 테면 창업지도사 등은 정체성 강화라는 상위 목표에 어떻게 부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이 다수 진행되고 있고, 인적 자원도 적지 않다. 다만, 정부지원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설립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정책으로 시행되는 설립지원이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정책의 실행 프로세스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같은 환경에서 실행 주체만 달라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필요와 열망을 가진 협동조합 창업자들의 관점에서 제고된 창업 지원에 대한 개선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연합회의 사업과 역할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 지원체계에 민간 조직 포함시켜 민간의 지원 역량-업종 지원-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사회적 경제 안에서 당사자와 지원조직이라는 구분이 존재한다. 당사자는 기업이고 지원조직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자들로 구별하기까지 한다. 스스로의 자원으로 운동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형편에서, 얼마 되지 않는 내부 역량을 갈등으로 감소시키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장래에 연합회가 협동조합 창업을 권장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규모화를 달성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인지 제출되어야 한다. 앞선 협동조합의 힘으로 뒤이어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연합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정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전달체계에 대한 주체적, 비판적 활용론이 제출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이 얼마나 늘어나야 고독사하는 사람이 없어질까, 협동조합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마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까. 기업 창업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좋은 삶을 위한 것이다. 협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길 바란다.

한국협동조합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신탁 이사장 이 현 배

협동조합미래포럼 보고서의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진단들을 보면서,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모두가 공감하듯이 한국의 협동조합은 '성찰의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20년 전 레이드로 박사가 말한 협동조합의 경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의 세 단계를 볼 때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은 정체성의 위기를 포함한 경영, 신뢰의 위기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위기의 때라고 볼 수 있다.

1. 협동조합 법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신탁은 1960년 설립과 1972년 법제정, 생협은 1985년 최초설립, 1998년 법제정이 되었다. 설립이후 사업과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법을 제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정착된 반면 협동조합 기본법은 개별법 보다 더 보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연합회와 민간전문조직들이 협동조합 지원체계와 정책전달 체계의 주체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2.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1)설립시 물적 조건

- 설립조건 5인 이상, 출자금은 필요한 만큼 조성은 운동체로서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의 사업체로서의 필요조건을 갖기에는 부족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 생협 설립조건인 조합원 300명, 출자금3,000만원은 최소한 사업조직으로서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 *1998년 제정당시 300명이 월15만원 이용으로 최소운영수지, 출자금 3,000만원은 자산취득(보증금, 차량, 시설집기 등)으로 운용되었다.

3. 협동조합 연대와 협의체는 무엇인가?

- 대표성은 무엇으로 보장 되는가? 회원의 숫자인가, 아니면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만의 모임인가? 그 대표성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는가? 논의의 지점이라 본다.
- 연대와 협의체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정체성을 강화 할 것인가. 사업성을 강화할 것인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이 있는가?
- 기초-광역-중앙단위의 연대와 협의체는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가?

* 연대와 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의 사업과 운동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 사업과 운동이 공유되는 접점에서부터 비즈니스모델의 활동이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업이나 협의체 자체적인 일에 멈추는 것이 아닌 개별법, 기본법 협동조합의 통합적 정책을 통한 지역의 신뢰, 사업과 운동의 신뢰가 필요하다.

4. 지원체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회적경제의 지원체계 속에서 협동조합만의 지원체계를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초와 광역에서 협동조합만의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현재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운영사례와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이야기도 듣고 싶다.

-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박강태 공동대표의 발표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원이 적은 것이 협동조합생태계가 정확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 정부가 법을 만들 당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의 효과대비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컸던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 기본법 협동조합 2만 여개의 출발과 성장의 시간 속에서 현장과 네트워크조직, 전문가, 행정, 의회, 지원기관의 고민점과 해결방식은 상당한 격차로 다르게 전개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더욱 상이하다 본다. 이러한 부분별 이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그룹화 하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5. 복합적인 위기의 시기, 정책적 모델을 모색한다.

미래포럼의 거시적인 방향성과 제안들이 당사자들의 현장에서 소화 할 수 있는 미래정책으로 공유하고, 조직과 경영의 문화로 구축되기 위해서 정책적 모델을 살펴본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구호로 그치는 운동이 아니라 사업과 운동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협동조합 간 협동의 강력한 협약과 멤버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안적 고민이라 생각한다.

즉, 캐나다의 퀘벡모델, 이태리의 볼로냐 모델, 스페인의 몬드라곤 모델이 있듯이 한국형 협동조합 운동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의 지역성, 사업성을 확장할 수 있는 융복합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금융협동조합과 행정, 지원기관이 함께하는 연대와 협의체와의 컨트럴 타워 기구를 통해 자조금융과 정책개발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100년의 역사를 맞은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10년을 설계하는 출발의 시간이기에 더욱 힘주어 말하고 싶다.

2030 미래기획과 사회적금융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장지연

I.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적 의제

협동조합의 미래전망 - 정체성 논의와 연결

- 바람직한 지원체계의 구축 →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 제도만으로는 부족 → 협동조합 운동의 필요성

협동조합 운동의 구심점 형성 필요성

- 협동조합을 보다 협동조합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대안이 되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 역할을 증진하는 의식적 활동 포함
-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전체 조직화, 교류협력 활성화, 협동경제개발 촉진 등

업종과 지역이라는 씨줄/날줄 강화방안

- 업종 연합회 자체적으로, 연대해서 규모화, 성장 전략 수립 필요성
- 연합회를 중심으로 정체성 강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

2030 - 멀지 않은 미래

- 2025년에는 2030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대강 알 수 있을 것
- '지금 이곳'의 맥락에서 협동조합운동이 갖는 의미, 사회적 의제와의 연결성 검토 필요
→ 자원 동원과 사회적 확산의 기제

연결된 사회적 의제

- 소유권 다양화 - 사람 중심 경제조직
- 지역 균형 발전 - 수도권 집중화 대응, 지역 간 격차 해소 *** 정책적 환경
- 시민/주민참여 활성화 - 마을공동체, 시민경제 촉진
- 사회문제 해결 - 일자리, 불평등, 기후위기 ** 코로나가 일깨운 위기
~ 전략적 파트너십, 숨은 목표, 운동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접근

II. 2030 미래기획 - 활동, 구조

검증된 모델 발굴, 정립 확산

- 협동조합 업종조직 확산 기반 - 사회연대 네트워크 (사회적자본)
 - 의료사협(농민, 노동자), 학교협동조합(무상급식운동, 교육청/지자체)
 -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조직, 역량)
- 사회적경제/사회연대 지역네트워크 기반 확산 추진
 - 사회적경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검증된 모델 확산 에너지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 지역 네트워크 통한 확산 추진 방안 검토 (지역기반의 그린뉴딜 정책 연계, 지자체 에너지전환센터 등 결합)
 - K-뉴딜 등 정부 정책과 협력 가능성 모색
 - 업종(유형)별로 목표 설정, 그에 수반하는 금융 구조 설계

협동조합 개발 네트워크 필요성

- KCA 이전 단계, 과도기적 추진 구조로 검토
 - 제기된 과제들의 추진을 위한 구심점 형성, 민간이 주축이 되어 구성
 - 당사자조직 뿐 아니라 지원기관, 전문가, 활동가 등 협동조합 운동의 내용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참여하려는 제 주체를 포괄하는 구조
 - : 업종 연합회, 지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전문 지원기관, 대학, 연구소 등
- 일정 기간 실험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 개발
 - 시기적으로 필요한 의제와 연결해 자원개발 - ex. 지역 균형 발전, 생태 전환 등

노동당이 집권한 프레스턴이 미국 클리블랜드 모델에 영감 받아 추진 (2013~)

비영리 연구단체 지역경제전략센터(CLES)와 협력

"부가 흐르는 배관을 고치자"는 생각으로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기업 육성, 조달전략 시의회 지원 받아 '프레스턴 협동조합 개발 네트워크' 구성, 센트럴 랭카셔 대학 협력

지역사회 부 만들기

- 5대 원칙

공정한 고용과 노동시장

지역중추기관(앵커기관)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고용, 생활임금 지불, 직무성장경로 구축 등은 모두 지역경제를 향상시킴

경제의 소유권을 다중화

소규모 사업체, 커뮤니티 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소유 등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 순환되는 돈이 더 커지기 때문에 - 부를 장소에 가두기 - 이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금융의 힘을 로컬 장소들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기

외부자본 유치가 아니라, 기존의 부를 재배치, 재순환시켜 지역경제로 유입되는 투자의 흐름을 확대하기.

지자체 연기금의 지역투자 확대, 신용협동조합의 지원 등의 방법

재화와 서비스의 진보적 조달

로컬고용을 지원하고 부의 지역순환을 강화하도록 로컬공급사슬을 발전시키기

- 중소기업, 종업원 소유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토지와 부동산의 공정한 사회적 활용

금융 및 사회적 이득을 시민들이 함유할 수 있도록, 앵커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로컬 자산의 기능과 소유권을 강화.

지역사회 활용의 개발 및 확대: 공공부지와 시설을 '공유자원'으로 활용



닐 맥인로이, "지역사회 부 만들기 - 영국의 교훈" (2020. 10. 19, 제2회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



지역사회 부 만들기 : 5대 핵심 실천방법(기동)

Community wealth building: Pillars of practice

1. 경제의 소유권을 다자화 Plural ownership of the economy
2. 금융의 힘이 로컬 장소들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기
Making financial power work for local places
3. 공정한 고용과 노동시장 Fair employment and just labour markets
4. 앵커기관의 조달/구매 Anchor purchasing
5. 토지와 부동산의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용
Socially productive use of land and property

* 닐 맥인로이 (2020. 10. 19, 제2회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

Ⅲ. 고려사항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 금융정책 설계 수반

- 조합 활성화 계획 실현에는 금융의 뒷받침 중요
 - 협동조합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접근을 지양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집중해옴
→ 제도개선의 한 영역으로 금융 접근성 개선을 다룰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선 금융적 수단의 확보가 중요함
 -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협동조합활성화계획에 직원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 등 주요 과제가 도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수단은 부족
ex. 도시재생 금융지원 방안, 그린뉴딜 녹색금융 정책 등

협동조합 정체성 - 기반하는 금융시스템과 밀접

- 특정 경제집단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어떤 금융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가가 영향을 미침 (공급되는 자금의 성질이 중요)
ex. 퀘백의 사회연대경제 - 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다양한 연대기금의 역할
 - ex. 벤처 생태계 - 벤처 캐피털의 영향
-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금융 기관은 서로를 형성하는 선순환 관계

범위의 문제 - 정체성 중심의 유연한 접근 필요

- 법인격 중심의 접근의 한계
 - 공동육아협동조합 사단법인으로 출발
 - 사회적금융, 공제조합 - 사단법인, 주식회사로 출발 (금융,보험업 금지)
 - 협동조합아파트 위스테인 - 유한회사 더함에서 개발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협동조합의 충실도를 판별하는 안목 형성 노력
 -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의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
- 가치와 원칙,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접근 필요
 - 퀘백의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으로 구성
 - 최근 NPO 영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조직으로 포괄해 인식

협동조합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언

북서울신협 전무 전재홍

1. 들어가며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에서 협업과 연대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협업과 연대의 정신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이 될 수 있다. 구성원의 협업,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그래서 특히 가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협동조합은 단위 조직의 힘만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적 환경에 대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개별 조합의 힘을 집중시켜 힘의 극대화 및 통일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것이 지역, 업종, 이종 단위의 연합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연합조직을 통하여 개별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활동을 규모화 하고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여 협동조합 진영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협업과 연대이다.

협업과 연대의 중요성은 협동조합 원칙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원칙 중 제 6 원칙이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이고 WOCCU(세계신협 협의회)의 신협운영원칙에도 협동조합간 협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등 협동조합간 협동을 촉진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개별법인 신협이 태동된 지 어언 60 여년,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 여년이 지난 지금 협동조합이란 단어가 주위에서 쉽게 회자될 만큼 우리사회에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10 년을 넘어 이제 앞으로의 10 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번 미래포럼은 특히 의미 있는 행사이고, 각 분과별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10년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10 년이 잘 성장하고 발전하길 꿈꾸며 이를 위한 중요 논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언

□ 협동조합 친화형 업종 연구 개발

20년 08월 기준 서울시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은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서비스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50%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전문 역량이 필요한 정보서비스, 과학 기술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창업하기 쉽고 진입장벽이 낮은 레드오션 시장에 포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업종의 다양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으로 사업하기 적합한 업종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 상향식(Bottom-up) 연합회 구조 및 촉진자의 필요

협동조합연합회는 단위 조합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연합회는 특정 필요에 의해 조직되는 하향식(Top-down)구조가 아닌 단위 협동조합의 니즈가 모아지는 상향식(Bottom-up)구조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회의 확장성을 위하여 연합회 구성을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도 필요하다

레이들로 보고서에서 협동조합은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이념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진단하였는데 60년 역사의 신협이 신뢰의 위기와 경영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지만 현재 이념의 위기에 빠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 연합회 구성원의 사업적 수직계열화 결합

수직 계열화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과정 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열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이를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구현한다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 동종, 이종간 연합회 내에서의 단순한 논의 조직을 넘어 다양한 업종들의 협동조합들이 연합회 조직들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생산, 유통, 판매, 소비를 하나의 협동조합형 가치사슬로 묶어 낸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성 확보

기업수명주기인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중 협동조합은 주로 도입기 및 성장기 초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사업초창기의 케즘(chasm)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경영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아직 경영공시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위원회에 따르면 20년도 인증 사회적기업 2,626개소중 1,110개소가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음을 참조하여 협동조합도 빠른 시일 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적자본의 축적

사회적경제에 투하되는 자본 중 정책자금, 다양한 후원, 지원자금은 일방향으로의 현금흐름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구조이므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출자, 투자, 융자, 보증제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융자사업을 진행하는 신협은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원천의 한계로 보수적이고 규제일변의 운용을 할 수 밖에 없어 자금공급의 적정 볼륨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출자, 자체기금, CSR자금 등의 다양한 자본이 모여 사회적자본을 구성하고 이를 전문적인 신협의 금융시스템을 활용해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신협이 이를 상품화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마치며 - 신탁의 역할

신탁은 19년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총 539억원의 기부 및 후원, 지원사업을 통한 CSR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로서 은행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금융협동조합은 CSR 활동이 아닌 CSV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완성해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신탁이 협동조합 연합회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CSV를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참여유인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신탁이 보유한 금융, 인적자산, 공간, 지역 네트워크, 조직운영경험 등의 다양한 역량을 협동조합 연합회와 결합하여 협력과 연대의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한다.

분과의견서

전북우리협동조합연합회

- 이재배

전국협동조합협의회

- 김민석

대구클앤클협동조합연합회

- 강성복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 추영민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 서재교

농협미래경영연구소

- 박미옥

전국학교사협연합회장

- 김홍섭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 김정원

사회적기업연구원

- 김병규

참여하고행동하는소비자의정원

- 김아영

중소기업중앙회

- 양찬희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이상운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최은주

아이쿱생협 세이프넷지원센터

- 김대훈

명지대 법학과 교수

- 송재일

한살림연합

- 윤형근

주민신탁

- 이현배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 유길의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 김준모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신동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장지연

북서울신탁

- 전재홍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정영화

두레생협

- 최현호

고령화 사회 준비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의료돌봄서비스업종 활성화를 위하여

1. 위기에 선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돌봄(케어)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 ('00) 고령화사회(노인 7%) ⇒ ('17.8) 고령사회(14%) ⇒ ('26) 초고령사회(20%)
- 노인 1천만명('26년 1,111만명), 치매 환자만 100만명('24)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특히, 여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52만명) 수발 가족 중 여성이 73%(38만명), 자녀 중에서는 딸·며느리가 86%(2016 장기요양보험 통계)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어 어르신들은 집,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해야만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돌봄 지출 급증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있다.

*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비중) : ('16) 25조원(38.7%) ⇒ ('25) 58조원(50.8%)
의료급여 노인진료비(비중) : ('16) 3.1조원(46.3%) ⇒ ('25) 5.7조원(51.5%)
치매 관리비용(GDP 대비) : ('16) 13.6조원(0.83%) ⇒ ('30) 34.3조원(1.8%)

* 치매 관리비용(2017 중앙치매센터) : 의료비 + 간병비 +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

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을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2. 정부 정책의 지향과 한계 :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집)으로

○ 사회서비스의 개념

개념 : 국가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포괄하는 범위도 다양 (광의)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 (협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아직은 더 좋은 시설 필요, 시설과 인력 부족

- 더 좋은 시설(중간집, 케어 안심주택 등) 필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필요
- 사회서비스 제공에는 공익적 민간 자원이 적합
- 사회서비스는 개인맞춤형의 방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돌봄, 서로돌봄, 함께 돌봄이 가능하도록- 호혜성과 관계성,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성 중요

- 공공자원의 관료성은 개별맞춤형보다는 표준화, 획일화, 절차 발달

- - 수요가 늘어날수록 비용 증가
- 영리추구 민간자원 : 신속성과 맞춤형서비스 효율성, 그러나 영리추구기업은 수입원으로 서의 대상자 이외의 지역사회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음
- * 공익적 민간자원인 사회적경제의 효과적 진출 방안 필요.
- * 다중이해관계자로서 지자체, 공공자원 결합 가능

4. 의료복지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의 혁신성

- 무의촌에서 농촌주민들이 농민의원을 만들고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 운영, 방문의료 수행
-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중심, 주민주체의 건강관 실현
- 필요에 의한 생산 : 필요에 따른 의료기관 설립, 각종 건강 소모임, 해바라기소모임, 등대 소모임
- 경제에서의 민주주의 :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소모임, 지역모임 등
- 지표에 의한 질관리 : 매년 10% 이상의 성장

구분	조합원	출자금	활동 조합원	건강의 관계망			총공급고
				소모임	마을 모임	지역 모임	
2016년	38,420세대	103억	3,964명	176	47	96	264억
2017년	41,243세대	117억	3,830명	161	60	29	325억
2018년	44,922세대	126억	2,847명	187	48	47	362억
2019년	48,254세대	130억	2,898명	211	55	66	402억

- 양질의 일자리 창출(2020년 기준)
 - 의료사협연합회 회원 조합 25개, 고용인원 1,300여명
 - 의사, 간호사, 영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팀의료 가능 : 무의촌 방문진료 시작, 2019년, 2020년 의료사협연합회 회원조합 팀 중심 방문의료 수행
-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16개 자치구 중 의료사협 참여 6개 지역 (우수사례 안산의료사협, 표창 부천의료사협 조규석 부이사장)

-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의 결합 : 지역사회통합돌봄 위한 연대 전략
- 지자체, LH, 의료사협, 사회적기업진흥원 : 공공자원과 공익적민간자원, 중간지원조직의 결합



4. 향후 발전 방안

1) 법제도 개선 방안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
-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 지역마다 5개년 계획, 사회적경제와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 필요, 지자체 지역사회통합돌봄 담당자 필요

2)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 방안

- 전략적 집중점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영역 활성화 필요
- 이종협동조합간 협력 증진 방안 필요
 - 의료사협 25개 - 전국 1시군구 1의료사협으로 확장
 - 돌봄사회적협동조합 (노인, 장애인, 의료 333개) 협력적 관계 증진
 -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신규설립 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의 연대 전략 필요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준비 과정에 대한 설계 및 지원조직 필요
 - 연대 및 규모화 촉진
 - 플랫폼 개발 전략 수립

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전북우리협동조합연합회 이재배

1. 현상

-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이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음.(현재 익산, 전주, 무주 3곳임)
- 같은 업종이 너무 많음.(식품제조)
- 정보교류의 장이 부족.

2. 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강화를 하려면,

- 1) 지역별 협의회를 구축하려해도 전담요원의 부족.
- 2) 지역별 협의회 지원 방안이 필요.
- 3)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부분의 역할 강화가 필요

3.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 1) 협업할 수 있는 공간필요.(업종 간 이업종 간 등)
- 2) 공동마케팅이 필요(지역이면 예를 들어 익산 보석쌀, 전주 비빔밥등)
- 3)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공간과 전담요원이 필요.

4. 기타

- 전북의 경우 초, 중, 고에서 협동조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산 필요.
- 지역별 공동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필요.
- 정보교류 활성화가 필요.

협동조합의 창업지도자 2급 자격증 과정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민석

※ 교육사업제안

1. 교육목표

정부 시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을 장려하고자 시도 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형 창업 컨설팅
이 가능한 협동조합 창업지도사를 양성

2. 교육 목적

- 1)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수립
- 2) 경제 민주화 실현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비즈니스모델 수립
- 3) 협동조합을 통한 scale up이 가능하도록 체계인 창업교육

3. 교육 방법 : 언택트 방식 (동영상 20시간, 비대면 강의 25시간)

4. 연수 인원 : 회당 30명 내외

5. 연수 이수 시간 : 45시수 교육 (시험 후 자격증 수여)

6. 주최 주관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7. 교육 진행 : 사단법인 한국문화창업진흥원(010-3853-4635 김민석)

협동조합창업지도사 교육 커리큘럼

분류	내용	세부내용	비고
협동조합개론	협동조합의역사	유럽 및 한국의 협동조합 역사	
	협동조합의 경영원리	협동조합의 장점 이해	
	창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 창업의 장점	
설립운영실무	협동조합 설립실무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vs주식회사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장단점	
	사회적 책임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즈니스모델	협동조합사업모델	협동조합 사업모델 비교	
	협동조합성공사례	국내외 성공한 협동조합연구	
	나만의 사업모델만들기	최적화된 협동조합 벤치마킹	
경영전략	비전수립과 팀빌딩	팀빌딩을 통한 비전만들기	
	이노베이션과 포지셔닝	틈새시장과 시장세분화	
	전략적 의사결정	최선의 사업모델만들기	
인사와 회계관리	협동조합 인사노무	협동조합 인사 조직관리	
	협동조합 자본 관리	조합원 지분 관리 및 투자	
	협동조합 세무 회계	회계관리와 절세방법	

협동조합의 상생과 활성화 방안

대구쿠팡협동조합연합회장 강성복

1. 협동조합의 존립에 즈음하여

“혼자라면 어려워도,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늘 우리는 습관처럼 하고 들어 왔습니다. 우리 광주 우수일회장께서 예로부터 두레, 계모임, 향약 등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상부상조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협동조합 정신이 살아 있다고 하는 고귀한 정신을 듣고 상기해 봅니다.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다 같이 잘 살자는 경제’로 ‘모두가 나누고 베풀어서 서로 편리함, 즐거움을 배려하는 경제’를 의미하며,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사업조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포용성, 보편성 등 사회적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 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 빈곤 등 경제, 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이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주 등이며, 특히, 사회투자기금, 사회성과 채권, 사회적 금융기관 등 사회적금융 육성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에 주력하여 자생력 확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회,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EU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2015년 기준)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고, 또한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소셜벤처는 태동기인 만큼 창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가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소셜벤처 발굴 육성의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은 경쟁보다는 협동과 공감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체를 키워 멀리 보고 함께 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이외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3의 섹터를 활용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제3의 섹터에 해당됩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인격으로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가 확산되면서 짧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사와 귀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특히 협동조합은 무신불립, 솔선수범, 역지사지 정신으로 나서야 합니다. 협동의 지혜가 혁신의 디딤돌이 되도록 협동조합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해 범 부처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이곳 대구에서 열렸고, 대전에서 두 번째 열렸었습니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양극화 등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하고, 3만여 명이 다녀간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꿈꾸는 내일'과 '모두의 내일을 새롭게 열겠다'는 희망을 담아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2. 협동조합 사업방향

여야 합의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중에 1만 8천여개 중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결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단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패배를 확인하였는바, 캐나다 퀘벡 협동조합들과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 처럼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했습니다. 특히 농업, 산림, 주택, 통신, 사회서비스, 음식/숙박, 학교(서점 카페), 교통 등 8개 업종에서 협동조합 생존율은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다보스포럼과 유엔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독점적인 신자유주의 몰락을 선포하였는바, 우리도 재벌과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기울어진 시장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모두가 대등한 거래를 할 수 있고 시장회복을 통해서 시장참여자 모두가 보다 나은 소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불특정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재능기부로 이루어져 수백조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위키피디아처럼 다양한 디지털 공유지를 만들며, 공유경제라는 더 큰 가치로 힘을 모아 재벌과 대기업에게 공생할 것을 유도해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한 상생과 공유를 바탕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의 목표인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시장경쟁에 대응합시다.

협동조합은 단기적 이윤 추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들의 장기적 이익을 목표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충성도를 높여서 조합원을 위한 최상의 상품에만 집중하면서 영업비용도 절감하고 영업 증가를 이룹니다.

브루노 롤런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 권익도 보장하는 대안적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호부조와 연대의 가치를 근본으로 삼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회사의 운영을 결정하고 이익도 공유합니다. 소유한 주식에 따라 기업 지분이 달라지는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운영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다보니 협동조합 테두리 안에서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나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기업과 사회에서 외면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도 가능합니다.

예술인을 비롯해 다양한 프리랜서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벨기에의 프리랜서협동조합 스마트(SMart)는 조합원들한테서 수입의 6.5%를 받는 대신, 정보통신(IT) 결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스마트의 이름으로 개별 조합원들의 보수를 직접 청구하고 조합원들에 수익을 돌려줍니다. 공제보험도 함께 가입해 조합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회사들은 주류 보험회사들보다 외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호보험회사들은 평균 22%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전체 보험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약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가 닥쳐 도산 위험에 빠진 기업의 노동자들이 직접 회사를 사들여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기업들도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에는 파산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하거나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정적·법적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1895년 설립,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國際協同組合聯盟] 약칭은 ICA로, 협동조합사업을 보급하고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유럽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데, 각국의 중앙단위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 전 세계 10억 협동조합인들이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NGO)입니다.

1895년 8월 19일, 런던에서 14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937년 '로치데일 원칙'을 기초로 한 ICA 원칙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농협중앙회가 가입, 1972년 정회원으로 승격되었고, 신용협동조합(1992.10 가입), 새마을금고(1994. 4 가입),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아이쿱(icoop)생협이 가입, 준회원으로는 두레생협과 대학생협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7대 원칙입니다.

1.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성, 인종, 종교, 정파, 사회적 신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Democratic member control)

- 조합원들이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출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반드시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여 공동재산으로 두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4.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자조적으로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며, 만약 외부와 약정을 맺거나 자본을 조달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교육, 연수 및 정보제공의 촉진(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세계경제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협동조합 간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조합만의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사회, 경제,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스포츠와 달리 시장경제에서는 체급과 무관하게 모든 선수가 같은 경기장에서 자웅을 겨루는데, 심판이 헤비급 선수에게 체중을 줄이도록 하거나 가끔씩 한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해도 경량급 선수가 넘어서긴 역부족입니다. 경량급 선수의 기술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낫는바,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협동조합들은 시장의 강자와 맞서 경쟁하기 어렵고, 이들이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기존의 강자와 대등한 경쟁을 벌여갈 수 있습니다.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연합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유사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업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들이 합세해 연합회를 결성해야 협동조합이 대형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조직과 자금을 갖추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합회는 1차 산업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을 2차 산업 협동조합이 가공하고 3차 산업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해야 합니다. 2014년 법 개정으로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정책적 지원으로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지역연합회는 연합회의 근간이므로, 지자체는 지역연합회의 토대가 단단하게 구축되도록 독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협동조합들의 참여를 통해 국가 및 공공단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자정노력 및 공공구매 시장 등에 신뢰를 구축, 안정적 공공구매 시장 진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협동조합만이라도 직능별 중간지원조직으로 특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협의회 계통조직 설립과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나아가게 할 2021년 사업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레가쿱과 컨프코퍼레이티브 등의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이탈리아의 유통협동조합들은 다국적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3. 전국협동조합의 상생의 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도 유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유(私有)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共有)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의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호보완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간 자조조직으로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0여년간 산업화 시대의 경제개발의 첨병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을 활성화해 국민경제가 혁신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일 업종 간 협업은 물론 이업종 간 협업도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체질개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을 규모화를 통해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 또는 다른 업종 간 융·복합이 어우러지면서도 그 과실은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생태계’구축을 위한 주요한 플랫폼입니다.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유럽 협동조합과 비교하면 비영리 사업자 조합인 국내 협동조합은 시장 메커니즘 적응에 한계를 보였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업 등 새로운 업종에서 조합을 구성하는데 부진했습니다.

국내 협동조합 조직화율은 2012년 19.2%에서 2017년 18.7%로 5년 새 0.5%포인트 하락했는데, 일본 등 선진국 협동조합과 비교해 부족한 수치로,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조직화율은 2017년 기준으로 70.8%에 이릅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선진국의 협동조합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정부 주도로 조직됐고,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익기반을 마련해줬지만, 2007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동조합 사무국의 평균 직원 수는 3.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적·물적 자원이 약한 상황이며, 관련 교육 역시 부족해 협동조합에 대한 임직원 등의 가치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 휴면 상태의 조합 방치,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비롯한 운영상 도덕적 해이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비율은 62%에 불과하고 상근이사 공석률은 56%에 달해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개별 중소기업들도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지원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동조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교육(협동조합 아카데미) 강화 △신산업 협동조합 조직화 △협동조합 포털 시스템 체계화 및 고도화 △협동조합 건강도 평가 시스템 도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등을 제안합니다.

농협, 수협, 소비자생협 처럼 일반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생형 생존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지 않아 1,3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정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배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시책에 의존하는 천수답형 운영과 조달시장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을 가로막았고, 기업가 정신과 유사한 '협동조합 운동가 정신'이 요구되며 정부는 협동조합계의 자정노력에 대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중

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생들이 직접 학교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이 공동의 교육·경제·사회·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또 일선학교에서 사회적경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 보급됩니다.

교육부는 차기 교육과정개편 때 초·중고 관련교과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자체 인정도서를 개발, 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스토리텔링, 사례중심의 초·중고 교재·교수자료 개발·보급하고,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과서 개발 및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과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가 실시되고 교장연수과정에도 사회적가치 등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개편 때 초·중·고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필수과목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내용 추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교육부는 현재 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오는 2022년 까지 20개 대학으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링크플러스·LINC+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선정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사업단 평가항목에 지역사회혁신 활동이 반영되면서 링크플러스 고도화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일반대 55개, 전문대 15개)이 앞 다퉈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전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정부에서는 ‘착한경제’라며 강조해온 사회적경제 관련 후속대책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정부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로 내년 예산을 확보와 동시에 협동조합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네트워크와 전국네트워크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것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으로 지자체마다 사회적경제기업간 상생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정보공유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되도록 지역네트워크와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5. 협동조합의 향후

한국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빈곤율과 산재사망률 1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용과 출산율은 최하위권입니다. OECD 회원국 중 8위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의 절망과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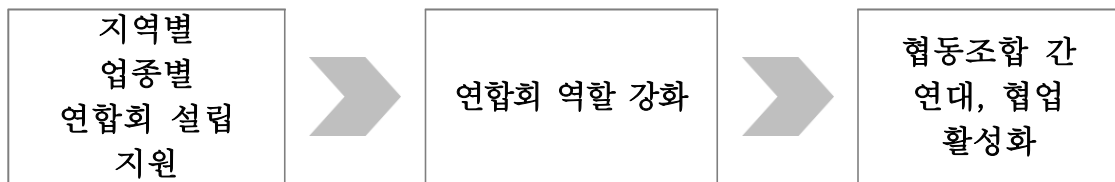
이러한 때에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이 우리 협동조합임을 알고 우리 전국협동조합의 협동조합진흥센터등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1만8천여개의 협동조합의 상생과 협업으로 활성화 함은 물론 주도적 사업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협동조합 부문 의견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추영민

사업 부문 제안

협동조합 연대 활성화 기반 조성



1) 도내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지원

- 추진목적 : 협동조합의 지역 공동체성 강화 +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업종별 연합회에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의 사업 지원
 - 지역별 연합회에 지역 유희자산 운영 위탁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2) 연합회 역할 강화 지원

- 추진목적 : 연합회의 위상 제고를 바탕으로 연대를 통한 자생력 강화
- 주요내용
 - 연합회를 통한 회원 협동조합 자율감사 대비 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 연합회 회원 조합의 교육 및 컨설팅 수요 발굴 & 자체 교육 설계 지원

3) 협동조합 간 협업 사업 발굴 기반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추진목적 :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협동조합의 날 행사실시
 - 협업 사업 발굴 및 정기적 소규모 네트워킹 행사

II 제도 부문 제안

협동조합 부문 민관 지원 역량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의 정비 및 실질 시행
- 제주도 협동조합 협의회 정례화
-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제주도청 부처별 협력체계 구축

1) 협동조합 전담 주무관

- 추진목적 : 법인격인 협동조합과 면허제인 사회적기업 등 업무 분리
-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제도 활용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전담 직위 또는 부서 신설
 - 경제정책과 및 소상공인 기업과 등 도청 내 유관부서 연계 권한 부여

2)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협의회 구성

- 추진목적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방향 제시를 위한 민관 협의체
- 주요내용
 - 도청 / 각 연합회 / 중간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례화
 - 추후 기재부 소속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정비

III 교육 부문 제안

협동조합 교육 강화

- 미래세대를 위한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중간지원조직 및 당사자 연합회 간 교육 협력 체계 구축
 - 초·중등 교과과정에 협동조합 교육 의무화

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서재교

지난 6월 통계청은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보다 강화하는 촉매제가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4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27,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00여 명에 견줘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나마 고용상황이 나은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대거 이동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자리와 인구 모두 사라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산하 일자리 사업평가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소멸위험지수는 포항시 0.629, 광양시 0.895로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속하는 수치다. 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1 미만이면 소멸 위험 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 지역은 인구의 유출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 약 30년 후에는 해당 지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다. 거의 절반이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돌파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무너진 지역 상권을 살리고 디지털 일자리, 청년 자립마을 등 청년층 지역 유입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번 터진 물꼬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자체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대다수 지방 도시의 발전 계획을 들여다보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대기업 공장을 포함한 산업시설 유치로 도시 활성화 비전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본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서울과 일부 대도시나 가능할법한 성장 모델이 지방 중소도시 성장 전략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일본 후쿠이현 사바에 시(市)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인구 7만여 명이 채 되지 않는 후쿠이현 사바에 시(市)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은

없지만,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콘테스트를 통해 시정 발전 계획을 세우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과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보육,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바에 시(市)는 일본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살고 싶어하는 삶터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반면, 일본 치바현의 모바라 시(市)는 파나소닉, 도시바, 미쓰이화학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의 공장이 밀집해 그야말로 '잘 나가던' 도시였다. 하지만 저성장·저금리로 이들 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도시도 직격탄을 맞았다. 파나소닉과 도시바가 공장을 폐쇄하면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나자 상권 침체는 물론 도시 전체가 공동화의 늪에 빠졌다. 심지어 이들 기업은 고용 유지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 이때 가치는 자본의 힘이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확산한다. 사바에 시(市) 사례처럼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거대 자본에 맡기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둔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사례로는 산림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다. 국내 산촌은 영세한 산업구조와 낮은 경제성 탓에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전체 산촌 가운데 97%가 소멸위험에 빠져 있을 정도다. 산림이 가진 탁월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외면으로 일관한 인과응보다.

변화의 조짐은 2018년 충남 태안에서 시작됐다. 산림청이 안면채종원에 접한 4개 마을(중장1리, 중장2리, 중장4리, 누동리) 주민에게 채종원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다. 채종원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 조림에 필요한 우수 산림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일종의 산림 과수원인 셈이다. 1981년 99ha 규모로 조성된 안면채종원에는 국내 곳곳에서 발굴한 우수 소나무가 철저한 관리 속에 자라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면지소가 담당했던 안면채종원 관리업무를 4개 마을 주민 공동체가 설립한 협동조합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줄이고, 주민 일자리와 공동체성은 강화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산림청의 제안을 받아들인 마을 주민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해 4월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설립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준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채종원둘레사람들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설립 당시 5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불과 석 달 만에 200명을 돌파했다. 4개 마을 주민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숫자다. 설

립 1년만인 지난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채종원둘레사람들협동조합은 올해부터 안면채종원 관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정직이 직접 담당했던 산불 보호를 비롯해 소나무 종자(솔방울) 채취, 소나무 거름주기과 같은 주요 사업들을 위탁받아 수행했다.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을 가꾸는 국유림영림단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전국 138개가 활동 중인 국유림영림단은 나무를 심고, 솎아내고 베는 작업은 물론 산불 진화와 재해 방지, 산림 복구 등 숲 가꾸기의 모든 일이 이들의 손을 거친다. 국유림영림단은 1984년 한국과 독일 정부 공동으로 산림작업을 직업으로 하는 기능인 양성을 위해 임업기능 인력 양성기관인 'Forest Work Training Center'(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를 강원도 강릉시에 설립하면서 첫발을 디뎠다. 이후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안정적인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실패했다. 땅이 얼어붙는 11월부터 2월까지 일감이 없어 고용안정 위험에 쉽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연간 고용계약이 어렵다 보니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를 비롯한 4대 보험도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지난해 산림청이 기존 개인사업자였던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하면서다. 산림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국유림영림단 처지에선 숲가꾸기 외에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사업 1년여가 흐른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국유림영림단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51개다. 산림청은 전환을 추진 중인 국유림영림단까지 보태 올 연말까지 국유림영림단 절반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초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으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업무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 일부 국유림영림단의 우려 섞인 시선도 점차 사그라드는 추세다.

실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양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이하 양록사협)이 대표적인 예다. 양록사협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다문화, 어르신 등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양구군은 양록사협이 창출하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약 천 평에 이르는 군 소유 농공단지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철원, 양구, 인제, 화천 등 강원도 북부 국유림을 관리하는 민북국유림관리소는 양록사협과 513만 평의 국유림에 대한 보호협약을 맺었다. 양록사협은 향후 5년간 해당 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대신 송이, 잣 등 국유림으로부터 수확한 산림 작물 수익의 90%를 확보하게 됐다. 양록사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벌목 후 남은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

험프로그램, 소규모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목 생산업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4대 보험, 퇴직금 등 기존 조합원(영림단원)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산에 오르지 못하는 지역주민까지 포함하는 생애주기 일자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지역순환경제는 지방 도시를 소멸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백신이다.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누구도 막기 어려운 것 같은 지방소멸, 오로지 주민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농협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간 지역 내 협력사례 및 시사점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박미옥

- 농협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지역 내 협력 목적
 - 농촌활력화 :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협력 및 지역경제 주체 간 협력
 - 농업인 실익지원 : 농업인 기업 육성,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

【 협력사례 】

□ 한살림안성마춤식품

- 사업내용 : 두부 제조 및 체험
- 협력유형 :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간 협력
(생활협동조합/안성시 6개 농협)
 - 농협 : 출자, 콩 등 농산물 공급, 유통망 제공
 - 한살림연합, 한살림 회원 생협 : 출자, 소비지정보·유통망 제공
 - 푸른들영농법인, 한살림가공생산자 : 출자, 노하우 공유, 가공지원(업무제휴)
- ※ 상품판매·홍보 : 농협하나로마트, 한살림 매장
- 협력효과
 - 농산물 판로 확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
 - 이종 협동조합 간 상생협력 모델 기반 확보

< 협력배경 >

- 안성시는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농가소득 안정화 목적으로 농가에게 쌀 재배에서 콩 재배로 작물 전환 유도
- 안정적 콩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안성지역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가 함께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 농가를 대표하여 지역의 6개 농협, 한살림 38개 조직이 공동출자하여 2015년 1월 콩가공 및 유통조직인「농업회사법인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유한회사」설립

□ **엄마손꾸러미**

- **사업내용** : 경기 안성시에서 컬러배말랭이 등 생산
 - 배, 도라지, 대추, 비트 등 국내 생산 농산물 활용 제품 생산
- **유형** : 영농조합법인(귀농 다섯 농가가 설립)과 농협 간 협력
 - ※ 가공공장 설치비용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이 어려운 현실은 감안하여, 가공공장 운영 농가를 참여시킴
- **농협의 역할** : 귀농인 창농 지원
- **협력효과** : 안정적인 판로 확보, 귀농인 정착 지원 강화

< 협력배경 및 농협 지원 내용 >

-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귀농 교육 동기생들이 출자하여 2018년 1월 영농조합법인 「엄마손꾸러미」 설립
 -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 재배 농가와 가공공장 운영 농가 간 분업
-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주최 ‘농식품 아이디어 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농협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음
 - 농업인기업 육성 차원에서 농협은 미래농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브랜드 출시지원, 하나로유통과 계통계약 체결 등 지원 실시

□ **쿠키아**

- **사업내용** : 전남 여수 지역에서 두부과자 생산
 - 국내산 콩과 오곡, 여수 돌산 갯, 제주 톳 등을 원료로 사용
- **유형** : 사회적기업과 농협 간 협력
- **농협의 역할** : 농협 PB상품 개발, 판로 지원
- **협력효과**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 협력배경 및 지원 내용 >

- 쿠키아는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2016년 생산제품이 6차 산업제품으로 선정되면서 두부과자를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시켜 판로를 확보함
 - ※ 농협은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을 농협 하나로 유통을 통하여 판매하는 정책 실시
- 농협은 쿠키아와 농협 PB상품 ‘하나로 두부과자’ 개발·판매
 - ※ 쿠키아가 고객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여 타 유명매장에 납품하는 기회가 됨

【 시사점 】

□ 농업·농촌의 현실

-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의 생산기반 약화 등 농업·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음
 - 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 '17) 42.5% → '18)44.7 → '19)46.6
 -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비중 : '17)0.9% → '18)0.7 → '19)0.7
 - 인구감소로 2050년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8)

○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가 교역조건 악화

- 농축산물 수입액 : '10)171억 달러 → '17)252 → '19)277
- 농가교역조건지수*('15=100) : '17)106.6 → '18)105.8 → '19)104.7
- *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농가가 판매하는 가격과 농가가 구입하는 기자재의 가격 상승 폭을 비교하여 산출함

□ 농촌 활력화 측면

-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주체 간 협력 또는 이종협동조합 간 협력 필요
 - 농협과 이종협동조합 간의 협력은 농촌지역 주민,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기여
 - ☞ 예시) 농협과 생협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은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산물 구매 기회 확대
-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농촌마을 기업 육성 필요
 - 농축협 사업과 농촌마을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한 농촌마을 기업 육성은 농촌마을 주민의 농가소득 증대 및 성취감·행복감을 고취

□ 농업인 실익 지원 측면

- 농업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농촌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업인 기업육성 필요

- 농업인 기업 육성은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등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농업인 생산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농협의 다양한 지원 및 협력은 농업인 생산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 농업인 생산 기업의 농산품에 대한 농협의 판로지원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학교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의 연대·협력에 주목하는 이유

전국학교사협연합회장 김홍섭

[학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지역사회 관여]

- 먼저, 업종별 연합회인 학교사협연합회가 ‘업종개발분과’를 지망하지 않고 ‘지역개발분과’를 지명한 배경과 학교사협이 지역사회 협력을 왜 중시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공포 전후시기에 학교협동조합의 창립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설립을 준비하면서 ‘학교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토론과 검토를 하였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에 학교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친환경무상급식 문제였음. 친환경급식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판매하는 ‘학교매점’을 주목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이윤을 학생복지로 순환시킬 수 있도록 매점 운영의 개선방안을 찾게 되었음. 학교에서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건강매점’ 운영 방안도 거론되었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자는 쪽으로 합의가 되었음. 당시에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음.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이 지방자치조직·급식운동단체·학부모단체 등 지역사회 조직과 연대하여 추진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협동조합 설립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비영리법인인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음.
- 시민들은 흔히 학교의 문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음. 많은 학교는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 학부모나 지역사회와 담을 높게 쌓는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학부모는 자식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대로 내놓지를 않았음. 민주·평등성과 개방성이 약한 학교시스템은 사회의 다른 조직에 비해 민주적인 체제를 더디게 정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는 많은 학교가 교원-학부모(학생)-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건강하게 조직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기 때문임.
- 학교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 자주적 생활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의 정규교육과정 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7원칙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도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하여, 학교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로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였음. 학교사협 설립 매뉴얼에도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설립목적’란에 ‘지역사업’을 포함하여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 제1조에서도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에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방향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한 ‘인성함양과 민주시민 자질함양’이라는 교육의 목적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교육의 목적과 협동조합의 가치가 서로 친화적이어서 학교에서도 협동조합의 가치가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 UNESCO에서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학교 운영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틀로 ‘건강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시한 바가 있음. 학교교육에서의 거버넌스는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기본 원칙이 작동되고 있어 ‘거버넌스’라는 기본 틀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 더욱이 21세기 들어 ‘다양한 이해관련자들의 집합체인 지역사회’를 기본원칙의 핵심 요소로 삼게 되면서 협동조합에서 거버넌스는 더욱 중요해졌음. 이 점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1995)을 기초한 이안 맥퍼슨이 저술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 조합원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 이익을 향해’라는 보고서(2012)의 제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학교협동조합은, 사업의 범위뿐만 아니라 구성에서도 점차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가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음. 또한, 학교의 기본 거버넌스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초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급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건강한 학교매점 운영에 집중하면서, 점차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 교육 등에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사회적경제교육에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동안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어온, 추상적이거나 전시적인 행사 위주의 활동을 넘어서서, 학교협동조합이라는 실체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이 참여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게 되었음. 또한, 학교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의 민주

와 평등의 원칙을 학교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고, 학교매점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상주하는 등 학교개방이 확대되면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로 변화되고,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교육활동과 분위기를 바탕으로 혁신학교로 발전하는 사례도 나타났음.

- 이어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하여 추진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음.
- 많은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햇빛발전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립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 동작구 성대마을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지역의 학교협동조합이 적극 참여하였고, 이 사업에는 지역의 신용협동조합도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음.
- 학교협동조합 매점에서 지역의 생협과 협력하여 제품을 납품받아 운영하는 사례도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으며, 생협의 제빵·제과류는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편임. 학교협동조합에서 생협과의 협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 외에도 학교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참여예산이나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역 마을재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고, 다문화여성 일자리제공 기업과 함께 학교교복(생활복)을 제작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한 사례도 있음.
-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초·중·고 학교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음.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대안교실, 돌봄교실, 조식캠페인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는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었음.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육문제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도 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음. 이를 계기로 2019년에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음.

[미래를 향한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 협동조합이 미래 발전을 생각한다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 이러한 역할 수행의 핵심은 조합원의 민주

적 역할과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항임.

- 협동조합의 민주·평등성을 말할 때, 흔히 ‘1인1표제’가 대표적인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음. 1인1표제에 의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하며, 각종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음. 민주적인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1인1표제라는 형식보다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제2원칙)와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제5원칙)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임. 모든 조합원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협동조합들은, 특히 지역조직이나 업종연합회에 속한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제6원칙) 원칙에 치중하여 ‘지역사회의 관여’(제7원칙)에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협동조합 운동의 존재를 위한 핵심조건이므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다만, 제6원칙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의 성장과 관련 없이 자칫 협동조합들의 친목단체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임. 조합원의 승인을 얻어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제7원칙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관련이 있고, 이를 외면할 경우 협동조합의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성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아시는 바와 같이, ICA 모스크바 총회(1980)에 제출된 레이들로 보고서에서 주장한 지역사회 관여 문제가 ICA 맨체스터 총회(1995)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으로 정리가 되어, 결국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게 되었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 관여 등의 원칙이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모든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7원칙이 통합적(중층적)으로 작동되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가치가 스며든 사업을 수행해 나갈 때,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네트워크 강화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김정원

1 조직 연대 및 정책

□ 목적

- 지역, 업종 연대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 지역 활동가 발굴 및 임원 역량 강화
- 지역별 특화 협동조합 정책 발굴 및 제안

2 민민, 민관 거버넌스

□ 목적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광역 행정과 협력체제 강화
- 중간지원기관과 긴밀한 사업 연대
- 사회적경제영역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주요 내용

1. 민민 거버넌스

-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회원사 참여
- 2)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가입 및 연대
- 3) 경기도 5개 광역 협의체 연대 사업 가속화
- 4)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과의 협업 사업
- 5)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대
- 6)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협력

2. 민관 거버넌스

- 1)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 2)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3 사업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1. 세무, 회계 지원 사업

- 지역협의회 협동조합 세무, 회계 지원을 통한 애로 사항 해결
- 광역 차원에서 세무사, 회계사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1차 목표 40여개 회원 조합 발굴 서비스
- 5개 권역으로 진행

2. 교육 지원 사업

- 1)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
- 2) 창업 교육 (협동조합 창업 교육)
- 3) 맞춤형 협동조합 교육 (공동사업 발굴 워크숍)
- 4) 지역 특화 사업 (중간지원기관 연계)
- 5) 소상공인 협업 사업

3. 협동조합의 날 행사 및 포럼

4. 국제교류사업

- 1)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한국대회
- 2) 일본 생협과 연대 교류
- 3) 캐나다 밴쿠버 주택협동조합 연대 교류 (사회주택 컨퍼런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사회적기업연구원 김병규

1. 현 협동조합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가. 현황

1) 중앙정부 전달체계

(1) 사회적경제 총괄

- ① 청와대 - 대통령 비서실 - 정책실 - 경제수석 - 사회적경제비서관
- ② 사회적경제 - 기획재정부 - 장기전략국 - 사회적경제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협동조합 총괄

- 기획재정부 - 장기전략국 - 협동조합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제도지원팀, 설립지원팀, 협력운영팀)
-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3) 소상공인협동조합

-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②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협업지원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 - 10개 권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4) 학교협동조합

- 교육부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 교육부 - 지역 교육청 (- 지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5) 과학기술인협동조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 지방정부 전달체계(부산광역시)

① 광역

- 시장 - 경제부시장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경제팀(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② 기초(연제구)

- 구청장 - 부구청장 - 경제문화국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지원계
- 담당자(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직업교육)

나. 문제점

- 1)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지원 통합 관리 역할의 한계
 - (1)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협동조합 전문성
 - (2) 협동조합 총괄 기능의 한계
 - (3) 누리집의 기능, 역할, 접근성의 한계
- 2)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밀려난 통합지원사업의 2중대(인력 및 재정력 한계)
- 3) 설립지원을 제외한 지원 정보 전달의 한계
 - (1) 설립지원팀만의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 (2)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사업으로 인한 맞춤형 정보 접근의 한계
- 4) 사회적경제통합지원정책에 따른 협동조합의 특수성 미반영
 -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2) 협동조합 성과의 명확한 정의 부족
- 5) 지역마다 다른 협동조합 지원 예산

1. 협동조합지원체계 개선 방향

- 가. 협동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체계 구축
- 나. 협동조합 통합 누리집의 기능(역할) 및 홍보 강화
- 다. 권역별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의 업무 범위 및 역할 강화
- 라. 협동조합만을 또는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지원 제도

1. 협동조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가. 지역에 협동조합 매칭 예산 지원
- 나. 협동조합 통합 누리집 개편(누리집 구성 및 운영 방법)
- 다. 중앙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사업 전달 강화 체계 마련
- 라. 협동조합 전문관 제도 도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 체계 논의를 위한 과제

참여하고행동하는소비자의정원 김아영

정책 개발	주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 체계 개선방안
	토의 사항	1. 현 협동조합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현황, 문제점 등 2. 협동조합지원체계 개선 방향 3. 협동조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4. 기타 (자유 의견)

0. 협동조합 미래 포럼과 정책 개발

“협동조합 미래포럼은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①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②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기획됐다.”

정책 개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지역 개발	지역별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협업 방안
업종 개발	'업종별 연합회 활성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에 대한 생각

- 협동조합은 이념, 협동조합들은 실체라고 한다면 하나의 상으로 묶을 수 없음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국제협동조합연맹, 한국협동조합협의회 번역, 2017)

협동조합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본질은 19세기와 20세기의 협동조합 창시자들이 개척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인간 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적 상태와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다.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협동조합 원칙의 적용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그리고 정치적 변화와 도전에 맞춰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중략) **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혁신은 언제나 협동조합기업의 원천 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의 방향은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념으로 한다.

- 지도(指導)에서 지원(支援)으로, ‘당자자성’을 중심으로
- 지역별, 업종별, 조직 성장 단계별 필요한 지원은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해야

2.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박강태(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 '2030 협동조합 운동의 역할과 과제'

협동조합 운동의 역할을 성찰하기 위한 질문

- ▲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보편적 협동조합 시대는 이전 시대와 차이가 있는가?
- ▲ 위기와 절망의 시기, 협동조합은 어떤 대안과 희망이 되어 주는가?
- ▲ 산업 재편기, 협동조합의 계획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협동조합 미래포럼(2020.10.13.)

-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관점에서의 질문과 성찰
-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원 체계 구성 모색해야

3.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김아영,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연구 포럼(2020.10.30.)



- 변화의 시대, 보다 넓은 관점으로 협동조합의 적응과 변화를 모색할 때
- 협동조합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같은 방향인가? 다른 방향인가?

조합 공동사업의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적용 문제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희

□ 현 황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이 권익보호와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
 - 공동구매·판매·브랜드 및 R&D 등 협동조합을 통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실시하여 개별 中企이 달성하기 어려운 교섭력·경쟁력 확충

- 정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를 신설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적용 배제

-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고시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고, 해외역시 일본, EU, 독일 등도 中企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적용 배제

- *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8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3항

□ 문 제 점

-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관련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 시장점유율,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등 시장상황에 대한 경제적 고려없이 부당한 공동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법 개정 취지 퇴색했다는 업계 지적

- ① **중소기업 등의 거래상대방인 대기업 이익 보호**라는 지적
 - B2B시장에서 대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및 중간재 납품이 주요 사업인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거래상 지위를 고려할 때 오히려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활용될 우려.

- ② **기존 공정위 기준 준용, 제도개선 효과 미미** 지적
 - 중기벤처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 기준에 따르면, 불허하는 공동사업 범위* 대부분을 공정위 기준을 준용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법개정 취지 희석
 - * 부당한 가격결정, 생산량 등의 조절, 거래제한, 설비투자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강제 등

- ③ **명확한 법률 관계설정 미흡**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의 공동사업 붕괴 우려
 - 특히,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결정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가 논의되는 중인 상황에서,
 - 조합 등 사업자단체의 공동사업이 시장 구조, 시장 가격 등 **경제적 분석 없이 부당 공동행위로 간주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감내** 우려.

□ 개선 제안

- 경쟁질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의 협동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교섭력 확충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적용 제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일정규모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전면 배제(일본사례)하거나,
 - 또는,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경쟁제한성과 무관한 경우의 가격결정행위 허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대기업과의 유효한 경쟁의 펼치기 위한 공동판매 및 가격결정행위 허용 등 구체적 기준 재설계 등

관찬은 협동조합에 대한 제3자 인증 기능에 대해서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이상윤

<문제의식과 제안배경>

- 정부의 적극적 정책추진, 현장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현 정부출범 전에 비해 협동조합 수 및 일자리가 지속 증가 (양적성장)
 - 19년 말 협동조합기업의 취업자는 '17. 보다 약 2만5천명 늘어난 약5만6천여명

<주요 정책대상 사회적경제 기업수, 취업자 수>

	' 17		' 18		' 19	
	기업 수	취업자	기업 수	취업자	기업 수	취업자
협동조합	12,356개	31,438명	14,550개	41,422명	16,846개	56,609명
사회적기업	1,877	41,917	2,122	42,742	2,435	47,322
마을기업	1,442	16,101	1,514	17,438	1,592	19,261
자활기업	1,092	11,029	1,211	10,849	1,176	10,441
합 계	16,767개	100,485명	19,397개	112,451명	22,049개	133,633명

- 빈부격차 확대, 고령사회진입,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성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오랜기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기업이 많이 존재할 것임.
 - 예를 들어,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강화로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계속 더 중요해질 가능성 존재
- 그러나 한편으로 일반금융기관 및 사회적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관찬은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음.
 - 협동조합을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 또는 기관의 부족으로 정보의 비대칭 현상 발생
- 한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장을 준비중이거나 상장된 주식회사를 분석하는 사람을 애널리스트(Analyst)라 하고, 주로 증권사, 경제연구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은행권, 미디어 등에서 기업의 현황 및 전망과 시장 및 경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고 있음.
- 자원제공자들은 이러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림.
 - 즉 주식회사 기반의 경제기업은 애널리스트들이 외부자원제공자와 해당기업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주는 제 3자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임.
 - 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달하는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에 집중.
- 민간에서도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 조합의 핵심프로젝트의 기획 및 운영, 자금 조달 등 경영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존재.
 - 이와달리, 주식회사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경영대학원 MBA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적기업의 경영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의견1: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퀄리티를 인증할 수 있는 제 3자>

- 협동조합협의체
 - 상호신뢰와 명성을 바탕으로 어떤 협동조합이 좋은 협동조합기업인지 인증할 수 있음
- 사회적금융기관
 - 민간 중심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자원제공자들(조합원, 다른 민간기관 등)과 협동조합 간 정보비대칭 해소에 있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역할이 중요
- 민간의 협동조합평가 기관
 - 민간단체, 대학교 연구소, 경제연구소, 서울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의견2: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 및 경영교육의 확대>

-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의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국립대학교를 시발점으로 협동조합 경영교육강화

- 갈수록 지역경제 붕괴의 속도는 높아질 것을 고려해서, 지방국립대 경영경제분야학과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협동조합 전문경영인력 양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역기반의 협동조합교육 강화
 -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지역 사회문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사회적)협동조합화.
- 생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존 협동조합의 지역기반 조합원 교육 강화
 - 사례발굴 및 전파 -끝-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최은주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은 효과적인 성장 지원하여 제도의 도입과 정착 단계를 넘어 성과 가시화하고 규모화·연대 등을 통한 질적 내실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1)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지원 (2)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3) 지역사회 중심 운영 (4)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5) 교육 및 홍보 내실화로 제시되어 있다. 2020년 10월 22일 현재 18864개(일반협동조합 16436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82개, 사회적협동조합 2326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개)인 상황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시기적절하고 유효해 보인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간지원기관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상담 및 경영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이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였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간위탁 시장에 사회적협동조합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산점 부여, 계약 관련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용, 자본조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는 등 규모화를 위한 지원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후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기대하며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설계한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전제조건

1.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자율성 존중

-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 강화

- 협동조합이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이해 필요

3. 협동조합의 유능함 증진

- 협동조합에서 종사하는 인력, 연합회의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지원기관의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등 협동조합 운영과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지원

4. 법체계 정비

- 정책 차원의 제도와 법적 규정의 혼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조합원 간 상호성 원리에 따라 조직된다는 조직 특성과 조합원의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실현한다는 점 등 운영원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적 실체로 규정됨. 둘 사이의 차이라고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대상과 내용의 차이. 이것으로 인해 법적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 기본법과 개별법 협동조합 전반을 아우르는 협동조합 법체계 구축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서의 역할이나 공익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등록제와 같이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협동조합 지원체계 구성방안

1. 연합회를 통한 자율적 기능 강화

-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협동조합감사연합회 활용가능
-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역량 강화, 자율적 규제 권한 부여(예> 감사)
-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본적인 회계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협동조합 성과 평가지표(Coop-index) 및 활용가이드 개발했으나 확산 미흡.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평가도구 제작 및 실행
- 자율적 경영공시, 실효성 있는 공시제도 개선 필요, 데이터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프라 재구축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 협동조합에 대한 외부통제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관련 법률과 정관이 정한 협동조합의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들의 조직구조와 활동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2020)

2. 기본법과 개별법을 아우르는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구축

- 기재부가 기본계획 수립 권한 보유, 개별법 상 관할기관과의 협의체계 정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 개별 조합과 연합회의 회계, 인사,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 반영,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고등교육의 협동조합 인력교육 지원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자율적 결사체로서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평, 연대의 가치에 근거하는 조직.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의 윤리적 가치를 신념으로 한다. 협동조합의 출발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임이었으므로 사회문제를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동조합 실천가에게 협동조합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지원기관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제도환경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제안

아이쿱생협 세이프넷지원센터 김대훈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의 개별법이 독립적으로 병립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법제도 환경에 있어서의 편차, 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협동조합섹터의 역사, 규모, 영향력, 소관부처의 태도 등에 따라서 협동조합이 기초하고 있는 제도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여타의 기업조직에 비해 차별되거나 과잉금지, 규제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임.

방향

-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의 정체성(협동조합의 상호성 등) 강화, 사업체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통의 제도환경을 기본법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섹터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적인 필요사항을 개별법에 더하는 방식, 체계로 정비
- 여타의 다른 기업조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문제들 검토, 시정방안 강구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세체계 정비, 금융/공제(보험) 금지, 채권발행 금지와 같은 자본조달제도의 불비 등)
- 개별 협동조합법률 간에 존재하는 격차, 지체현상을 해소
- 기본법과 개별법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

제안사항

-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의 비교 : 협동조합 간에 존재하는 제도환경의 편차, 모순, 불균형을 해소
-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조직에 대한 비교 :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금지사항에 대한 재검토
- 협동조합 법제의 균형적 발전과 일관된 정비체계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현황파악, 문제진단, 대안제시

협동조합지원법제 연구

-미래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명지대 법학과 교수 송재일

I.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막는 법적 문제가 있는지

1 협동조합법제의 정비

-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체계적 유기적 상호관계 구축 필요
 -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 경제 관련법 간 체계 정합성을 좀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
-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상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확충
 - 큰 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협동조합청을 마련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마련된 민관 거버넌스 구조와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 확충

2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 및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식회사에 비하여 취약한 자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 금융 또는 기금 필요
 - (예) 2019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보험 및 금융사업 문제
 - 협동조합의 경우 상호부조와 공제가 핵심인데, 보험 및 금융사업과 명확한 구분은 어려움
- 개별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조달이나 의사결정 어려움
 - 생협외의 경우, 조합원 직접 자금은 법적인 안정성 취약으로 인해 유사수신이라는 법률 리스크 초래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법적 근거 확충

- 국내외 협동조합 간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제도적 뒷받침 필요
 - 2차, 3차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연대기금이나 연대금융과 맞물려 법적 난제에 해당하지만, 장기적으로 품목별, 지역별 협동조합연합회는 필요하고 이를 통한 자율규제가 핵심
 - 올해 개정법에 들어간 이종협동조합연합의 활성화 방안 강구(이른바 P6-Principle 6)
-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법인 및 출자회사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조합원의 공동필요를 담보하여 조직과 사업을 그때그때마다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유연한 방식의 법제 필요

4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배제

- 협동조합이 시장 내에서 설립되어 활동을 잘 할수록 소비자후생에 더 많이 기여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배제 미흡
- 협동조합은 이용자소유기업으로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을 방지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협동조합법제에서 관련 조항의 정비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5 협동조합에 대한 또는 협동조합별로 상이한 차별적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

-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규제
 -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필요(예, 회계기준, 평가기준, 사회적 가치평가 등)
- 협동조합별로 상이한 차별적 규제
 - 같은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라도 주무부처와 근거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
 - 비조합원이용에 있어서 일부 협동조합에 대한 엄격한 기준(예, 현행 생협법은 비조합원 이용액을 조합원 이용액의 10%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
-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
 -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할 경우 세제 혜택 부여 필요
 - 협동조합 세제를 별도로 정비할 필요

II. 향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 방안

1 플랫폼 협동조합을 기존 협동조합법제에 담기 위한 법제 정비 필요

- 플랫폼 협동조합은 디지털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지만, 그 법적 정의나 규율이 각국마다 형성중에 있음
 - 기존 협동조합과 협동이 가능하도록 입법 디자인; 기존 협동조합과 win-win 또는 융복합

2 플랫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문제 해결

- 디지털독점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입법적 정당성 확립
 - 빅데이터 기반의 제반 법적 쟁점의 검토: 오픈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마이데이터
 - 금융과 복지 기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협동조합 법제 설계

3 플랫폼 협동조합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제 마련

- 직노동자, 스타트업 비즈니스,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급, 플랫폼 협동조합 기업 내부의 소유와 통제, 배분에서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입법 디자인이 관건
 - 특히 협동조합은 “소규모, 로컬, 가치지향적”인 영역에서 강점이 있기에 이를 고려할 필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체계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한살림연합 윤희근

1. 한살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진흥원 사업과 연계 : 2015년? 한살림제주와 한살림성남용인 등 스토어 36.5에서 출발 하여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타 생협들과 공동으로 '상생마켓' 진행
- 구매생협 : 사회적경제조직 '의미' 있는 물품의 판로로 역할
-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력에 대한 고민 : 제품력 -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 수를 늘리는 지원보다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는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 필요
- 실용적인 연구기관들과 연계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으로

2. 지원체계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 - 상호 협력과 연계

1) 연결하는 경제 : 자원의 연계, 사람의 연계 중심의 지원체계로

- 생산/소비의 연계 : '상생마켓'
- 소비/폐기의 연계 : 우유곽 - 휴지생산 사회적 기업 등 재사용, 재활용 시스템의 연계
- 교육/소비의 연계 : 학교 매장 물품 등
- oo/oo, oo/oo, oo/oo의 연계 등등
- 교육도 자원이 만나고 사람이 연계되는 틀을 전제로

2) 연결하는 경제의 확장 : "협동조합지역사회의 꿈과 이상" 실현

-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 촉진을 최우선으로, 협동조합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는 지원체계 : 당사자들의 "연합회"의 강화, 사회적 금융의 역할 강화

3. 지원체계를 바라보는 시각 둘 - "조합원" 관점

- 지원체계의 개선은 "협동조합을 왜 활성화해야 하나"라는 질문에서 출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유, 조합원들 삶의 문제, 조합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절실한 필요와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로 귀결되어야 (정부나 공공영역

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지만...)

-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 조직들의 목표와 비전을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정렬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 위원회(거버넌스) 참여 구조에서 민회 모델로 :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가지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방식은 어떨까?
- 조합원의 삶과 지역은 통합적인데, 지원체계는 갈래갈래인 상황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중간지원체계도 앞으로는 당사자조직인 연합회, 협의회가 직접 담당하는 방향을 향하면 어떨까?

기초지자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주민신탁 이현배

● 현황

○ 총괄

(단위 : 개/명/천원)

합계			일반			사회적			소비자생활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282	96,670	18,299,763	217	2,353	5,371,160	55	1,998	1,110,444	10	92,319	11,818,159

*신탁 4곳 미포함

*휴면 조합 55곳(2013년설립15곳,2014년 19곳,2015년 11곳,2016년 9곳,2017년 1곳,

*시민기업 2곳, 마을기업 1곳, 사회적기업 8곳, 예비사회적기업 9곳

(협동조합 연합회)

(단위 : 개/명/천원)

합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수	회원	출자금	조합수	회원	출자금	조합수	회원	출자금	조합수	회원	출자금
1	5	1,800	1	5	1,800	-	-	-	-	-	-

업종별 수

사회적협동조합

C.제조업_기타	1
D.전기, 가스 등 공급	3
F.건설	2
G.도매 및 소매	3
J.정보통신 및 출판,영상 등	1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등	5
P.교육서비스	18
Q.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6
R.예술,스포츠등 관련서비스	4
기타	1

사회적협동조합 요약

54

생협	G.도매 및 소매	6
	Q.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4
협동조합	C.제조업_기타	8
	C.제조업_식료품	6
	C.제조업_인쇄	2
	D.전기, 가스 등 공급	3
	E.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8
	F.건설	5
	G.도매 및 소매	24
	H.운수업	3
	I.숙박 및 음식점	4
	J.정보통신 및 출판,영상 등	9
	M.컨설팅,과학및기술서비스	11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등	13
	P.교육서비스	34
	Q.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8
	R.예술,스포츠등 관련서비스	7
	기타	11
기타(농업, 어업 및 임업)	2	
협동조합 요약		158

가. 지원현황과 내용

(1) 협동조합 지원

행정:성남시-재정경제국-지역경제과-협동조합팀(설립상담과 신고,컨설팅지원)

지원센터: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동조합 설립상담, 제도교육,판로지원)

(2) 소상공인협동조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3)지원내용:사회적경제 포괄적인 지원에 일부편재

- 협동조합 설립-기반조성-판로

- 조례-성남시사회적경제활성화조례,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교육 및 창업지원(교육과정 중 일부, 창업지원 내용의 혼재)

-사회적경제기금: 약 24억원 (내년부터 3억원을 융자,이자차액보존, 자조금매칭)

나. 협동조합의 문제점

(1) 협동조합들의 업종전문 업력이 짧다.

(2) 협동조합관련 교육과정이 단기교육

- (3) 업종관련 전문지원가 부재
- (4) 사업관련 자본(출자금)조성에 대한 인식이 적다
-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비하여 지원사업이 부족
- (6) 출자금이 적은 교육서비스사업 비중이 높다.(54곳/23%)
- (7) 기존사업 운영자가 협동조합 설립(27곳/소상공인 비중 높음)

다.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

- 가. 협동조합 지원내용의 전환필요
- 나. 협동조합 주체들의 인식전환
- 다. 사회적 경제 자조기금 조성·운영 기회
- 라. 재정 및 회계 관리시스템 강화

(2) 개선내용

- 가. 협동조합 정체성과 원칙에 근거한 교육 및 설립지원
- 나. 협동조합의 이종간, 동종 협업모델 발굴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와 전문성강화
- 다.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자원 지원(공간, 금융)
- 라. 협동조합의 시장진출을 위한 사전조사와 가능성 진단(제도, 진입조건)
- 마.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기획창업
- 바. 협동조합 업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사. 자조금 조성을 위한 협동조합 협의체 활동 확대
(예. 이종간 협동조합으로서 사업 다각화)
- 아. 경영공시 의무화에 따른 협동조합 감사연합회에 신탁 등 상호금융 참여를 통한 기업가 정신의 확대 모색

업종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유길의

- **대경협동조합 연합회(105개 협동조합)** - 2014년 설립
 - ▶ 임기 4년이 지나는 동안 총회가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활동정지된 상태임
 - ▶ 쿠파협동조합 연합회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활동 중

- **대경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반협 6곳, 사협 2곳, 생협 2곳
 - ▶ 10월 인가신청, 10월 15일 1호로 인가
 - ▶ 2013~4년경부터 - 공동사업의 필요에 의해 네트워크망 형성
 - ▶ 2017년 ~ 18년 - 대구시 협동조합 특성화 모델 활성화 사업
 - ▶ 대구 동부지역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자회의, 생산자교육, 포럼, 성장이벤트 등과 물류사업 진행
 - ▶ 2019년 대구광역시와와 경상북도의 상생사업으로 mbc와 함께하는 장터 운영, 공동물류사업 진행.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로컬푸드협의회창립 - 워크샵 등을 통한 미션, 비전 등 공유
 - ▶ 2020년 정기총회에서 공동사업과 연대사업을 좀 더 전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인 설립 결의 --> 사단법인 형식 고민 ==> 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종 연합회로 방향 전환 ==> 수차례의 대표자회의와 임원 워크샵등으로 준비 - 연합회 발족식

- *. 대구시 협동조합 보조사업 - 특성화 모델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활성화 네트워크 사업이 큰 역할함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른 협동조합간의 연합회
 - 생협의 소비자적인 성격과 로컬푸드의 생산자적인 성격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협동조합 활동의 시야가 생협과 신협까지 확대됨
 - 규모의 확대에 의한 로컬푸드 사업의 확산과 확대에 큰 역할 기대

- **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 - 현재 7개 협동조합의 협의회 (보유택시 약 900대)

- ▶ 대구경북 택시협동조합 현황
- ▶ 2016년 ~ 18년 택시협동조합의 탄생
- ▶ 19년, 20년 택시협동조합 대표자회의 약 25회 개최
 - 전액관리제 대응, 제도적 어려움 대응
(택시발전법, 운수사업법 등과의 마찰)
 - 청주우진교통탐방, 임원워크샵, 조합원 체육대회(약 400명 참가)
- ▶ 경북지역택시협동조합과의 만남 - 경북도 참여하도록 문호 개방해달라

*. 10월 26일 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

- ▶ 공동사업 - 타이어등 정비부품, 차량 등 공동구매
- ▶ 연대사업 - 정보공유, 제도개선대응, 송년회, 운동회등의 친목도모 사업
- ▶ 택시협동조합연합회를 지향한다.

□ 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와 분과 모임

- ▶ 2014년 설립 - 현재 20개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 ▶ 분과 모임 - 발달장애 분과, 노인돌봄, 아동돌봄, 교육분과 등
- ▶ 지역협의체 - 공동사업을 찾기가 어려움

□ 그 외

- ▶ 카페업종 모임
- ▶ 대구 희망나르미 협동조합 - 광역화를 위한 움직임
 - 워크샵, 대표자회의
- ▶ 학교협동조합 네트워크 - 토크 콘서트 등

□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예산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간 협업화와 구성된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예산정책이 필요하다.
- ▶ 특히, 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는 공동사업을 통한 수익증대와 규모화를 이루는 좋은 방안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지원이 필요하다.
- ▶ 협동조합간 소모임, 정보교환을 네트워크,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등이 향후 연합활동의 밑거름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 이사장들을 위한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해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 ▶ 연합회가 구축되면 활동예산을 지원하자.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협동조합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자

업종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 방안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김준모

1.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회원 현황 및 과제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한국돌봄)은 돌봄사회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조합원과 후원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조합원 81명 중 사업자 조합원이 72명으로 압도적인 다수이며 후원자 조합원 7명, 직원 조합원 2명이 있습니다.

한국돌봄 사업자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25개로 이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격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국돌봄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는 아닙니다.

한국돌봄 사업자 조합원은 전국에 분포합니다(강원 5, 경기 13, 경남 6, 경북 8, 광주 1, 부산 3, 울산 6, 서울 16, 인천 3, 전남 1, 전북 1, 제주 1, 충남 4, 충북 4). 비교적 지역적 편중 없이 고르게 분포하는 편입니다.

다음 표는 한국돌봄 사업자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종류		응답기관	평균 이용자	평균 서비스 인력
장기요양	방문요양	50	49	36
	주간보호	14	39	11
	복지용구	3	39	2
	방문목욕	22	24	4
	요양시설	5	129	83
사회서비스 바우처	가사간병	41	25	12
	산모신생아	17	34	26
	장애활동	27	112	99
	지역투자	3	45	2
	기타	2	9	4
병원간병	회원제	5	41	30
	월급제	12	78	21
가정관리		4	17	13
노인맞춤돌봄		14	493	36
기타		7	97	32
총계		61	293	119

※ 2019년 12월 31일 기준 72개 회원사 중 61개 회원사 응답

한국돌봄의 시원은 2000년 자활근로 간병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국 242개 지역자활센터(당시 자활후견기관)에서 대부분 시행했던 자활근로 간병사업의 전국 네트워크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질적 전환을 거듭하여 현재의 한국돌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행과 함께 자활근로 간병사업이 중단된 이후 한국사회서비스총괄본부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주)온케어 등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인 모색을 거쳐 2012년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를 창립하였고, 2015년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를 해소하고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한국돌봄은 정관에서 ‘민주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상부상조와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한 돌봄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실천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한국돌봄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한 과제를 ①전국화·규모화를 통한 돌봄기업의 경쟁력 강화, ②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③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돌봄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④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지원으로 성장기 돌봄기업 지원, ⑤신규시장개발을 통한 돌봄기업의 수익증대, ⑥돌봄기업의 지역사회안정망 기여 이상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간접서비스로 전환하였을 때 의료영역과 돌봄영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영역은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간접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직접서비스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돌봄의 설립목적인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사회를 존립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

한국돌봄은 창립한 2015년 당해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자활기업으로 인정되었고, 2017년 보건복지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활기업 인정과 사회적기업 지정은 한국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한국돌봄은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목적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돌봄은 전국화.규모화를 통해 돌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 조합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2019년 1월 재적 조합원 66명에서 2020년 9월 81명으로 증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과 주요 추진 사항을 회원과 신속히 소통하며 상호 의견 교류 등 민주적 회의 운영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존 지사 및 네트워크 안정화, 신규네트워크 구성, 회원기관 연락망 및 사업현황 공유 등 네트워크 활성화와 조합원 일상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협력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 돌봄리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방식으로 개최합니다.

한국돌봄은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바우처 제도 개선 활동과 사회서비스원 및 커뮤니티 케어에 대응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진입 확대, 지역.사업 네트워크와의 정책 유대 강화 등 돌봄사회서비스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정책요구안을 매개로 현장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역의 모범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한국돌봄은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돌봄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합니다.

회원사의 신입.중견 실무자 교육을 통한 돌봄 실무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브랜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인력 교육과정 교재를 활용하는 등 돌봄 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공통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로 업무 전산시스템을 관리합니다.

한국돌봄은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지원으로 성장기 돌봄기업을 지원합니다.

회원사의 욕구맞춤형 컨설팅 정보를 제공, 소셜프랜차이징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등 한국돌봄 회원사 내부 인적 자원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평가 설명회 및 기초교육, 사회서비스 평가 자료 공유 등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을 지원합니다. 돌봄 종사자 임금 권고안을 배포하는 등 노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한국돌봄은 신규시장개발을 통해 돌봄기업의 수익증대를 돕습니다.

돌봄사업 확대 전략 설명회, 예비 부모(산모) 교실 등 신규사업 개발을 지원합니다.

한국돌봄은 지역사회 안전망에 기여합니다.

지역 내 재난 대응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고 지역 밀착형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공유합니다.

3. 이종 협동조합 간 협업 현황 및 과제

아래 표는 한국돌봄이 이종 협동조합 및 이종 업종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연도	협업 기관	주요내용	비고
2016년	아이쿱생협	icoop자연드림 입점	
	(주)송지	물품 및 사회적공헌 협의 (MOU체결)	유아용품 업체, 사회적기업
	(주)희망나르미 (현,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전국자활기업 사업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회	각 기업별 사업 내용은 별도, 결과보고회 공동 진행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2019년	박PD와 황배우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과꿈> 암생존자 신체능력 향상, 영양관리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진행	예비사회적기업
2020년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용역 사업 <협동조합 표준 교육교재 개발> 공동 수탁 및 진행	현재 진행 중
	더커먼즈0099협동조합	용산구 공유자산화 사업 참여	건물 구입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

한국돌봄이 추구하는 과업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국 돌봄만의 노력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돌봄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음식,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이 향상될 때 사람의 삶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돌봄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사회를 개선하려는 여러 이종 협동조합과 협업하려 합니다.

4. 이종 협동조합간 협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앞 장에서 열거한 사례들은 한국돌봄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협업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간 조직적인 협업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참여하거나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종 협동조합간 협업을 시도하고 개별 사례를 모델로 확산하는 방법도 이종 협동조합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돌봄의 회원사인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청솔돌봄)은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표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공동체’라는 명칭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서 저장강박증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쌓여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소외 없는 행복한 동네’ 사업에는 지역의 청소·방역업종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사례 발굴 및 관리는 청솔돌봄이 담당하고 청소 및 방역은 협업하는 청소업종 사회적협동조합이 담당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협업에 참여한 청소업종 사회적협동조합은 매출 증대와 함께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종료되는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평판을 전해들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과 후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 사업을 지속시킬 의사를 전해오면서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하 도우누리)는 이종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서울공동모금회 장기요양 사각지대 노인 서비스,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등의 사업을 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아래 표는 도우누리에서 전개한 다양한 협업사례 중 장기요양 사각지대 노인 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교육, 급식, 청소, 세탁, 돌봄 등 다양한 업종에 협동조합, 사단법인,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등 법인격도 다양한 이종 조직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사각지대 노인서비스(2016.06~2019.02)

서비스 유형		사업자	이용자(명)	제공횟수(건)
정서돌봄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55	264
영양 돌봄	영양죽	복지유니온	309	3,982
	반찬	복지유니옥	286	1,834
주거 돌봄	특수청소	인스케어코어	155	264
	해충/항균바이러스	인스케어코어	125	125
	이불세탁	광진지역자활센터	17	60
요양돌봄		도우누리	85	2,427
계			1	8,956

역시 한국돌봄의 사업자 조합원인 ㈜제주이어도돌봄센터(이하 이어도돌봄)도 이종 업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마을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 세탁, 방역, 밑반찬, 심리상담, 음식꾸러미, 취업지원 등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돌봄기업, 세탁전문업체, 사회복지시설, 상담전문업체, 취업지원업체, 중간지원조직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합니다. 이어도 돌봄은 사업을 총괄진행하며 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합니다.

위 협업사례들은 협동조합 이외의 업체들도 참여하였으며, 협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협도조합 이외의 업체들이 참여하였거나 협동조합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례들은 모두 공동의 사회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협동적 방식으로 협업한 사례들입니다. 사례들의 업체들 자리에 협동조합을 넣으면 이종 협동조합 간 사례들이 됩니다.

5. 기타

한국돌봄의 시작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한 2015년이 아닙니다. 한국돌봄의 전신인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를 창립한 2012년도 아닙니다. 한국돌봄의 시작은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 자활근로사업을 하며 공동사업단과 네트워크를 구성했던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돌봄은 동종업종의 사업자들이기 모였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도모합니다. 한국돌봄 조합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과 고민을 함께하며 뜻을 모은 이들이기 때문에 가치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구합니다. 대부분 20년의 세월 동안 비슷한 일을 하면서 공통의 고민을 나누었던 사람들이거나, 그 명맥을 이은 사람들이 모인 한국돌봄의 가치와 사업풍토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돌봄이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경험과 고민 속에서 핵심가치로 단단해졌습니다. 신규 조합원들이 늘어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한국돌봄이 추구하는 가치는 더욱 풍부하게 실천될 것입니다.

업종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이익의 바탕에는 공동의 가치가 굳건히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가치가 흔들리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 하다가 위태롭게 되기 쉽습니다.

한국돌봄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위원회와 사업별·지역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사업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있으며 산모사업, 노인주야간보호, 노인맞춤돌봄 등 업종별 네트워크와 서울, 부울경, 강원, 경북, 경기 등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함께 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이사회, 위원회와 네트워크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한국돌봄의 사업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기여에 의해 추진됩니다.

한국돌봄의 조합원은 월 회비(사업자 조합원 10만원)를 내며, 회비수입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3인의 사무국 인건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회비수입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금 등 보조금과 사업수입이 합쳐져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충당합니다.

사업수입도 교육사업, 공동구매, 전산시스템 사용료 등 대부분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따른 수입입니다. 한국돌봄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참여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신뢰와 참여, 기여에 의해 유지되고 운영되는 구조는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하는 기반입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신동한

1. 에너지 협동조합의 배경

- 기후변화의 심화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
 -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변화
 - : 대규모 중앙집중형 핵/화석연료 체제 →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
 -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탄생
- ⇒ 주민참여에 의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확산

2.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사

- 2003년 최초의 시민 햇빛발전소: 부암동 에너지대안센터
- 2005년 재생에너지 의무매입제도(FIT):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시민발전소 건립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시민햇빛발전소 설립
 -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 2013년 협동조합 최초 발전소 건립: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안산중앙도서관
- 2014.4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창립(임의 단체)
- 2016.1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햇빛공로패’ 수여
- 2017.5 국정기획위 및 산자부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보급 정책에 대해 협의
- 2017.12 환경부 태양광발전 확산 선도사업 업무 협약
- 2018.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법인 설립
 -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험 마련(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2019. 3 국회토론회(RPS 이대로 좋은가?) 주최
 - 대한민국 솔라리그 경진대회 공동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
- 2020.9 국회토론회(그린뉴딜과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 주최

3.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현황

- 회원 조합: 35개
- 조합원 수: 8,123명
- 발전소 설치 용량: 9,000kW

4. 에너지 협동조합의 과제

- 의무공급비율 상향
-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FIT 재도입
- REC 발급에서 비재생에너지 제외
- 고정가격 계약 물량 확대
- 세제 혜택: 조합원 차입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27.5%) 인하

조합법인세 과세 특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특례를 개별
법 협동조합과 동등하게 적용

- 대규모 사업 참여: 대규모 공공부지 대여 시 협동조합 할당

5. 기타

- 에너지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준회원으로 연합회에 참여하고 있어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2020년 협동조합 미래포럼 업종개발분과

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신동한



01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전환과 협동조합

에너지전환과 협동조합 알아보기

에너지전환 운동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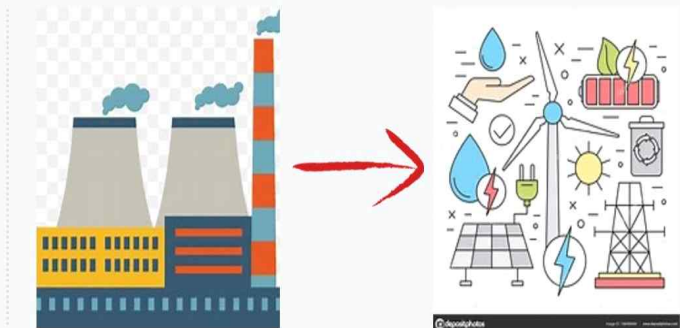
시민참여 에너지 전환운동



첫번째 에너지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인가?

에너지는 발전소 형태로 나타난다.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요, 필연적 사업이다

두번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협동조합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가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나누어진다.

협동조합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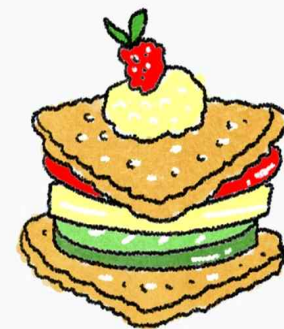
협동조합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

세번째 시민참여

어떻게 참여하고 조직할 것인가?

시민참여는 조합원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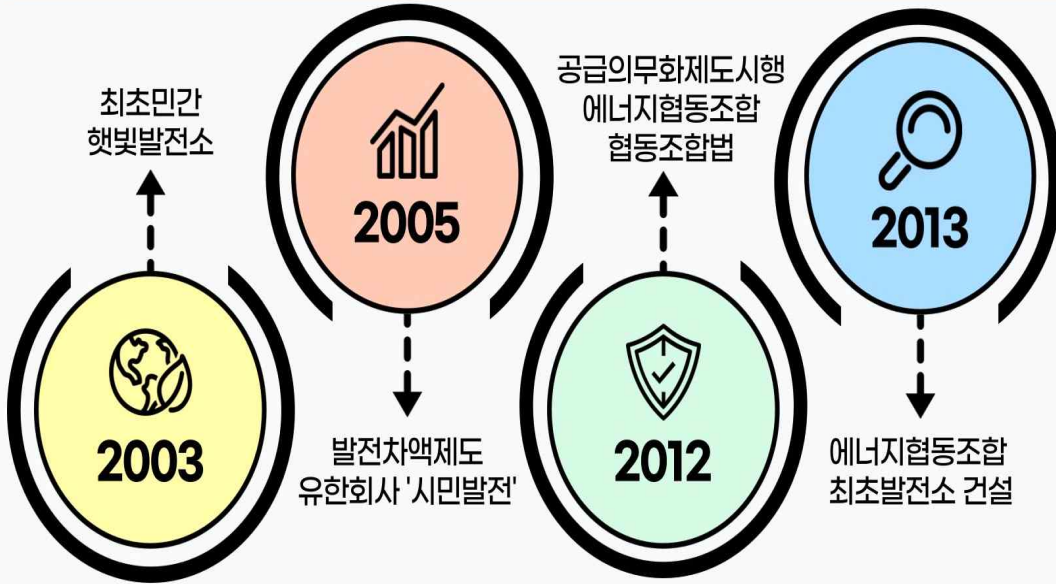
시민참여 방법



누구랑 어떻게 만들고 나누어 먹을 것인가?

시민참여형 민간 발전소

시민 참여형 민간 발전소와 제도의 변화



시민참여형 민간 발전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참여형 민간 발전소



부암동 에너지대안센터에 설치된 시민발전1호 태양광발전소

한전에 전기팔아서 천만원 벌었어요 요안햇빛발전소 운영하는 원불교 최서연교무-오마이뉴스

POSTED 7 年 AGO BY WONGSOLAR

동영상 보기 공유하기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 허난기요?

짜이리.

지난 13일 오후, 지천거 평야를 밟으며 서울 외곽 1등 주천마을 지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 것 같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한강에서 내려 뒤를 보니 작은 지구의 한복을 입은 사람이 길가에서 활짝 웃고 있다. 흥분교 서울 외국인센터와 요안 햇빛발전소 소장인 최서연 교무(66)가 마중을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최초 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2년 3월



최초 발전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중앙도서관 30kW (2013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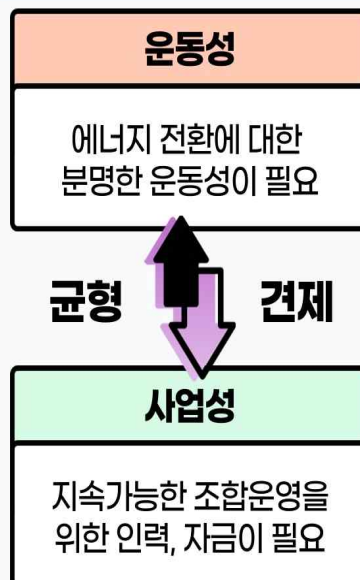


전국연합
전국 35개 조합이 연합회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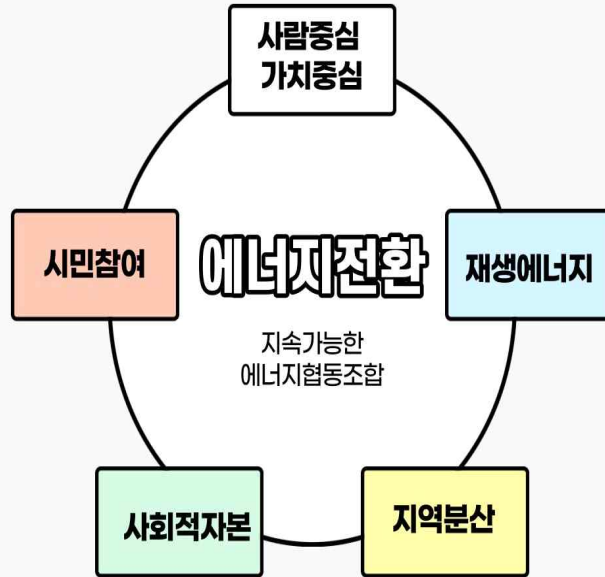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만들기

가치중심 사람중심 에너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만들기

가치중심 사람중심 에너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만들기

가치중심 사람중심 에너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만들기

가치중심 사람중심 에너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만들기

가치중심 사람중심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전국 방방곡곡에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경제를 ..

01 마을단위 에너지 협동조합을 결성

02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생산 활동

03 소득의 균등한 분배로 기본소득 보장

사회적경제

에너지를 통한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마을단위 협동조합

02

에너지협동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의 과제와 전망



전국연합회 현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설립목적

사업영역



연대
조합간 연대



지원
신규조합 지원



정책전환
제도개선 및
법률활동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산업연구



조합
35개



자본금
1,250만원



조합원수
8,123명



전국연합회 연혁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역사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합연혁	2014.04 전국시민발전연합회 창립총회	2015.01 제도개선 대응팀 활 동	2016.11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 '햇빛공로패' 수여	2017.12 환경부 태양광발전 확산선도사업 법무 협약	2018.01 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설립 소규모태양광발전 공제보험 마련	2019.12 대한민국솔라리그경 진대회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	2020
사업연혁	2014.06 워크샵	2015.05 재생에너지RPS제 도 규탄 기자회견 사단법인 선 업무협 약 에너지정책규탄 기 자회견	2016.07 에너지산업과 태 양광산업정책동향 포럼	2017.03 에너지전환을 위한 집담회 국정운영위원회 정 책간담회 대통령기후환경비서 관 간담회	2018.02 산업통상자원부 간 담회 홍익표의원 간담회 모듈공동구매협약	2019.03 RPS이대로 좋은 가?국회토론회 협동조합맞춤형아카 데미운영 조선일보규탄대회	2020.09 국회토론회



제도개선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전국연합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2015년 에너지전환 대응팀 구성
- 2016년 제도개선위원회로 확대 개편
-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활동



평평한 에너지시장으로 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전국연합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및 성과

- 태양광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활동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내에 에너지전환 대응팀 구성
 주요 활동내용
- RPS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회대응: 노영민(산자위 위원장), 홍익표, 이원욱, 김한표 의원 면담
 - 국정감사 질의(김한표, 이원욱 의원)
 - 산자부 간담회 개최: 에너지자원실장 등과 간담회 개최
 - 토론회 개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3회 진행
- 성과
- RPS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00kW이하 FIT재도입, 계통연계비 완화, 소규모 구입물량 확대, REC판매 제한기간 삭제 등
 -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 초안 마련: 소규모 발전사업 지원 등
 - 산자부 제도개선 방안 약속: 소규모,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수입우드펠릿훈소 축소, 계통연계비 지원방안 마련 등
 - RPS 시장 확대 계기 마련





제도개선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전국연합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및 성과

- 국회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추진, RPS시장 진단
- 산자부 간담회: 2018년 5회, 2020년 1회 진행
- 홍익표, 김경수, 우원식, 김성환 의원 간담회 개최
- 국정기획위원회 에너지정책 간담회
-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간담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간담회
- 국정감사 대응: 매년 정기국회 국감 대응활동 진행
- REC폭락 대책추구 기자회견
- 에너지협동조합 왜곡보도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제도개선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전국연합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및 성과

- REC발급대상에서 비재생에너지 제외 추진
 - 수입우드 펄릿 단계적 축소
- 고정가격입찰 물량 확대: 100kW미만 50% 우선구매 실시
(최근 산업부 지침에서 제외됨)
- 한국형 FIT: 협동조합과 농업용 100kW까지 적용
- 태양광 가중치 조정: 주차장 가중치를 옥상과 같이 1.5로 조정
- 고정가격계약 구간 개선
 - 기존: 100kW미만/ 100-1000kW/ 1000kW이상으로 구간 설정
 - 개선: 100-500kW 구간을 추가로 설정
- 보험상품 개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 개발
(보험사와 전국연합회간 합의)
- 신협 태양광 상품 개발: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70%까지 용자 실시
(이율 3% 이내, 기후변화기금과 차액은 서울시가 보전)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영구시설물 해석 변경



제도개선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전국연합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 요구사항

01

의무공급비율 상향

RPS 공급의무비율 상한선(현행 10%) 폐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김성환의원 법안 개정발의

02

FIT 재도입

소규모 태양광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배치되는 RPS제도
개선 요구, FIT재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보장 요구

03

REC 비재생에너지 제외

REC발급대상에서 비재생 에너지 전면 제외
혼소발전소 제외 협법소원 원고로 참여



제도개선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전국연합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 요구사항

04

고정가격 계약물량 확대

공급의무발전사가 구매하는 REC는 자체계약이
절반을 넘고 조달 물량은 20%에 불과
소규모 발전소를 위한 계약물량 확대가 절실

05

세제혜택

협동조합 펀드 수익에 대해 27.5% 이자소득세 인하,
조합법인세 과세특례 요구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구

06

대규모사업 참여

대규모 공공부지 대여시 협동조합 할당(10~20%)
일정규모 이하 공공부지를 지역조합과 수의계약

에너지협동조합
과제와 전망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과제와 전망



2030 협동조합 미래포럼업종 분과
업종조직 활성화와 사회적 금융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 I. 업종에 적합한 사회적 금융 공급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관련 현황 -



노동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

택시협동조합 인수자금 공급

- 총 65억 규모 자금 중 약 17억원 대출 약정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MOU)
- 이후 유사한 택시협동조합 인수전환자금 수요 접수
- 협동조합 법인격 채택여부 자체를 넘어서 평가 기준 도입의 필요성 절감

노동자협동조합 인수전환 펀드 결성 출자 검토

- 100억원 규모 펀드 중 20억원 후순위 출자 검토
- 80억원 일반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
- 특수목적회사(주식회사)를 통한 인수금융 형태의 자금공급으로 제한



의료사협 자산화 프로젝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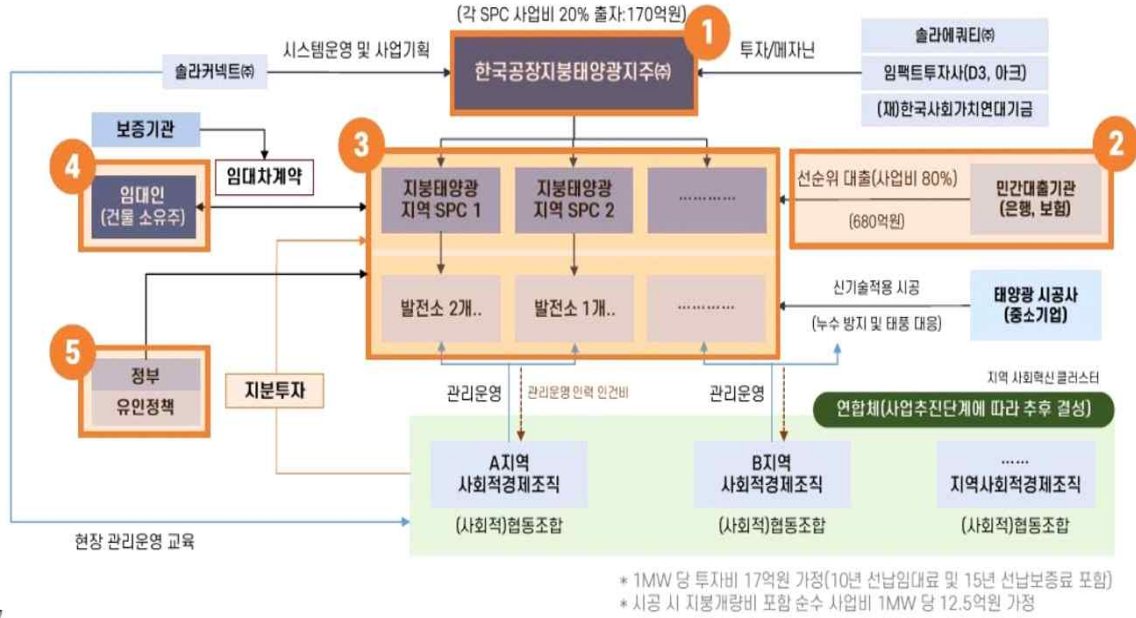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케어타운 조성사업

- 신규 공간 조성 관련, 재단법인 밴드를 통한 대출에 추가 대출수요 발생
- 자금의 규모보다는 성질에 대한 다른 욕구 존재 → 9천만원 출자 (자기자본 보강)
-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배당이 없어 무이자 대출과 유사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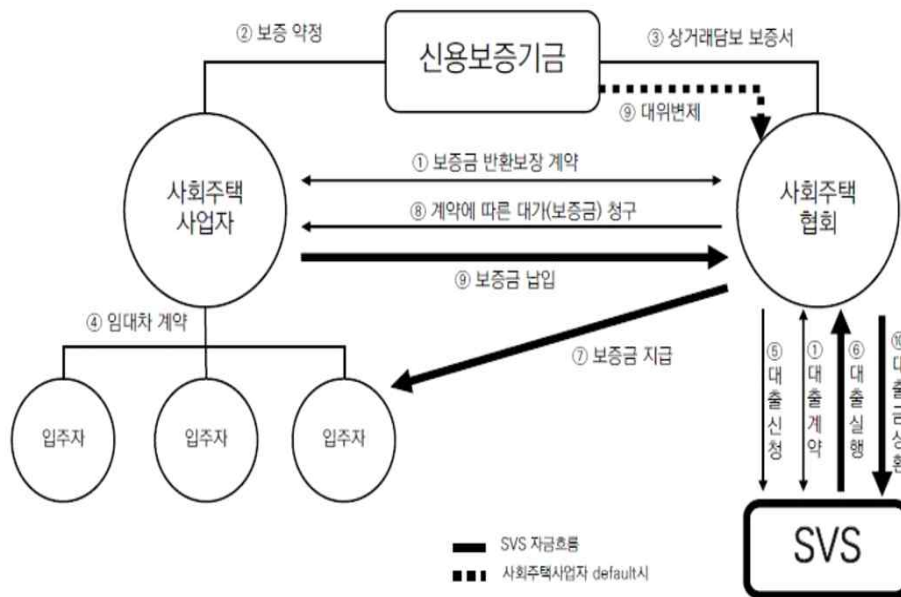
의료사협 자산화 진행 중

- 안성의료사협, 살림의료사협 등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 진행
- 설립 연차가 오래된 의료사협은 현재 새로운 사업기회 추구를 위해서는 자본잠식 상태 해소 필요성 존재
- 의료사협의 성장/확산을 위한 지속적 관여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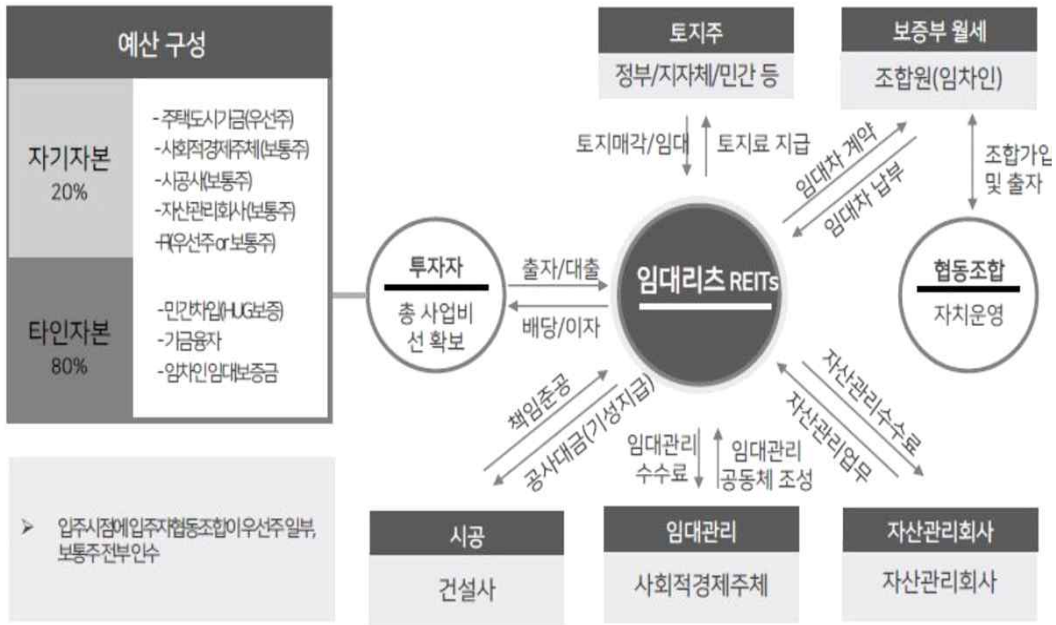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주민참여 구조 마련



🏠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사업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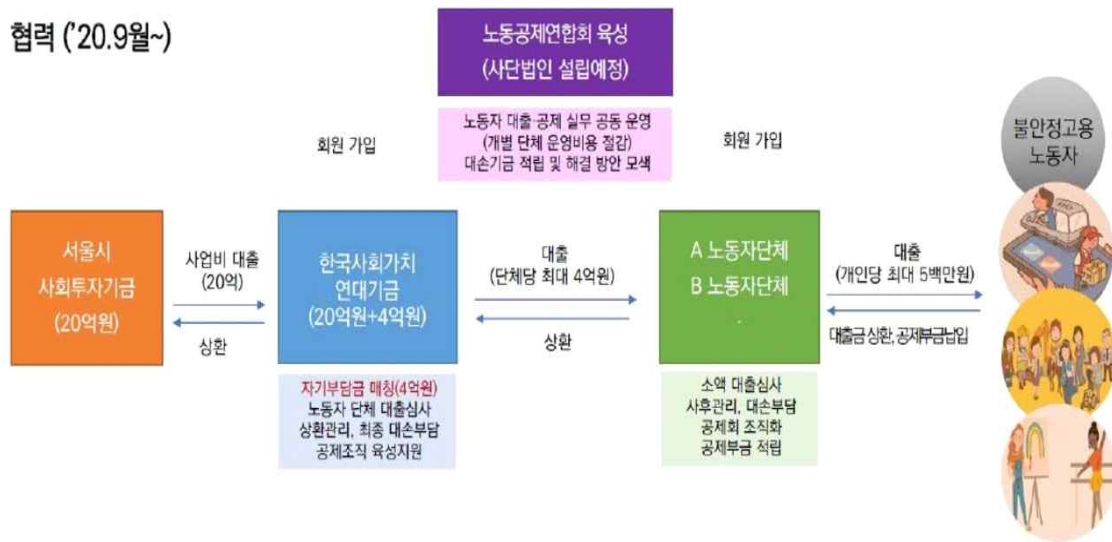


🏠 (참고) 협동조합아파트 사례



□ 노동공제조직 육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협력 (20.9월~)





기술역량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플랫폼협동조합 등)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따뜻한 기술 더하기, 따뜻한 마음 나누기

선정기업 최대 2억 지원 +@기술 지원

모집기한 : 2020년 11월 15일 자정 까지

[참가신청 바로가기](#)



팀당 최대 1억원의 사업실현
금

6개 선정팀에게 각각 최대 1억원의
기술 실원금을 지원합니다. (처등 지
원)



KT ICT 자산 활용 및 협력 기
회

KT ICT 유무형 자산(API, 경영관실
링 등)의 연계를 지원하며, KT와 다
양한 협력 기회가 검토됩니다.



6개월 사업 후 우수팀 추가 지
원

6개월간의 사업추진 후 성과가 우수
한 팀을 선정하여, 추가 실원금을 지
원하고 이후 인벤투트 투자 등의 기회
를 연결합니다.

II. 협동조합 업종조직 활성화 방안

#1. 사회연대 네트워크 기반 검증된 모델 확산

협동조합 업종조직 확산 기반 - 사회연대 네트워크 (사회적자본)

- 의료사협(농민, 노동자), 학교협동조합(무상급식운동 조직 + 교육청/지자체)
-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조직, 역량)

사회적경제/사회연대 지역네트워크 기반 검증된 모델 확산 방안

- 에너지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 지역 네트워크 통한 확산 추진 방안 검토
(지역기반의 그린뉴딜 정책 연계, 지자체 에너지전환센터 등 결합)
- 사회적경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K-뉴딜 등 정부 정책과 연계성을 찾아
지자체와 협력해 검증된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 도모 ~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구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 궁극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대응)

#2.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 금융정책 설계 수반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실현에는 금융의 뒷받침 중요

- 협동조합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접근을 지양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집중해 옴 → 제도개선의 한 영역으로 금융 접근성 개선을 다룰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선 금융적 수단의 확보가 중요함
-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직원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 등 주요 과제가 도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수단은 부족

ex. 도시재생 금융지원 방안, 그린뉴딜 녹색금융 정책 등

III. 협동조합 정체성과 사회적금융

#3. 협동조합 개발기구 형성

일정 기간 실험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 개발

- 시기적으로 필요한 의제와 연결해 자원개발 - ex. 생태전환, 지역일자리 등
- 기 보유한 사회적자본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결성 의사를 지닌 집단 발굴 - ex. 지방자치단체, 공익재단 네트워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군, 그들의 결합 구조

- 업종 연합회 * 정해진 답이지만..
-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지원센터
- 협동조합 전문 컨설팅 기관, 전문가
-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 *** 이들 모두의 파트너십, 결합되는 자원은 각기 다름

협동조합 정체성 - 기반하는 금융시스템과 밀접

특정 경제집단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어떤 금융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가가 영향을 미침 (공급되는 자금의 성질이 중요)

ex. 퀘백의 사회연대경제 - 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다양한 연대기금의 역할

ex. 벤처 생태계 - 벤처 캐피탈의 영향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금융 기관은 서로를 형성하는 선순환 관계

지역 기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비전

사회적금융의 중점과제 → **지역에 뿌리를 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형성**

- 사회적경제 기본법, 지역기반 활성화정책 추진체계
- 제도권 금융기관과 구별되는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의 필요성 (지역의 맥락)
.. 제도권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역에 적합한 금융 생태계 형성 촉진
- 민간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전문역량의 결집을 위해
광역단위로 종합화 권고 (기초단위 자조기금 연결, 거버넌스 참여)

지역의 사회적금융기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연대경제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관련사업 현황 - 지역 금융기반 강화, 지역 혁신주체 역량강화**

- (SIB 선투자) 서울, 경기, 부여 등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 진행. 청년실업,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 등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행정 프로세스 혁신 추구
 - 서울시 청년실업 SIB 투자, 경기도 SIB 운영기관 운전자금 용자
- (지역개발 프로젝트 출자·용자)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 자산화 등이 진행될 때 자기자본 보강을 위한 출자, 시민펀딩 촉진을 위한 매칭용자 지원
 - 안산의료사회협 커뮤니티케어타운 자산화 출자, 목포 건맥1897협동조합 시민펀딩 매칭용자
- (로컬크리에이터 시민펀딩 매칭)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P2P 대출 플랫폼에서 시민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할 때 2~4배 매칭 용자금 지원
 - P2P 금융 및 지역개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협력 프로그램 구성
- (지역임팩트펀드 출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혁신기업, 사회적경제조직에 창업자금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로컬임팩트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출자 참여
 - 경남청년임팩트펀드, 성동소셜임팩트펀드 지원
- (지역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지역 중개기관 육성,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조직 용자지원 사업 진행
 - 경남/전북 등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제정, 중개기관 설립 지원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 -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사회적금융을 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현황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 후, 사회적금융을 주업으로 활동하는 민간기관들의 활동 본격화
- 법인격은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다양함
- 비영리조직은 통상적인 공익법인의 활동 틀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주식회사는 관련 분야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활동
- 액셀러레이터 진입 증가 (법인격에 무관하게 진입 가능, '20.8월 이후 법 개정으로 기관투자자만으로 벤처투자펀드 조성 가능)

사회적금융을 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현황

*	기관명	주요 사업 내용	SVS 협력 현황
1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마이크로크레딧, 통합지원기관	용자지원 15억, 코로나대출 2억
2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 육성사업	-
3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
4	행복나눔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
5	(재)나눔과미래	사회주택 융자	서울시 사회주택 보증사업 협력
6	사단법인 피피엘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
7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 공제사업 (주민협동회)	용자지원 14억, 노동공제회 협력
8	재단법인밴드	사회적경제기업 공제사업	용자지원 15억, 자선환연계 0.9억
9	C프로그램	벤처기부펀드, 여성기업	-
10	(재)한국사회투자	액셀러레이터,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11	(주)소풍벤처스	액셀러레이터, 투융자, 펀드운용	2.5/1억 출자, 32.5/30억 펀드 결성
12	MYSC엠와이소셜컴퍼니	액셀러레이터, 투융자, 펀드운용	4억/2억 출자, 20억/20억 펀드
13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액셀러레이터, 창업벤처전문PEF, 대부업	중개기관 대출관리시스템 보급 협력
14	(주)HG이니셔티브	액셀러레이터, 창업벤처전문PEF, 펀드운용	-

*	기관명	주요 사업 내용	SVS 협력 현황
15	(주)임팩트스퀘어	액셀러레이터, 창업벤처전문PEF, 펀드운용	9억 출자, 58억 펀드결성 추진
16	크레비스파트너스	창업벤처전문PEF 운용사, 펀드운용	-
17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펀드운용	25억 출자, 260억 펀드 결성
18	IFK임팩트금융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융자	2억 투자, 5억 P2P상품 개발
19	D3주빌리파트너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펀드운용	20억 출자, 309억 펀드 결성
20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융자	-
21	옐로우독	신기술금융사, 펀드운용	-
22	오마이컴퍼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 후원 중개	-
23	비플러스	P2P 중개기관, 대출 중개	3억 매칭, P2P상품 개발
24	한살림펀딩	P2P 중개기관, 대출 중개	-
25	루트에너지	P2P 중개기관, 대출 중개	-
26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대부업 법인, 융자	0.1억 투자
27	팬임팩트코리아	SIB 운용사	10억 투자, 29억 결성
28	(주)한국사회혁신금융	SIB 운용사	0.5억 융자
29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금융 도매기금 운용	-
*	주민신탁 동작신탁 북서울협 등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

사회적금융 제도화 방안 - 주안점

- 사회적경제 기본원칙 준용
 - 사회적금융은 '금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활동'이므로, 사회적 금융 제도 또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 ▶ ① 사회적 목적 추구, ② 자율성·독립성; 투명성, ③ 민주적 운영; 이해관계자 참여, ④ 이익의 재투자; 공익적 사용 ⑤ 지역공동체 기여; 상호 협력
- 사회적금융 생태계 핵심요소 제도화로 활성화 기반 마련 - 기금, 주체, 방식
 - 현 단계에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수준의 제도화를 통해 활동 주체와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 (도매기금) 민관 협력 도매기금 조성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시장 조성자
 - (중개기관)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 보유 조직
 - (민간기금 조성) '사회목적 투자조합' 결성 허용 - 민간투자자 참여 확대, 인센티브 부여
 -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기반 마련

사회적금융 제도화 방안 - 민간 주체의 경제적 참여

- 민간주체의 '경제적' 참여 촉진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주체의 경제적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등 사회적가치 추구 조직들이 중개기관, 투자자로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장려
 -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취·창업 프레임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투자자, 조합원, 후원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참여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표 14.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 육성 방안

구 분	연번	항목	내용
자원 접근 기회 제공	A1	자기자본 투자	중개기관이 전문인력, 시스템 구비 등 사업참여 요건 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투자
	A2	사업수행 경험 제공	제도권 금융, 또는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수행 경험을 제공(track record 형성)
상품개발 및 공급 지원	A3	도매기금 공급	사각지대의 수요를 해소하고 사회적가치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중개기관과 공동 개발해 공급
	A4	지식교류	사회적금융 수요조사, 중개기관 간 상호학습, 국제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 개발 및 적용
제도적 기반 마련	A5	인증제 추진	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예비중개기관을 선발해 육성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해 인증제 시행
	A6	정보인프라 제공	기업정보 DB 구축, 평가정보 시스템 공유 사회적금융 관련 오픈플랫폼 형태의 기반구축 추진

신협의 협업과 연대

가치지향금융  북서울신협

북서울신협 전재홍

차례

- 신협의 사회적기여
- 신협의 사회적금융
- 신협의 협업과 연대

(자료출처: 북서울신협, 신협중앙회, 신협사회공헌재단)

신협이사회적기여

총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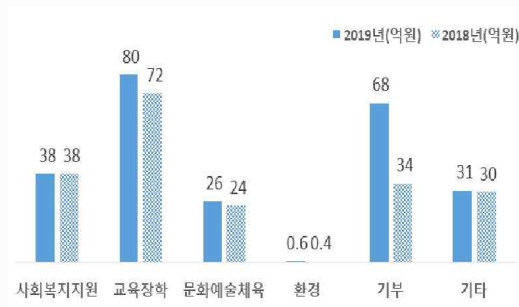
2019년 중 신협은 기부 및 후원 및 지원사업(244억원), 조합원 출자배당 및 이용 배당(1,532억원), 지역 내 복지사업투자(295억원), 신협중앙회 및 신협사회공헌재단(34억원) 등 총 2,105억원을 사회에 환원

- **(지원사업)** 전국 신협은 사회복지(38억원), 교육장학(80.3억원), 문화예술체육(26.1억원), 기부(68.7억원), 기타(30.9억원) 등 총 244억원의 사회공헌자금을 집행
 - 신협 당기순이익(3,701억원) 대비 6.6%의 사회공헌 자금을 집행하여 민간 기업 중 매우 높은 비중을 보임
- **(투자사업)** 복지사업과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위해 295억원의 경제사업기금을 투자하여 조합원과 지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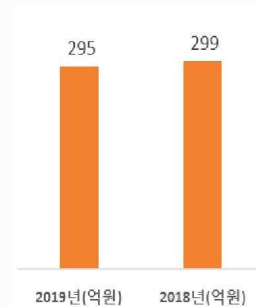
신협이사회적기여

총괄 현황

<사회공헌 지원사업 집행현황>



<복지투자사업>



신협이사회적기여

총괄 현황

- **(조합원 배당)**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 1,444억원(배당율 2.80%), 이용고배당 88억원 등 총 1,532억원의 지역사회 배당을 실시
- **(신협중앙회 및 신협사회공헌재단)**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9년 중 28억원의 자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집행
 - 신협중앙회는 자체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경제 지원에 5.8억원 집행

신협이사회적기여

기부·후원·장학금지급

- **(기부·후원)** 2019년 중 취약계층, 봉사 및 복지단체, 다문화 가정, 재난·재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08억원의 기부 및 후원을 진행
 - 개인 25만명, 단체 5,924곳에 대해 나눔의 손길을 전달
 - 2019년 강원지역 산불피해 당시 금융권 중 가장 큰 11억원을 기부
- **(장학금 지급)**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 증진을 위해 중고생, 대학생 등 개인 4,908명, 학교 등 단체 107곳을 대상으로 23억원의 장학금 지급
- **(기타 분야)** 조합원 및 지역주민 교육사업(57억원), 문화예술·체육분야 지원(26.1억원), 기타 사회공헌(30.9억원) 집행

신협이사회적기여

임직원 봉사활동 등

- (봉사활동) 전국의 신협 임직원 9,412명과 조합원 8,996명 등 연인원 18,408명이 지역 내에서 1인당 18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
 - 무료급식, 집수리, 환경 정화, 의료 봉사, 독거노인 돌봄, 재능기부, 연탄 및 김장 나눔 등 연간 13만 시간의 봉사활동 수행
-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전국 106개 지역아동센터와 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2천5백여 명의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멘토링 사업 진행
 - 센터 아동 대상 경제교육, 과학교실, 견학 및 체험활동, 테마여행 등 운영

신협이사회적기여

신규채용 및 고용

- 전국 신협은 2019년 중 1,413명(신입 1,251명, 경력직 162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
 - 이 중 남직원은 625명(44.2%), 여직원은 55.8%
 - 신협은 지역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100% 지역인재를 채용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20019년 전국 신협 신규채용 현황>

구분	신입	경력	계
남	518	107	625
여	733	55	788
계	1,251	162	1,413

※(참고) 신협 임직원 수는 상근직 10,276명, 비상근 7,205명 등 17,481명

신협이사회적기여

조합원배당

- **(출자 배당)** 2019년 결산실적으로 바탕으로 전국 신협에서 **1,444억원의 조합원 출자배당**을 실시(배당조합의 **평균배당율 2.80%**)
 - 신협은 2019년중 3,7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조합원 배당 후 이익금은 내부에 유보
 - * 외국인 지분이 70%에 달하는 주요 시중은행과 달리 신협의 이익금은 전액 조합원과 지역에 환원하거나 내부에 유보하여 자본유출 우려가 없음
- **(이용고 배당)** 출자 배당 외에 조합원의 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88억원의 이용고배당** 실시

신협이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 **(사회적금융 추진)** 신협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영세하고 업력이 짧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2019년 중 190개 기업에 237억원의 대출(금리 1.0%~3.5% 수준)을 신규 공급**
 - *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금리수준을 크게 낮춘 '상생협력대출금' 운용
 - 2019년말 잔액 기준 **310억원(280개 기업) 운용 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세무회계프로그램 무료 보급,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 후원 등 진행

신협사회적금융

2019년 7대 포용금융사업 추진 실적

- ① (신협815해방대출) 1,602억원(18,441건) 실행
- ②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무이자대출 249억원(2,529건) 및 장학금 3억2천만원(109명 대상) 지급
- ③ (지역특화 협동조합 지원) 제1호 전주한지산업 지원 본격화
- ④ (소상공인 지원) 1신협 10소상공인 결연사업 통해 지원활동 3,324회 진행
- ⑤ (어부바 호 예탁금 출시) 17억2천만원(43조합, 513건)
- ⑥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대출) 129억원(71건)
- ⑦ (위치알림이 무상 보급) 3~7세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5만2천개 보급

신협 사회적금융

상생협력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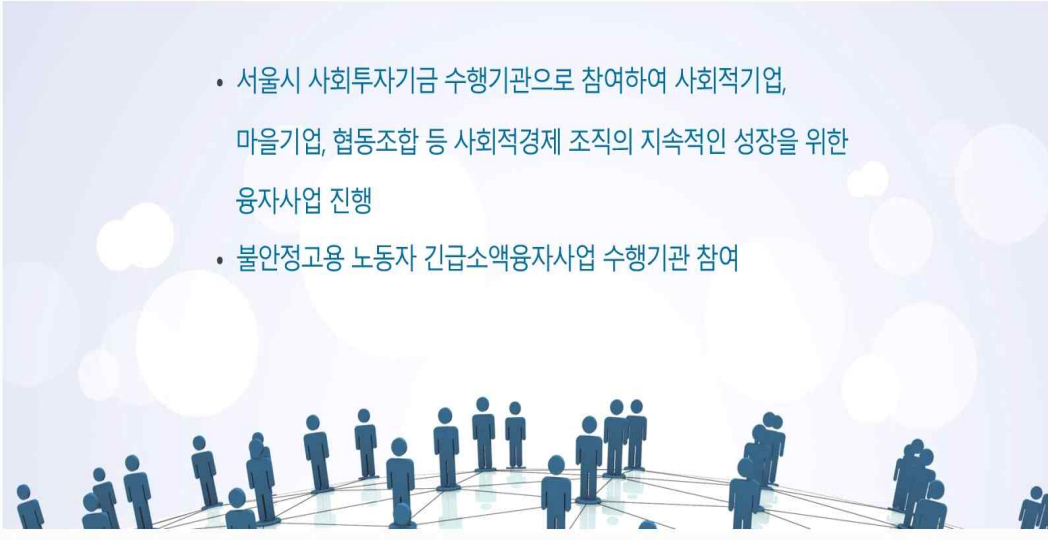
사회적가치 측정 및 완화된 심사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협에서 취급하는 대출

- 대출대상자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출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신용 1억5천만원 / 담보(담보평가액 까지)
- 대출금리 : 2.5~3.0%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부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신협 사회적금융

사회투자기금 운용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융자사업 진행
-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소액융자사업 수행기관 참여



신협 사회적금융

청년언덕 소셜론

2020 북서울신협 청년 언덕 펀딩

청년 크리에이터19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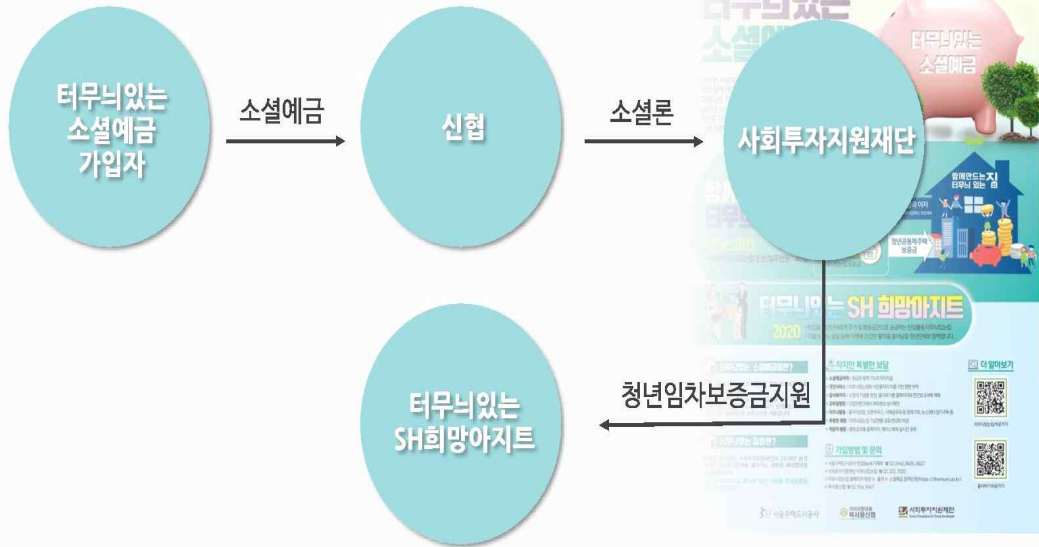
진행절차

- 참가자 모집 (~8/31까지)
- 심사·선정 (19개 팀)
- 청년 크리에이터 펀딩 캠프
- 크라우드펀딩 멘토링
-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및 홍보콘텐츠 제작
- 크라우드펀딩 진행 (10월 중)
- 성공 시 북서울신협 무이자대출
- 참가자 프로젝트 진행
- 자금 상환

OHMYCOMPANY | 사회적금융 북서울신협 | 사회연대은행 | 후원기관인 북서울신협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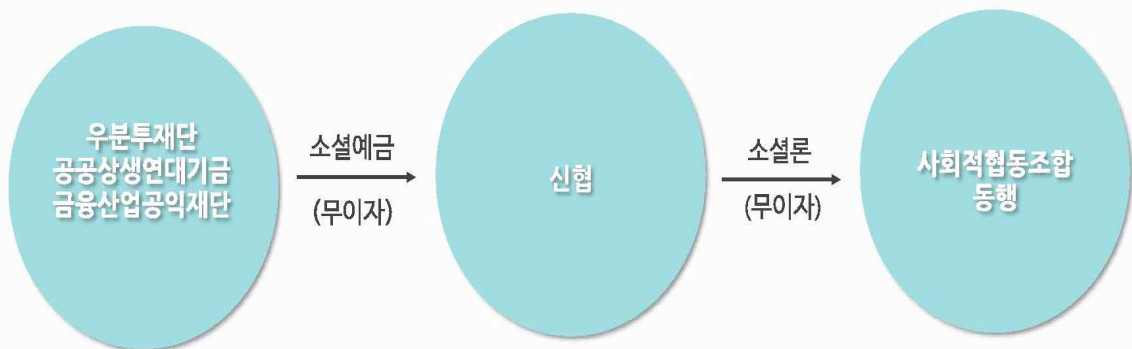
신협 사회적금융

소셜예금 소셜론



신협 사회적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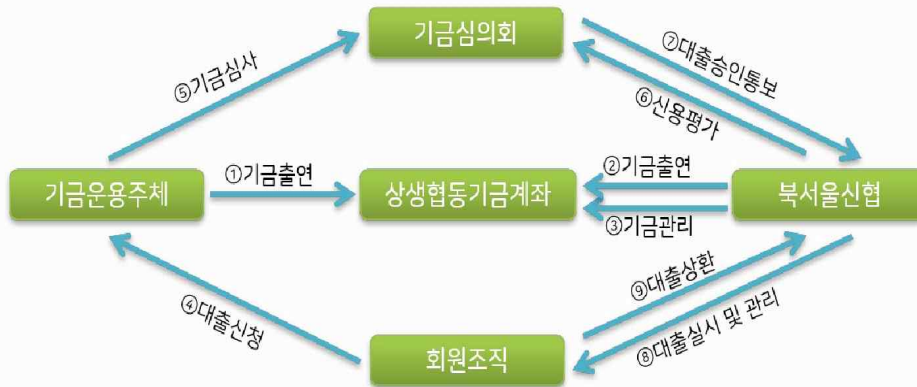
소셜예금 소셜론



신협 사회적금융

자조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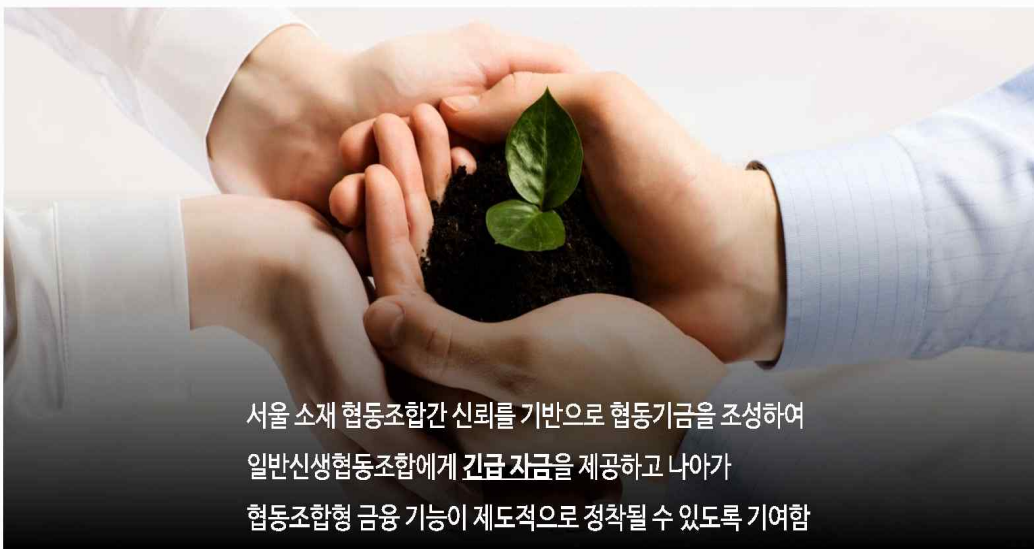
상생협동기금모델 개발 운용



신협의 금융인프라를 활용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신협 사회적금융

자조기금/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협동기금 운용



서울 소재 협동조합간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기금을 조성하여
일반신생협동조합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하고 나아가
협동조합형 금융 기능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함

신협의 협업과 연대

사회적금융 지원

- 협동조합조직(기본법 협동조합 및 업종(지역)별 연합회,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개별법 협동조합 등)은 조직활동을 통해 조합원 니즈 해소, 사회복지기여,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
- 특히 돌봄·보육, 사회서비스 등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분야, 농촌 등 소외지역의 문화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영리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역할기대
- 이들 협동조합조직은 영세성과 담보 부족, 낮은 수익성, 짧은 업력 등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민간의 투자 등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신협의 적극적인 사회적금융 지원으로 협동조합조직과 함께 사회적경제 성장에 기여

신협의 협업과 연대

협동조합 조직과의 협업과 연대에 적극참여

- 협동조합조직이 일정 수준의 매출을 확보하고, 경영 기반 확립 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관계가 필요
- 신협이 지역 기반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 내 협동조합조직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유통 및 판로 지원, 경영 자문,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등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금융 외적 지원 병행
- 신협이 보유한 금융시스템, 조합원 인적자산, 공간, 지역 네트워크, 조직운영경험 등의 다양한 역량을 협업과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조직과 공유

신협의 협업과 연대

신협의 자기자본 참여

-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여 협동조합조직에 자본참여
- 현재 신협은 타법인 출자가 불가하여 금융 지원 방식이 대출로 한정
- 한편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유사기관은 타법인 출자가 가능하나 신협만 타법인 출자가 불가능하여 규제 형평 차원에서도 출자 허용 필요
- 신협의 출자 참여로 재무적 위험을 일부 부담하고 경영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성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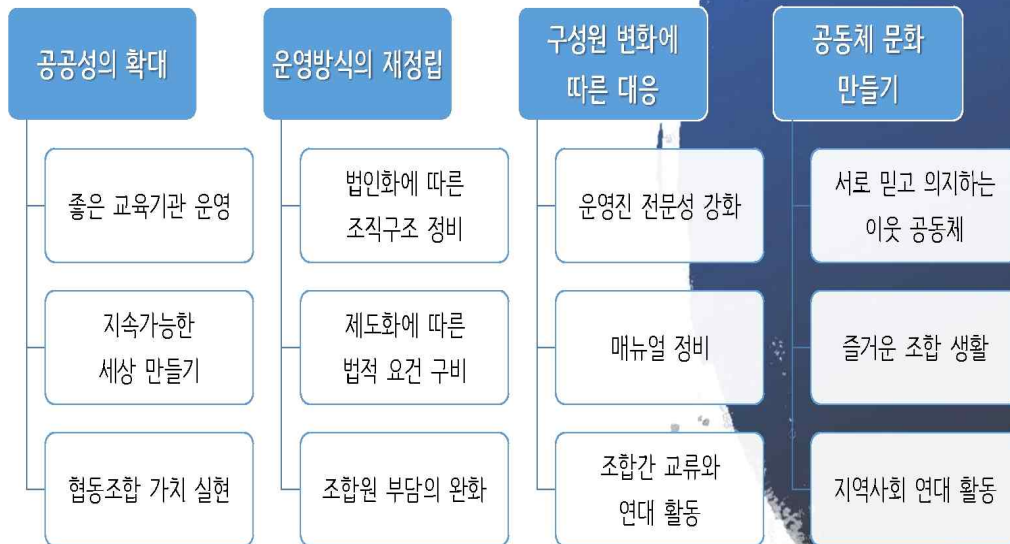
공동육아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현황과 과제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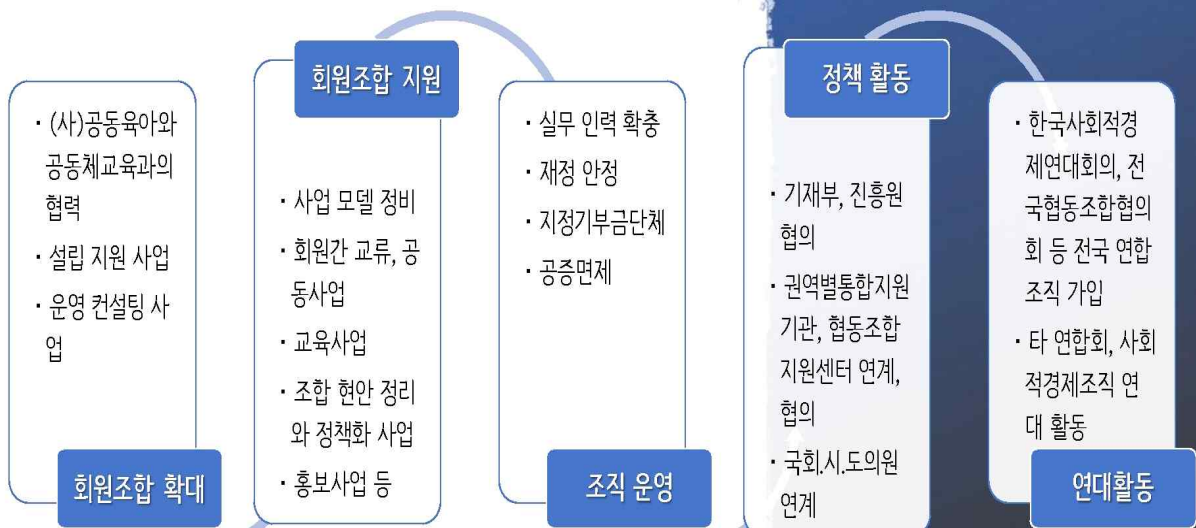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사회적 배경	사업 영역	규모	조합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 보육/교육 질 상승 • 국가 책임 강화 • 교육기관 제도화 → 경쟁 강화 → 사회적 책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마을방과후 • 다함께돌봄센터 • 지역아동센터 → 직접 대면 돌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어린이집 40여 곳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1곳 • 유치원 1곳 • 초등마을방과후 10곳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5곳 • 지역아동센터 1곳 → 임의단체의 법인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 교사 • 지역주민(졸업생 중심) → 서비스 제공자이자 동시에 수혜자 → 다중 이해 관계자 → 다수가 전업이 아닌 자원활동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과제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발전전략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 궁금한 점

- 컨소시엄 아닌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를 왜 만들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원 조합들이 호혜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의 행정, 인력, 재정 등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 한 조합이 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등 여러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 이탈리아 카라박 프로젝트 사례

- 카디아이사회적협동조합+소시에타돌체 교육협동조합+캄스트 급식협동조합+치페아 건축협동조합+글로벌서비스회사+지자체 협력
 → 협동조합들이 설립 비용 부담, 지자체에서 부동산, 운영비 지원

• 캐나다 서스캐처원 사례

- 학교공간 리모델링, 지역 신탁 기부



두레생협 현황 및
협동조합간 과제
두레생협 최현호

1-1. 두레생협연합회 현황

✓ 연합회 각종 지표(2019년 말)



조합원 21만명



매출 1,193억원



매장 114개



직원 약 800명

연합회직원 45명
회원생협직원 약 661명
자회사임직원 약 100명



모임 및 위원회
220개

소모임 108개
마을모임 52개
위원회 6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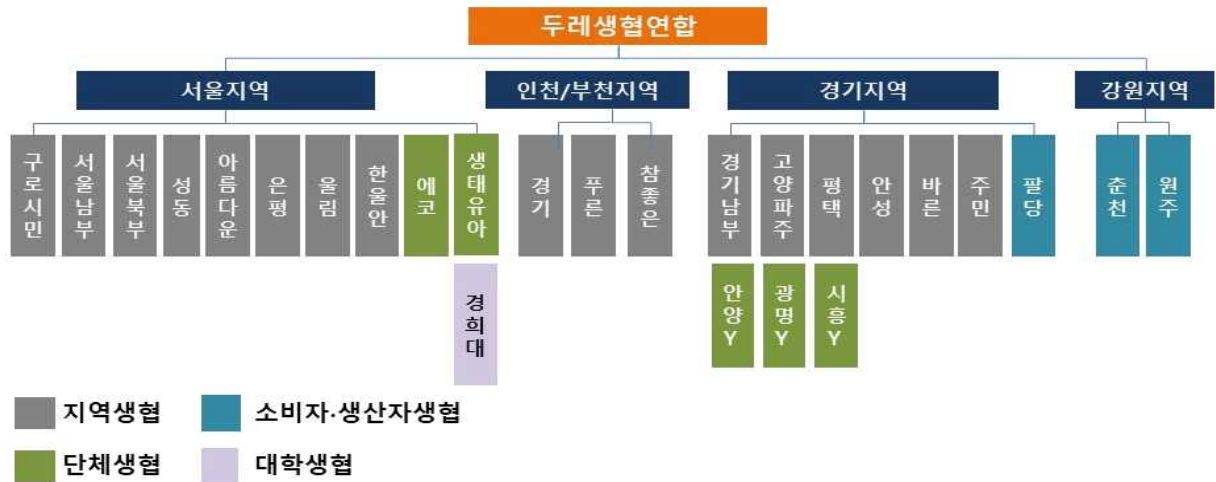


생산지 29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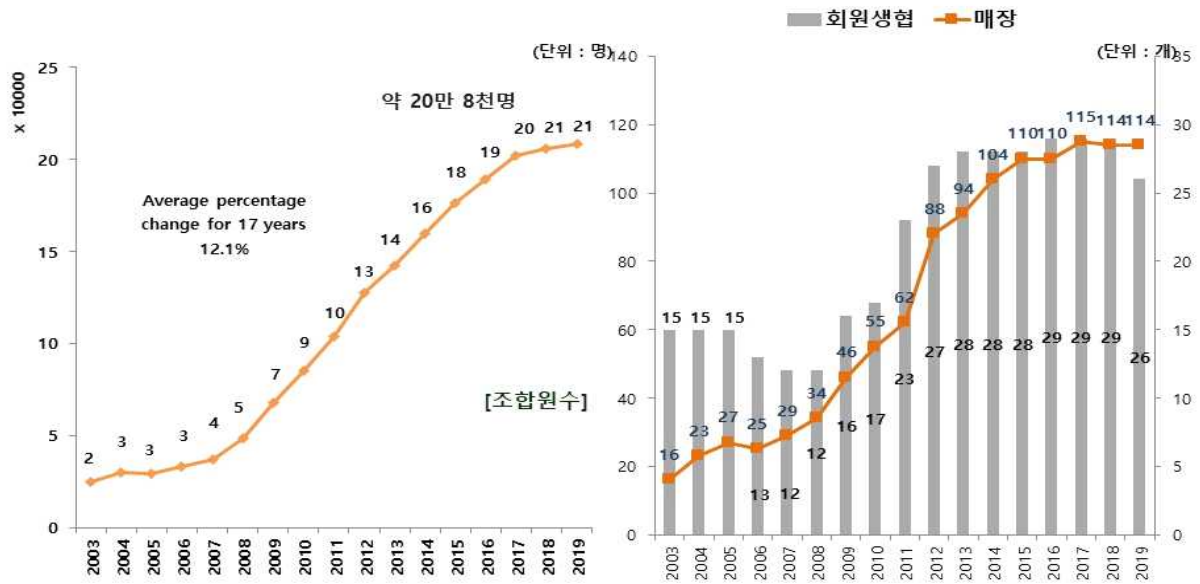
농산생산지 120산지
농민생산자 1,065명
가공생산지 172산지

1-2. 두레생협연합 회원생협 현황

20년 현재 총 26개 회원생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경기/강원지역에 위치하며 매출의 95% 이상이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음



1-3. 두레생협 조합원, 매장 현황



1-4. 두레생협 회원생협별 매장수, 조합원 가구 현황

회원생협 명	매장수	조합원 가구
바른두레생협	8	16,865
경기두레생협	16	28,669
안양YMCA등대생협	1	1,901
광명YMCA등대생협	1	1,846
푸른두레생협	9	27,780
서울남부두레생협	3	8,819
고양파주두레생협	6	11,294
참좋은두레생협	8	20,032
경기남부두레생협	9	16,347
울림두레생협	5	12,057
에코생협	6	15,026
시흥YMCA생협	1	1,973
서울북부두레생협	2	2,771
아름다운생협	2	858
은평두레생협	6	8,583
한울안생협	1	1,535
원주생협	2	4,527
팔당생명살림생협	7	11,558
춘천두레생협	2	2,969
구로시민두레생협	2	2,468
주민두레생협	8	13,074
성동두레생협	1	1,291
경희대생협	1	43
생태유아공동체생협	0	1,101
평택두레생협	5	5,657
안성두레생협	2	7,483
지역생협 26곳	114	226,527

1-5. 두레생협연합회 생활재 사업 주요내용

✓ 생활재 사업부문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생산을
조합원에게는 공정하고 안전한 생활재를



1-6. 2021년도 사회적경제부문 두레생협 과제

부문 과제

코로나시대 사회적 경제 연대사업 강화

핵심 과제

- 생협 진영간 협업사업 추진
- 사회적 기업 플랫폼 강화 (바이쇼셜 사업 강화)
- 지역사회내 이종간협동조합 사업 모색 및 추진

성과 목표

1. 생산·소비의 협력을 통한 신뢰·상생의 협동조합 경제 체계 구축
2. 지역생활운동 확산
3. 사회·경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2. 이종 협동조합간 협업 강화 및 과제

1 사회적 기업 플랫폼 강화 (바이쇼셜 사업 강화)

상생마켓 및 쇼셜밴더 연개사업

- 2021년 기획전(상생마켓과 같은 형태) 및 상시공급(쇼셜밴더사업과 연계 등 입점 행사 병행 추진 요청)
 - 기획전 진행 시 참여 사회적경제 대상 기금조성하여 사회적경제 기금활용 검토
 - 기획전 및 입점 관련 사회적경제 부문별 역할은 한계가 있어 지역단위 네트워크 중심으로 진행
 - 기획전 진행시 중간밴더 업체의 역할에 대해 2021년의 경우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흥원 및 사경센터 예산을 홍보비용으로 활용방안 모색
- 코로나 대응 Buy-Social 종료 ▶ 이후 중장기적 Buy-Social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

2. 이종 협동조합간 협업 강화 및 과제

2 지역사회 내 이종간협동조합 사업 모색 및 추진

□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사업 모색 및 추진

➢ 은평지역

- 은평두레생협 + 은평신협 + 은평사회적경제(주택, 재활 등)

➢ 마포지역

- 올림두레생협 + 들봄사회적협동조합

➢ 성남지역

- 주민두레생협 + 주민신협 + 성남지역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등)

➢ 경기지역

- 경기두레생협 + 공정무역

➢ 원주지역

- 원주생협 + 원주사회적경제센터 + 생산지조직

3. 이종 협동조합간 협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 활성화 방안

➢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두레생협간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 및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생활운동으로 전개

- 생협 : 친환경먹거리 제공, 조합원
- 신협 : 지역기금, 조합원
- 사회적경제 : 유형별 사업 제공(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생산자
- 지자체 : 운동장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례제정

부록

협동조합 정체성인식조사 분석

- 이선화(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전국협동조합협의회 DECADE 2030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회

사람중심의 협동조합 두 번째 10년 전략 2030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정체성인식 조사 결과



이 선 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I. 협동조합의 정체성 인식

1. 배경

1) 팬데믹 위기와 협동조합 운동

- 전세계에 퍼진 COVID-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으며,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해 있음.
 - COVID-19의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소득계층별 충격은 1분위에 집중되었고, 자영업자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으로 2분기에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현대경제연구원, 2020).
 - IMF는 2020년 한국의 성장률은 1.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유종일, 2020).
 - 세계경제성장률은 3.0% 하락할 것으로 추정,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의 해당
 - 고용과 사회안전망의 위기
 - 실제로 고용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는 불안전 노동자가 728만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정홍준, 2020), 자영업의 매출은 급감(천관률, 2020)할 것으로 보임.

2) 협동조합의 정책 환경

(1) 국내 환경

-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 수립은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COOP 2.0 시대로의 도약’ 을 비전으로 두고,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를 목표로 세부전략 수립
- 협동조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제도적 환경 변화
 - 2020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2020.3.31.)으로 협동조합 인프라 강화
 - 이종연합회 허용, 우선출자제도 도입, 휴면조합 해산절차 간소화, 인허가 간주제도

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창립 이후 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음.
-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향후 10년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DECADE 2020~2030 전략 수립

(2) 세계적 환경

□ ICA DECADE 2020~2030

-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Blueprint를 기반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여 구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정체성 심화’, ‘협동조합 운동의 성장’, ‘협동조합 간 협동’,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ICA, 2019).
- 2019년 ICA KIGALI 총회에서 채택, 2021년 서울 Congress에서 최종 발표 예정

□ ICA Congress 서울 개최

-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2021년 12월 개최 예정
-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질적 성장 기대

2. 협동조합 정체성

- 팬데믹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협동조합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은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이는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에서 오히려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주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사회 및 경제에서 주요한 체계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협동조합 운동의 근간이 되는 ‘협동조합 정체성’ 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임.

(1)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 1995년 ICA 설립 100주년 총회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²⁾.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결사체(association)’ 로 정의(definition)함.
-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조(self-help),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민주(democracy), 평등(equality), 형평성(equity), 연대(solidarity)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honesty), 공개(openness),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for others)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고 가치(values)를 명시하고 있음.
- 또한 ICA는 정의와 가치에 이어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7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임.

2) <https://ica.coop/en/whats-co-op/co-o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es>

<표 45> 협동조합 7원칙(ICA)

구분		내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모든 사람에 차별 없이 개방 - 특정목적의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 제한 - 조합원은 권리와 책임 부여
제2원칙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Democratic Member Control)	- 선출된 임원은 책임과 봉사정신 - 모든 조합원은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 -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 운영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자본금 조성에 모든 조합원 협력 분담 - 출자에 대한 배당의 제한 -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이익이 아닌 잉여금
제4원칙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정치적·경제적 측면의 자율과 독립 -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 - 조합원의 자각과 주체성 확보 선결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조합원 및 임직원의 교육과 연수, 자기계발 -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협동조합 정신 체득 - 일반인에 대한 협동조합 이념 확산, 협동영역 확장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동종 협동조합 간 협동 강화 - 이종 협동조합 간 협동 적극 모색 - 협동조합 간 협동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관계 불가분 - 사회경제적·문화적 지속발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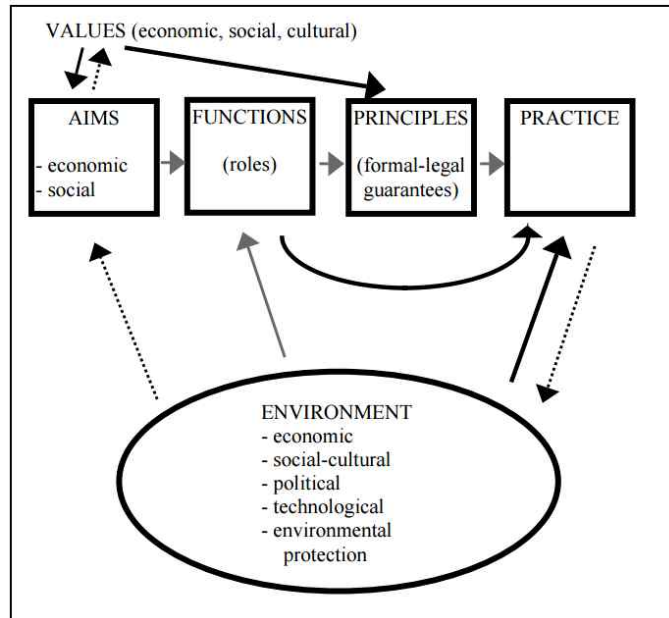
자료 : ICA 홈페이지(<https://ica.coop/>)

- ICA의 7가지 원칙은 조합원에서(제1원칙) 시작하여, 커뮤니티(제7원칙)에서 끝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김형미, 2017).
 - 7가지 원칙 중, 제4원칙(자율과 독립)은 자치 조직임을 표현하는 가장 우선적이며 근간이 되는 원칙임. 그리고 제1원칙(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제2원칙(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 제3원칙(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은 조합원의 소유(membership-owned)를 관철하기 위한 운영 원리임. 마지막으로 제5원칙(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제6원칙(협동조합 간의 협동), 제7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은 협동조합다운 기풍(co-operative ethos)을 실천하기 위한 운영 원리를 의미함.
- 협동조합 원칙은 협동조합을 효율적이게 하며, 협동조합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며, 협동조합운동을 가치 있게 하는데 필수적 특성임³⁾.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정체성은 협동조합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협동조합 가치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원칙임.
- 또한 이는 환경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어서 일관된 협동조합 가치를 추구

3) ICA(1996)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배경문서(Background Paper to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Szabo(2005)는 협동조합 정체성 요소는 기능, 실천 그리고 환경과 주요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하고 명확한 협동조합 정체성이 없다면 그만큼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31] 협동조합 정체성 요소와 연계성

출처: Szabo(2005; 6)

(2) 레이들로 보고서

- 앞에서 살펴본 협동조합 정체성은 레이들로 보고서(Laidlaw, 1980)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1980년 ICA 제27회 모스크바 대회, 『서기 2천년의 협동조합』 보고서 제출
 - 1966년 채택된 ICA 원칙이 소비자협동조합에 편중되었다고 비판하고 70년대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켜보며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 협동조합운동에 닥치는 단계별로 위기를 진단하였는데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이념의 위기를 언급함.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동조합운동의 과제를 제시함.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를 강조함.
 - 세계적 기아문제 해결과 지역식량계획에 참여, 인간적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사회

(Conserver Society),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 건설

- ICA 7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와 관련된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 건설’ 을 특히 강조
-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를 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우선과제로서 협동조합 지역의 건설, 지역사회는 협동조합과 다양한 파트너 협력관계로 발전되어야 함(김기태, 2012).
-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는 ‘사람 중심’ 의 철학으로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협동조합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일부이며 조합원과의 관계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돌봄을 의미함. 이는 의무이자 사업방식이며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구축하는 것임(MacPherson, 2012).
- Gertler(2004)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투자자 소유 기업처럼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에 의해 강하게 지배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I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 및 협동조합 정책 현황에 대한 인식 파악
- 협동조합운동 성장을 위한 욕구 조사
-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30 협동조합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

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 등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Survey Monkey 활용)
- 조사 기간 : 2020년 10월 28일 ~ 11월 15일(약 2주간)

3. 조사 내용

- ICA 7원칙 인지 정도 및 원칙에 따른 운영
-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
- 지역사회 기여
- 당면 문제
- 정책 욕구

4. 설문 구성

<표 46> 설문의 구성

구분	문항수	내용
협동조합의 기본 특성	4	법인형태, 유형, 소재지, 조합원 규모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	5*	7원칙 인지 정도, 7원칙에 의한 운영 정도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한 인식
당면문제	1	주요 당면 문제점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	7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욕구	3	중앙 혹은 지방 정부 정책 협동조합 전략
응답자 일반특성	4	성별, 연령, 직위, 소속
계	24	

* 하위 문항 수 제외

III.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표 47>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범주	사례수	퍼센트
성별 (N=86)	남성	58	67.4
	여성	28	32.6
연령 (N=74)	20대	3	4.1
	30대	15	20.3
	40대	25	33.8
	50대	24	32.4
	60대 이상	7	9.5
직위 (N=86)	이사장(회장)	29	33.7
	상임위원 및 임원	27	31.4
	조합원 등	10	11.6
	직원	20	23.3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높고, 주로 40-50대 이며, 이사장 및 상임위원 등 임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3> 참조).
 - 총 응답자 86명 중, 남성은 67.4%에 해당하는 58명이 응답하였고, 여성은 28명이 응답하여 32.6%를 차지함.
 -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25명(3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24명(32.4%), 30대 15명(20.3%), 60대 이상 7명(9.5%), 20대 3명(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총 응답자 86명 중, 33.7%에 해당하는 29명이 현재 이사장 혹은 회장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함. 다음으로 상임위원 등 임원은 27명(31.4%), 직원(23.3%), 조합원(11.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2) 조직 특성

<표 48> 응답자 조직 특성

(단위: 명, %)

변수	범주	사례수	퍼센트
법인형태 (N=122)	일반협동조합	83	68.0
	사회적협동조합	26	21.3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	7.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3.3
유형 (N=122)	생산자협동조합	16	13.1
	소비자협동조합	17	13.9
	사업자협동조합	22	18.0
	직원협동조합	27	22.1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40	32.8
소재지 (N=12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7	63.1
	비수도권	45	36.9
	경상도	19	15.6
	전라도	8	6.6
	충청도	11	9.0
	제주·강원	7	5.7
조합원 규모 (N=121) 평균 630.0명	10명 미만	40	32.8
	10명~50명 미만	41	33.6
	50명~100명 미만	20	16.4
	100명 이상	21	17.2

□ 조사응답자 4명 중 3명은 ‘일반협동조합’ 형태를 가진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형별로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그리고 10명~50명 미만의 조합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표 4> 참조).

- 응답자의 소속 협동조합 법인형태를 조사한 결과, 122명의 응답자 중 일반협동조합인 사례가 83명으로 68.0%의 분포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 21.3%(26명), 일반협동조합연합회 7.4%(9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기획재정부, 2020)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인형태 분포 순은 유사하나,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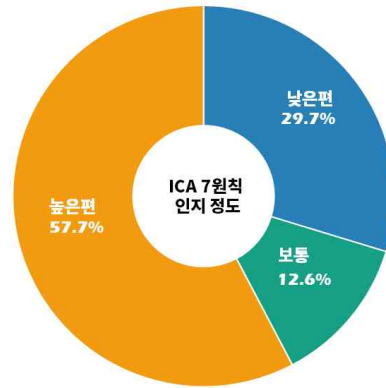
- 일반협동조합 91.3%, 사회적협동조합 8.2%, 연합회 0.5%
- 유형별로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3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원협동조합 22.1%, 사업자협동조합 18.0%, 소비자협동조합 13.9%, 생산자협동조합 13.1% 등의 순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음.
 - 기획재정부(2020)에 따르면, 사업자협동조합의 분포가 7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19.1%, 직원협동조합 4.0% 등의 순의 분포를 보임.

2. 7원칙에 대한 인지 및 운영

<표 49> 7원칙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전혀모른다	13	11.7
잘모르는편이다	20	18.0
보통이다	14	12.6
알고있는편이다	25	22.5
잘알고있다	39	35.1
전체	1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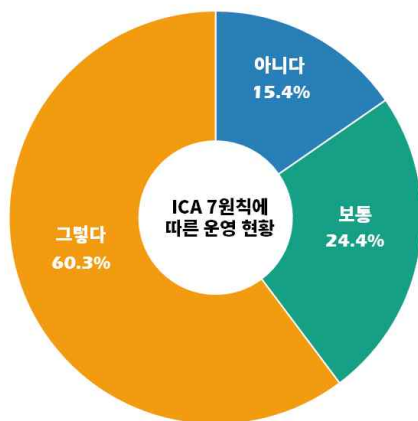


[그림 132] 7원칙 인지 정도

- 111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64명, 57.7%)의 응답자가 ICA의 7원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2] 참조).
- ICA의 7원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111명 중, 35.1%에 해당하는 39명의 응답자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는 편이다’라고 한 응답자는 25.5%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잘 모르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29.7%의 분포를 차지함(<표 5> 참조).

<표 50> 7원칙에 따른 운영

(단위: 명, %)



[그림 133] 7원칙에 따른 운영

구분	빈도	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3	3.8
그렇지않은편이다	9	11.5
보통이다	19	24.4
그런편이다	35	44.9
매우그렇다	12	15.4
전체	78	100.0

- ICA의 7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 7원칙에 따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한 응답자가 60.3%(47명)를 차지하였음([그림 3] 참조).
- 한편, 응답자 4명 중 1명은 7원칙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음.
 - ‘전혀 그렇지 않다’ 3.8%(3명),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5%(9명)으로 15.3%를 차지함(〈표 6〉 참조).
- ICA 7원칙에 대한 인지는 수도권 소재 협동조합이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대 보다는 30대 이상의 그룹이 다소 높았으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응답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조합원 그룹의 응답자는 이사장, 임원, 직원 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7〉 참조).
 - 수도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응답자 중, ICA 7원칙에 대해 인지가 높은편에 속하는 응답자는 62.9%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41.5%) 낮은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수도권 지역 응답자가 7원칙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그룹의 응답자에 비해 30대 이상인 응답자 그룹은 7원칙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대 응답자 모두 7원칙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7원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응답자가 속한 협동조합의 유형이 생산자협동조합인 경우엔 7원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절반 이상(64.3%)을 차지함. 그러나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7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 중,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응답자 중, 78.9%에 해당하는 30명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냈음.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x^2=19.292$; $p < .005$).
 - 7원칙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 이사장 및 회장(62.1%), 상임위원 및 임원(66.7%), 직원(65.0%) 등에 비해 조합원(30.0%)은 그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외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사장 등에게는 그만큼 학습 기회가 많

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표 51> 특성별 7원칙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낮은편	보통	높은편
지역	111	33(29.7%)	14(12.6%)	64(57.7%)
수도권	70	16(22.9%)	10(14.3%)	44(62.9%)
비수도권	41	17(41.5%)	4(9.8%)	20(48.8%)
연령	74	21(28.4%)	9(12.2%)	44(59.5%)
20대	3	3(100.0%)	-	-
30대	15	5(33.3%)	2(13.3%)	8(53.3%)
40대	25	8(32.0%)	4(16.0%)	13(52.0%)
50대	24	4(16.7%)	2(8.3%)	18(75.0%)
60대 이상	7	1(14.3%)	1(14.3%)	5(71.4%)
유형	111	33(29.7%)	14(12.6%)	64(57.7%)
생산자	14	9(64.3%)	1(7.1%)	4(28.6%)
소비자	14	3(21.4%)	4(28.6%)	7(50.0%)
사업자	20	7(35.0%)	3(15.0%)	10(50.0%)
직원	25	8(32.0%)	4(16.0%)	13(52.0%)
다중이해	38	6(15.8%)	2(5.3%)	30(78.9%)
직위	86	24(27.9%)	10(11.6%)	52(60.5%)
이사장(회장)	29	7(24.1%)	4(13.8%)	18(62.1%)
임원	27	4(14.8%)	5(18.5%)	18(66.7%)
조합원	10	6(60.0%)	1(10.0%)	3(30.0%)
직원	20	7(35.0%)	-	13(65.0%)

3.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

□ 협동조합 정체성은 ICA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의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ICA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인식을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한 인식,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원칙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1) 협동조합 정의 인식

□ 본 조사 응답자들의 협동조합 정의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협동조합의 본질, 주체, 목적, 수단과 관련하여 6개 항목으로 측정함.

○ 본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동조합 정의 인식이 높음을 의미함. 협동조합 정의 인식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48로 매우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음.

<표 52> 협동조합 정의 인식

(5점 만점)

구분	N	평균	SD
조합원이 주인인 자율조직(본질)	111	3.77	1.248
공동의 이익 추구(본질)	111	3.87	1.214
사람 중심의 조직(주체)	111	3.95	1.242
공통의 필요와 욕구해결(목적)	111	3.87	1.137
조합원 공동 소유 조직(수단)	111	3.94	1.170
민주적 의사결정 조직(수단)	111	3.92	1.153
계	111	3.89	1.064

□ 응답자들의 협동조합 정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89점($SD=1.064$)으로 높은 수준의 정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8> 참조).

□ 하위 범주 별로 살펴보면, ‘사람 중심 조직’에 대한 인식도가 3.95점($SD=1.242$)으

4) <https://www.ica.coop/en/cooperatives/cooperative-identity>

로 가장 높았으며, ‘조합원 공동 소유 조직’ 3.94점($SD=1.170$), ‘민주적 의사결정 조직’ 3.92점($SD=1.15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비해 평균 인지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조합원이 주인인 자율조직’ (3.77점; $SD=1.248$), ‘공동의 이익 추구’ (3.87; $SD=1.214$), ‘공통의 필요와 욕구 해결’ (3.87; $SD=1.137$) 등임.

2) 협동조합 가치 인식

-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가치와 관련된 협동조합 가치 및 조합원 가치 등 10개의 항목에 대해 조사함.
 - 본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함. 협동조합 가치 인식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68로 매우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음.

<표 53> 협동조합 가치 인식

(5점 만점)

구분	N	평균	SD
자조 가치 기반(조합 가치)	106	3.85	1.169
자기 책임 가치 기반(조합 가치)	106	3.92	1.101
민주 가치 기반(조합 가치)	106	3.98	1.121
평등 가치 기반(조합 가치)	106	3.99	1.108
형평성 가치 기반(조합 가치)	106	3.99	1.028
연대 가치 기반(조합 가치)	106	3.96	1.077
정직 신조(조합원 가치)	106	4.10	0.995
공개 신조(조합원 가치)	106	4.01	1.108
사회적 책임 신조(조합원 가치)	106	3.90	1.077
타인에 대한 배려 신조(조합원 가치)	106	3.86	1.055
계	107	3.95	0.956

- 응답자들의 협동조합 가치 인식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95점($SD=.956$)으로 높

은 수준의 가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9〉 참조).

- 하위 범주 별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정직 신조’ (4.10점; $SD=0.995$) 및 ‘공개 신조’ (4.01점; $SD=1.108$)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 가치 기반’ (3.98점; $SD=1.121$), ‘평등 가치 기반’ (3.99점; $SD=1.108$), ‘형평성 가치 기반’ (3.99점; $SD=1.028$)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자기 책임 가치 기반’ (3.92점; $SD=1.101$) 및 ‘연대 가치 기반’ (3.96점; $SD=1.077$)에 대한 동의 인식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비해 ‘사회적 책임’ (3.90점; $SD=1.077$), ‘타인에 대한 배려’ (3.86점; $SD=1.055$), ‘자조 가치 기반’ (3.85점; $SD=1.169$)과 관련한 인식에 동의하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3) 협동조합 원칙 인식

- 응답자들은 협동조합 원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동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협동조합 7원칙을 1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함. 본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함. 협동조합 가치 인식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50으로 매우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음.
- 응답자들의 협동조합 원칙 인식에 대한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3.86점($SD=.842$)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원칙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10〉 참조).
- 하위 범주 별로 분석한 결과, ‘자금 출자 의무’ 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4.19점 ($SD=1.142$)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1인 1표 의사결정’ (4.11점; $SD=1.152$), ‘자율성 보장’ (4.03점; $SD=1.137$), ‘의사결정에 조합원 적극적 참여’ (4.00점; $SD=1.116$), ‘독립성 보장’ (4.00점; $SD=1.141$) 등의 순으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리고 ‘민주적 조직’ (3.98점; $SD=1.157$),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본출자에도 자율성 보장’ (3.95점; $SD=1.031$), ‘공평한 출자’ (3.92점; $SD=1.125$), ‘차별 없는 조합원 가입’ (3.84점; $SD=1.207$), ‘조합원 자발적 조직’ (3.83점; $SD=1.20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3.79점; $SD=1.062$), ‘협동조합 간 협력’ (3.76점; $SD=1.026$)과 관

련한 동의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지역 협동조합과 협동’ (3.69점; $SD=1.102$), ‘조합원 교육’ (3.62점; $SD=1.121$), ‘지역사회 지원 사업’ (3.56점; $SD=0.983$), ‘임직원 교육’ (3.52점; $SD=1.076$)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낮다는 것은 교육 관련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표 54> 협동조합 원칙 인식

(5점 만점)

구분	N	평균	SD
조합원 자발적 조직(1원칙)	107	3.83	1.201
차별 없는 조합원 가입(1원칙)	107	3.84	1.207
의사결정에 조합원 적극적 참여(2원칙)	107	4.00	1.116
1인 1표 의사결정(2원칙)	107	4.11	1.152
민주적 조직(2원칙)	107	3.98	1.157
자금 출자 의무(3원칙)	107	4.19	1.142
공평한 출자(3원칙)	107	3.92	1.125
자율성 보장(4원칙)	107	4.03	1.137
독립성 보장(4원칙)	107	4.00	1.141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본출자에도 자율성 보장(4원칙)	107	3.95	1.031
조합원 교육(5원칙)	107	3.62	1.121
임직원 교육(5원칙)	107	3.52	1.076
협동조합 간 협력(6원칙)	107	3.76	1.026
지역 협동조합과 협동(6원칙)	107	3.69	1.10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7원칙)	107	3.79	1.062
지역사회 지원 사업(7원칙)	107	3.56	0.983
계	107	3.86	0.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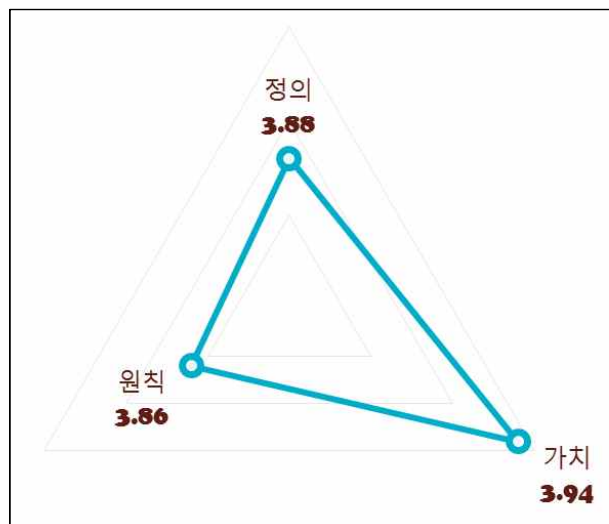
- 지금까지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을 구성하는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해 보았음.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에 대해 분석해 보면, 5점 만점에 3.89점($SD=.925$)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11> 참조).

<표 55>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N=111)

(5점 만점)

구분	N	평균	SD
정체성 인식	111	3.89	0.925
정의인식	111	3.88	1.063
가치인식	107	3.94	0.956
원칙인식	107	3.86	0.841

- 이 중에서 협동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 원칙’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림 4] 참조).
-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실천을 담보하는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아직은 협동조합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 이로 인해 협동조합 운동이 아직은 우리사회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사장으로부터 조합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결과는 이후 우리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34]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

<표 56> 성별 및 지역별 정체성 인식 차이

(단위: 명)

	범주	사례수	평균(SD)	t(df)
성별	남성	58	3.92(.983)	-1.211(84)
	여성	28	4.17(.679)	
지역	수도권	70	3.98(.975)	1.326(109)
	비수도권	41	3.74(.821)	

□ 남성 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2> 참조).

- 성별에 따른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3.92점; $SD=.983$)에 비해 여성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는 0.25 더 높은 4.17점($SD=.679$)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도권(3.98점; $SD=.975$) 소재 협동조합에 속한 응답자들은 비수도권 응답자(3.74점; $SD=.821$)에 비해 0.24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7> 연령 및 직위에 따른 정체성 인식 차이

	구분	사례수(명)	정체성 인식	SD	F
연령	20대	3	3.60	0.650	2.573 *
	30대	15	3.77	0.618	
	40대	25	3.88	0.923	
	50대	24	4.40	0.732	
	60대 이상	7	4.40	0.700	
직위	이사장	29	4.44	0.576	5.170 **
	상임위원 및 임원	27	3.98	0.847	
	조합원	10	3.42	1.322	
	직원	20	3.68	0.861	

* $p<.05$, ** $p<.01$

- 연령 및 직위에 따른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령 및 직위 별 동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3〉 참조).
 - 연령 별 정체성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F=2.573$; $p < .05$).
 - 50대 4.40점($SD=.732$), 60대 이상의 그룹은 4.40점($SD=.700$)으로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 다음으로 40대 3.88점($SD=.923$), 30대 3.77점($SD=.618$), 20대 3.60점($SD=.650$)의 순임.
 - 이사장 및 임원이 인식하고 있는 협동조합 정체성 동의정도는 조합원 및 직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F=5.170$; $p < .01$).
 - 이사장 그룹의 협동조합 정체성 동의정도는 4.44점($SD=.57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상임위원 및 임원 3.98점($SD=.847$), 직원 3.68점($SD=.861$), 조합원 3.42점($SD=1.322$)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 및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따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해석됨.

4. 지역사회 기여

- 응답자가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발전’ 및 ‘사회적 발전’ 과 관련한 9개 항목으로 측정함.
 -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1점)’ 에서 ‘매우 기여한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발전 기여 인식이 높음을 의미함.
 - 지역사회 경제적 기여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s α 값은 0.902이며, 사회적 기여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s α 값은 0.998로 매우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음.

<표 58> 지역사회발전 기여

(5점 만점)

구분		N	평균	SD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전체		100	3.91	0.803
경제적 기여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해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한 시장개척	100	3.74	0.906
	지역자금의 지역내 순환 등 순환경제구축	100	3.96	0.942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현실적 경제적 대안 제시와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	100	3.98	0.910
사회적 기여	인적자원개발	100	3.94	0.983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100	3.94	0.930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100	3.90	0.959
	지방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00	3.93	0.956

- 먼저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현실적 경제적 대안 제시와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 에 대한 기여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반면,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해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한 시장개척’ 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았음.
 -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현실적·경제적 대안 제시와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 에 대한 기여가 3.98점($SD=0.91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순환 등 순환경제구축(3.96점; $SD=0.942$)’,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해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한 시장개척(3.74점; $SD=0.906$)’ 등의 순으로 평가함.

- 응답자들은 지역의 사회적 발전에 대한 기여 부분에서 ‘인적자원개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지방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에 대한 평가가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3.93점; $SD=0.956$)’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3.90점; $SD=0.959$)’ 등의 순임.
- 응답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3.89점)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3.93점)하는 것에 다소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기여 인식 차이

(단위: 명)

구분		N	평균	SD	t(df)
성별	남성	57	3.97	0.848	-0.201(84)
	여성	27	4.00	0.621	
지역	수도권	62	4.07	0.754	2.586(98)*
	비수도권	38	3.66	0.824	

* $p < .05$

-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수도권에 지역에 있는 응답자가 평가한 지역사회 기여도와 비수도권 응답자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5> 참조).
- 자신이 속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해 남성은 3.97점($SD=0.848$), 여성은 4.00점($SD=0.621$)으로 남성 대비 0.04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도권을 소재지로 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4.07점($SD=0.754$)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반면, 비수도권에 속해 있는 응답자는 0.42점 더 낮은 3.66점($SD=0.824$)으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t=2.586, p<.05$).

5. 당면 문제

<표 60> 당면문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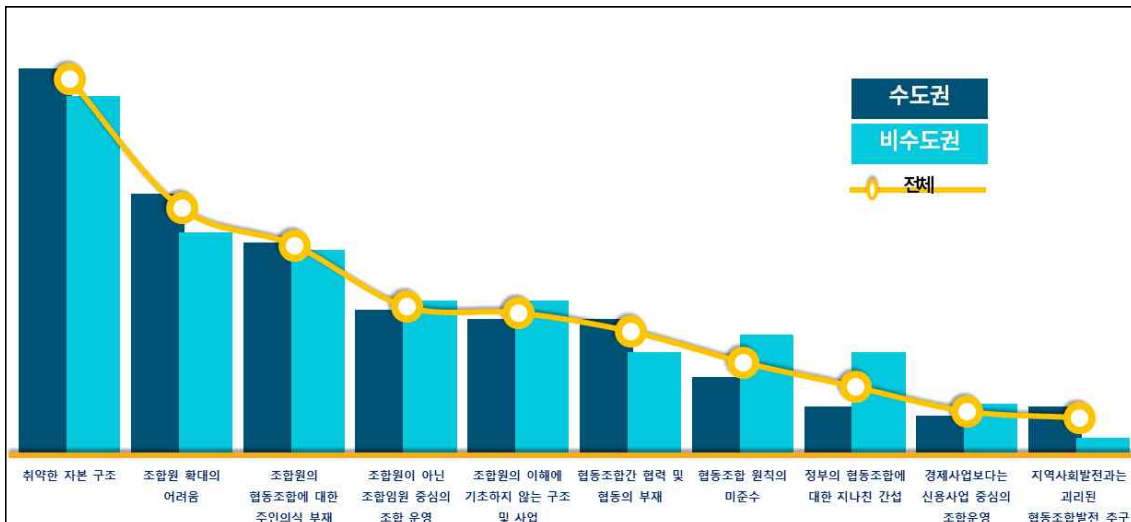
(단위: 명, %)

범주	사례수	퍼센트	케이스퍼센트
취약한 자본 구조	61	25.3%	59.8%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40	16.6%	39.2%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주인의식 부재	34	14.1%	33.3%
조합원이 아닌 조합임원 중심의 조합 운영	24	10.0%	23.5%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구조 및 사업	23	9.5%	22.5%
협동조합간 협력 및 협동의 부재	20	8.3%	19.6%
협동조합 원칙의 미준수	15	6.2%	14.7%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	11	4.6%	10.8%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중심의 조합운영	7	2.9%	6.9%
지역사회발전과는 괴리된 협동조합발전 추구	6	2.5%	5.9%
계	241	100.0%	236.3%

- 협동조합이 당면한 문제는 ‘취약한 자본 구조’,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주인의식 부재’, ‘임원 중심의 운영’,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구조 및 사업’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16> 참조).
- 협동조합이 처해 있는 주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25.3%에 해당하는 61명의 응답자들이 ‘취약한 자본 구조’를 가장 주요한 문제로 선택하였음. 다음으로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40명(16.6%),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주인의식 부재’ 34명(14.1%), ‘조합원이 아닌 조합 임원 중심의 조합 운영’ 24명(10.0%),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구조 및 사업’ 23명(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자본구조의 취약함’ 과 함께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은 협동조합 성장에 부합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협동조합 운영 구조 및 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도 깊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이 외에 응답자들은 협동조합 경영 측면, 협동조합 정체성 측면, 리더십 등 내부 운영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행정과의 어려움도 주요한 당면 문제로 지적하였음.
- 응답자들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발전소 부지 마련의 어려움’, ‘행정의 협조’, ‘일거리 소득이 줄어들’, ‘연장자, 장기근속자 및 직책자들 중심으로 재산의 처리 및 사업 수행’, ‘조합 운영진들의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 및 협동조합 정신 등의 운영마인드 부족’, ‘협동조합에 하는 업무에 대한 안 좋은 인식(태양광)’,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휴업’, ‘돈만 바라보고 옹기는 조합원’, ‘비즈니스모델 변화’, ‘경영의 어려움’, ‘공동의 이익 추구’ 등을 언급함.



[그림 135] 지역별 당면문제(복수응답)

- 협동조합이 당면해 있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5] 참조).
- 수도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응답자들과 비수도권에 속해 있는 응답자 모두 ‘취약한 자본 구조’,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등 사회환경적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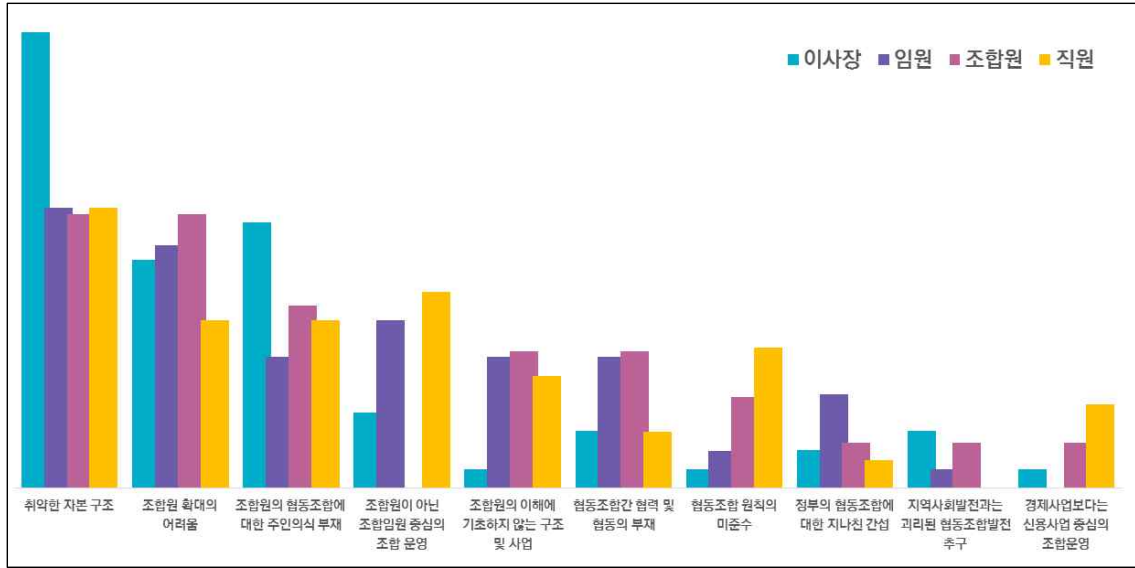
- 그러나 ‘협동조합 정체성’ 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소속 응답자에 비해 비수도권 소속 응답자가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7> 참조).
 - ‘조합원이 아닌 조합임원 중심의 조합 운영’ 에 대한 비수도권 응답률은 10.3%로 수도권 9.7%에 비해 0.6%p 더 높음.
 -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구조 및 사업’ 에 대한 인식 역시, 비수도권(10.3%)이 수도권(9.1%)보다 1.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협동조합 원칙의 미준수’ 에 대해 비수도권은 수도권(5.2%) 대비 2.9%p 더 높은 8.0%의 비율을 보였음.
-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 에 대해 문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간섭에 대한 문제 인식은 수도권은 3.2%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6.9%의 분포를 차지하여 수도권 대비 3.6%p 더 높았음.

<표 61> 지역별 당면 문제(복수응답)

(단위: 명, %)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사례수	퍼센트
취약한 자본 구조	61	25.3%	40	26.0%	21	24.1%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40	16.6%	27	17.5%	13	14.9%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주인의식 부재	34	14.1%	22	14.3%	12	13.8%
조합원이 아닌 조합임원 중심의 조합 운영	24	10.0%	15	9.7%	9	10.3%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구조 및 사업	23	9.5%	14	9.1%	9	10.3%
협동조합간 협력 및 협동의 부재	20	8.3%	14	9.1%	6	6.9%
협동조합 원칙의 미준수	15	6.2%	8	5.2%	7	8.0%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	11	4.6%	5	3.2%	6	6.9%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중심의 조합운영	7	2.9%	4	2.6%	3	3.4%
지역사회발전과는 괴리된 협동조합발전 추구	6	2.5%	5	3.2%	1	1.1%
계	241	100.0%	154	100.0%	87	100.0%

□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요 당면 문제에 대해 협동조합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식 정도에 다소 차이를 보였음([그림 6] 참조).



[그림 136] 직위별 당면 문제

<표 62> 직위별 당면 문제(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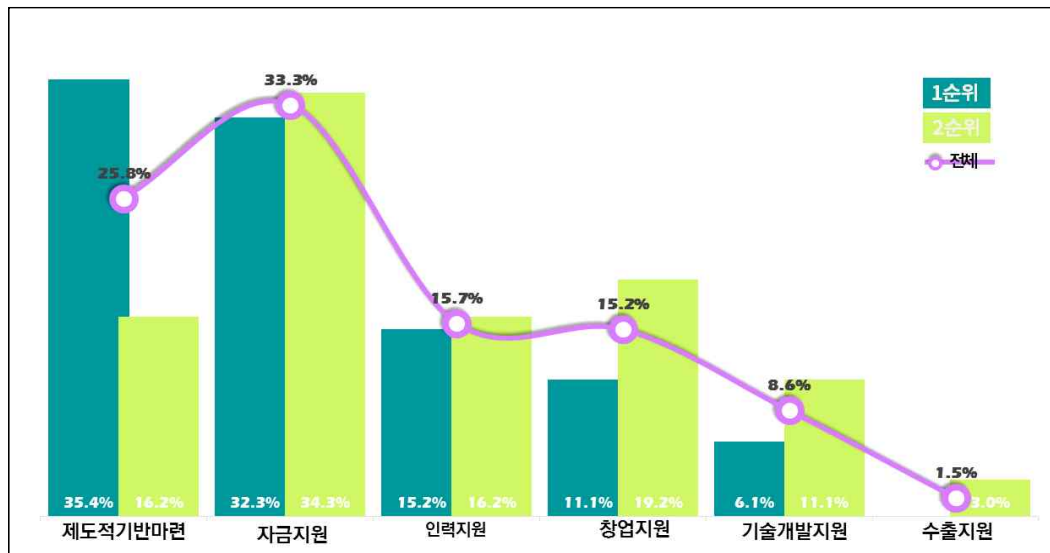
	전체	이사장	상임위원 및 임원	조합원	직원
취약한 자본 구조	55(27.2%)	24(36.9%)	15(22.7%)	6(22.2%)	10(22.7%)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37(18.3%)	12(18.5%)	13(19.7%)	6(22.2%)	6(13.6%)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주인의식 부재	31(15.3%)	14(21.5%)	7(10.6%)	4(14.8%)	6(13.6%)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중심의 조합 운영	20(9.9%)	4(6.2%)	9(13.6%)	-	7(15.9%)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구조 및 사업	15(7.4%)	1(1.5%)	7(10.6%)	3(11.1%)	4(9.1%)
협동조합간 협력 및 협동의 부재	15(7.4%)	3(4.6%)	7(10.6%)	3(11.1%)	2(4.5%)
협동조합 원칙의 미준수	10(5.0%)	1(1.5%)	2(3.0%)	2(7.4%)	5(11.4%)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	9(4.5%)	2(3.1%)	5(7.6%)	1(3.7%)	1(2.3%)
지역사회발전과는 괴리된 협동조합발전 추구	5(2.5%)	3(4.6%)	1(1.5%)	1(3.7%)	-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중심의 조합운영	5(2.5%)	1(1.5%)	-	1(3.7%)	3(6.8%)
계	202(100.0%)	65(100.0%)	66(100.0%)	27(100.0%)	44(100.0%)

- ‘취약한 자본 구조’,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주인의식 부재’에 대한 인식은 이사장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 구조 및 사업’, ‘협동

조합간 협력 및 협동의 부재’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는 괴리된 협동조합발전 추구’에 대한 문제 인식은 조합원 그룹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합원이 아닌 조합임원 중심의 조합 운영’, ‘협동조합 원칙의 미준수’,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중심의 조합운영’에 대해서는 직원 그룹에서 당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임원 그룹에서는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함.

6. 정책욕구



[그림 137] 정책욕구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제도적 기반 마련’ 과 ‘자금 지원’ 인 것으로 조사됨([그림 7] 참조).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과제에 대한 질문에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제도적인 기반 마련’ 은 35명(35.4%), ‘자금 지원’ 은 32명(32.3%), ‘인력지원’ 은 15명(15.2%), ‘창업지원’ 은 11명(11.1%), ‘기술개발지원’ 은 6명(6.1%)이 응답하였음(<표 19> 참조).
 - 2순위 응답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 중, ‘자금지원’ 을 선택한 응답자가 34.3%(34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창업지원’ 에 19명(19.2%)이 응답하였고,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력 지원’ 은 각각 16명(16.2%)씩 선택하였으며, ‘기술개발 지원’ 은 11.1%에 해당하는 11명이 응답함.
- 복수응답 전체를 종합하면, ‘자금지원’ 을 가장 많이(66명, 33.3%)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에 대한 욕구도 25.8%(51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와 함께 ‘인력지원’ 15.7%(31명) 및 ‘창업지원’ 15.2%(30명) 등에 대한 정책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로 ‘취약한 자본 구조’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임.
-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 및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63> 정책욕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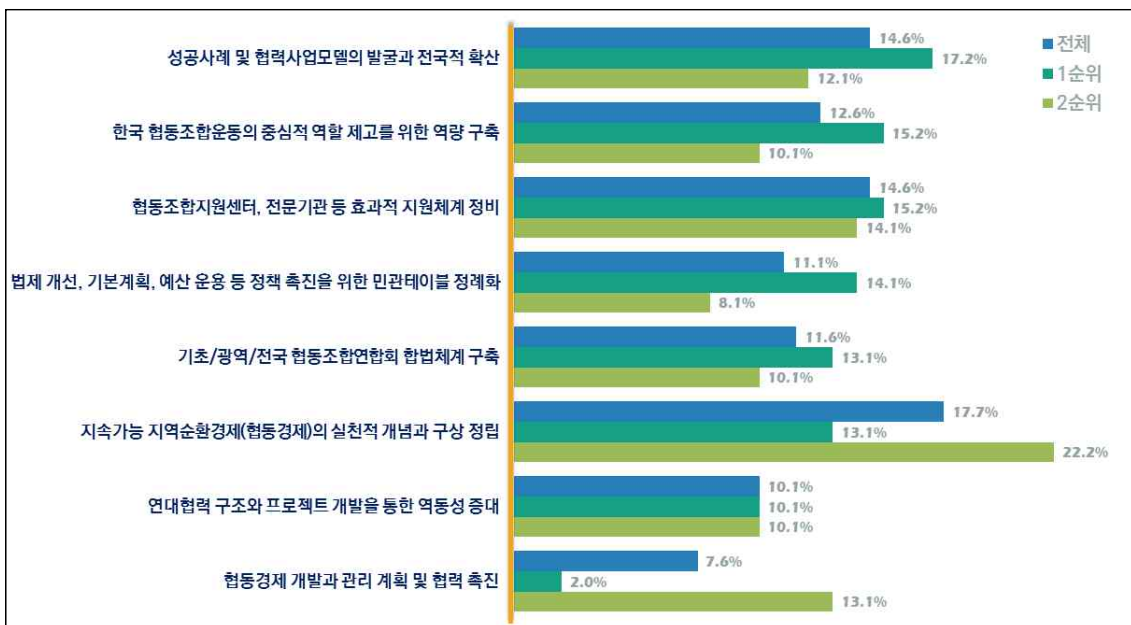
범주	1순위	2순위	전체
자금지원(정책자금, 보증 등)	32(32.3%)	34(34.3%)	66(33.3%)
제도적기반마련(법률, 조례 등)	35(35.4%)	16(16.2%)	51(25.8%)
인력지원(맞춤형 인력 지원 등)	15(15.2%)	16(16.2%)	31(15.7%)
창업지원(교육, 컨설팅, 창업 자금 등)	11(11.1%)	19(19.2%)	30(15.2%)
기술개발지원(R&D)	6(6.1%)	11(11.1%)	17(8.6%)
수출지원(해외 진출)	-	3(3.0%)	3(1.5%)
계	99(100.0%)	99(100.0%)	198(100.0%)

7. 협동조합운동 전략

<표 64> 협동조합운동 전략

(단위: 명, %)

범주	1순위	2순위	전체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의 실천적 개념과 구상 정립	13(13.1%)	22(22.2%)	35(17.7%)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기관 등 효과적 지원체계 정비	15(15.2%)	14(14.1%)	29(14.6%)
성공사례 및 협력사업모델의 발굴과 전국적 확산	17(17.2%)	12(12.1%)	29(14.6%)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역할 제고를 위한 역량 구축	15(15.2%)	10(10.1%)	25(12.6%)
기초/광역/전국 협동조합연합회 합법체계 구축	13(13.1%)	10(10.1%)	23(11.6%)
법제 개선, 기본계획, 예산 운용 등 정책 촉진을 위한 민관테이블 정례화	14(14.1%)	8(8.1%)	22(11.1%)
연대협력 구조와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역동성 증대	10(10.1%)	10(10.1%)	20(10.1%)
협동경제 개발과 관리 계획 및 협력 촉진	2(2.0%)	13(13.1%)	15(7.6%)
계	99	99	198



[그림 138] 협동조합 운동 전략

-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은 ‘성공사례 및 협력사업모델의 발굴과 전국적 확산’,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역할 제고를 위한 역량 구축’ 그리고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기관 등 효과적 지원체계 정비’ 인 것으로 조사됨([그림 8] 참조). 이러한 결과는 협동조합 운동의 전국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함.
- 협동조합 운동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성공사례 및 협력사업모델의 발굴과 전국적 확산’ 은 17명(17.2%),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역할 제고를 위한 역량 구축’ 과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기관 등 효과적 지원체계 정비’ 는 각 15명(15.2%), ‘법제 개선, 기본계획, 예산 운용 등 정책 촉진을 위한 민관테이블 정례화’ 은 14명(14.1%), ‘기초/광역/전국 협동조합연합회 합법체계 구축’ 과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의 실천적 개념과 구상 정립’ 은 각각 13명(13.1%), ‘연대협력 구조와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역동성 증대’ 는 10명(10.0%)이 응답하였음(<표 20> 참조).
- 2순위 응답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 중,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의 실천적 개념과 구상 정립’ 을 선택한 응답자가 22.2%(22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기관 등 효과적 지원체계 정비’ 에 14명(14.1%)이 응답하였고, ‘협동경제 개발과 관리 계획 및 협력 촉진’ 은 12명(12.1%)인 것으로 나타남.
- 복수응답 전체를 종합하면,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의 실천적 개념과 구상 정립’ 에 대한 의견이 17.7%(35명)로 가장 많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8.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이 지역사회 기여에 미치는 영향

<표 65> 지역사회 기여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지역의 경제적 발전				지역의 사회적 발전			
	B	β	VIF	t(p)	B	β	VIF	t(p)
(상수)	1.451			4.511***	1.336			4.210***
정의	0.092	0.117	4.508	0.701	0.065	0.081	4.508	0.497
원칙	0.530	0.524	9.302	2.182*	0.783	0.768	9.302	3.265**
가치	0.007	0.008	9.621	0.031	-0.176	-0.199	9.621	-0.830
<i>F</i>	21.719***				24.059***			
<i>R</i> ²	0.404				0.429			
adj. <i>R</i> ²	0.386				0.411			
<i>Dubin-Watson</i>	2.002				1.755			

* $p < .05$, ** $p < .01$, *** $p < .001$

- 협동조합 정체성의 하위 항목인 ‘협동조합 원칙’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 및 ‘지역의 사회적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21> 참조).
 - ‘협동조합 원칙’의 하위요인과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원칙’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beta = .524, p < .05$)’과 ‘지역의 사회적 발전($\beta = .768, p < .01$)’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즉,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가치’인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것이 크다 할 수 있음.
 - 협동조합 ‘원칙’에 동의하는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경제 발전’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6> 지역사회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학적 특성 통제)

변수		모델1				모델2			
		B	β	VIF	t	B	β	VIF	t
(상수)		3.592			28.397***	1.584			5.620
통제 변수	50대	0.397	0.212	1.157	2.075*	0.120	0.064	1.224	0.767
	이사장	0.248	0.141	1.077	1.425	-0.111	-0.063	1.202	-0.762
	수도권	0.243	0.148	1.168	1.436	0.230	0.140	1.168	1.715
독립 변수	정체성인식					0.560	0.639	1.236	7.622***
N		100				100			
adj. $R^2(R^2)$.103(.130)				.438(.460)			
모델적합도		$F=4.792^{**}$				$F=20.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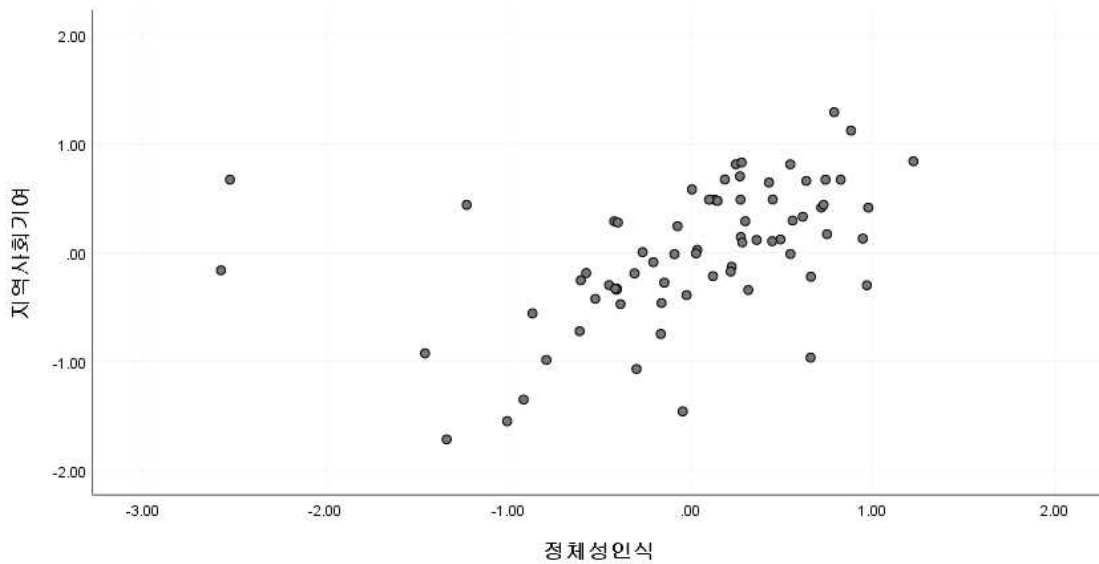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Reference group : 연령; 50대 미만; 60대 이상, 직위; 상임위원, 조합원, 직원, 지역; 비수도권

-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이 지역사회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연령(50대), 직위(이사장), 지역(수도권)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함.
- [모델1]은 연령, 직위, 지역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지역사회 기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델2]는 독립변수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이 지역사회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분석 결과, [모델1] $F=4.792(p<.005)$, [모델2] $F=20.256(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모델1]의 $R^2=0.130$, [모델2] $R^2=0.460$ 으로 R제곱 변화량이 0.130, 0.330 증가함.
 - R제곱 F 변화량($F=58.097$)에 따라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p <.001$).
 - [모델1], [모델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지역사회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정체성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1]에서는 연령(50대)에 따라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을 투입한 [모델2]에서는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의 회

귀 계수 검정 결과, $t=7.622(p < .001)$ 로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 이 ‘지역사회 기여’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델]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령은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 $\beta=0.639$ 로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이 증가하면 지역사회 기여 인식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139] 정체성인식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표 6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구분	내용
제도 및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문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법 개정 - 판로개척 지원 - 자립 가능한 판매촉진 인력지원 -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 법·제도마련을 통한 지원 다양한 협동조합 운영 발굴 지원 - 지역 조례의 제한 해소 - 기본적인 공간과 인력 지원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지원정책 -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혜택의 개편 - 일반상법상법인 세제와 차별화 - 조세제도 특례 -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금 및 금융 조성 - 자조 기금 확충 - 조직의 안정된 재정확대 지원 - 초기 자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도별 주도적 협동조합 담당 인력 지원 - 전달체계의 안정화 - (중앙정부 차원의) 협동조합 종합진흥센터 구축 필요 - 협동조합 발전과 상장을 위해 협동조합진흥원설치 - 민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 간소화 - 서류 간소화 - 설립인가 준비 과정에 지나친 서류보완 등 규제 완화
협동조합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인식 개선 - 협동조합 취지 및 효과 인식 - 협동조합 시민 인식 제고 -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 의식제고 - 사회적인식 개선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자치 능력 향상 - 협동조합 관련 권장도서 목록 작성 - 중소협동조합 도서구입비 지원 - 인재양성 - 협동조합 설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협동조합정신 이해 - 설립 이후 교육과 컨설팅 - 팀기업가 육성
연대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프로젝트 활성화 -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발전 - 협동조합 간에 연대할 수 있는 사업 - 연대 체계 구축 - 공동 사용 가능한 공간 마련 - 협동조합 조직화 - 단합된 모습 - 연대와 상생 - 연합회 활성화 - 협동조합의 상생 - 지역사회 연계방안 마련 - 업종연합회에 실질적으로 단위 조합에 관리 감독권 부여 및 자정기능 부여 - 연합회 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객관적 검증
참여 및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 자율성 보전을 전제로 한 소통 - 자발적인 참여 -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협동조합 - 회계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참고문헌

- 김기태. 2012.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 지역의 역할 찾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과 과제”, 전라북도 협동조합 1차 포럼, pp. 31-42.
- 김형미. 2017. “ICA 협동조합 원칙 지침서 소개.” 생협평론 26, pp. 127-142.
- 유종일. 2020.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정책 과제.
- 정홍준. 2020.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고용노동브리프 제 97호.
- 천관률. 2020. 코로나19 덮친 서울 7주만에 1.6조원 증발. 시사IN 657호.
- 현대경제연구원. 2020. COVID-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 Gertler, M. 2004. Synergy and strategic advantage: Co-operativ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Journal of Cooperatives, 18, pp.32 - 46 .
- Laidlaw, A. F. 1980.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A Paper prepared for the 27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October 1980.
- MacPherson, I. 2012. “Cooperative’s concern for the community: from members towards localcommunities’ interest”, Euricse Working Paper n. 46 | 13
- Szabo, G. G. 2005. "Co-Operative Identity" - A Theoretical Concept for Dynamic Analysis of Practical Co-Operation: The Dutch Case.
- ICA. 2019. A People-Cent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 2020 - 2030.

전국협동조합협의회 DECADE 2030



전국협동조합협의회 · 정책위원회

2030 전국협 정책기조(안)

1 취지

- ◇ 2019 전국협 기본정책 후속 장기정책 입안
- ◇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미션과 비전 구체화
- ◇ 중·장기 전국협의 과제와 목표, 실행전략 수립

2 협동조합운동의 과제

- ◇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및 조직력 강화
- ◇ 성공사례 및 새로운 도전의 확산과 성장
- ◇ 협동조합 연대협력의 실효성 증대
-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발전에 기여

3 정책 방향

- A.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
- B. 협동조합 간 교류와 협력, 도전과 연대의 증진
- C. 협동조합 지원체계 개선 및 민·관협치 증대
- D.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 모델 정립

4 실행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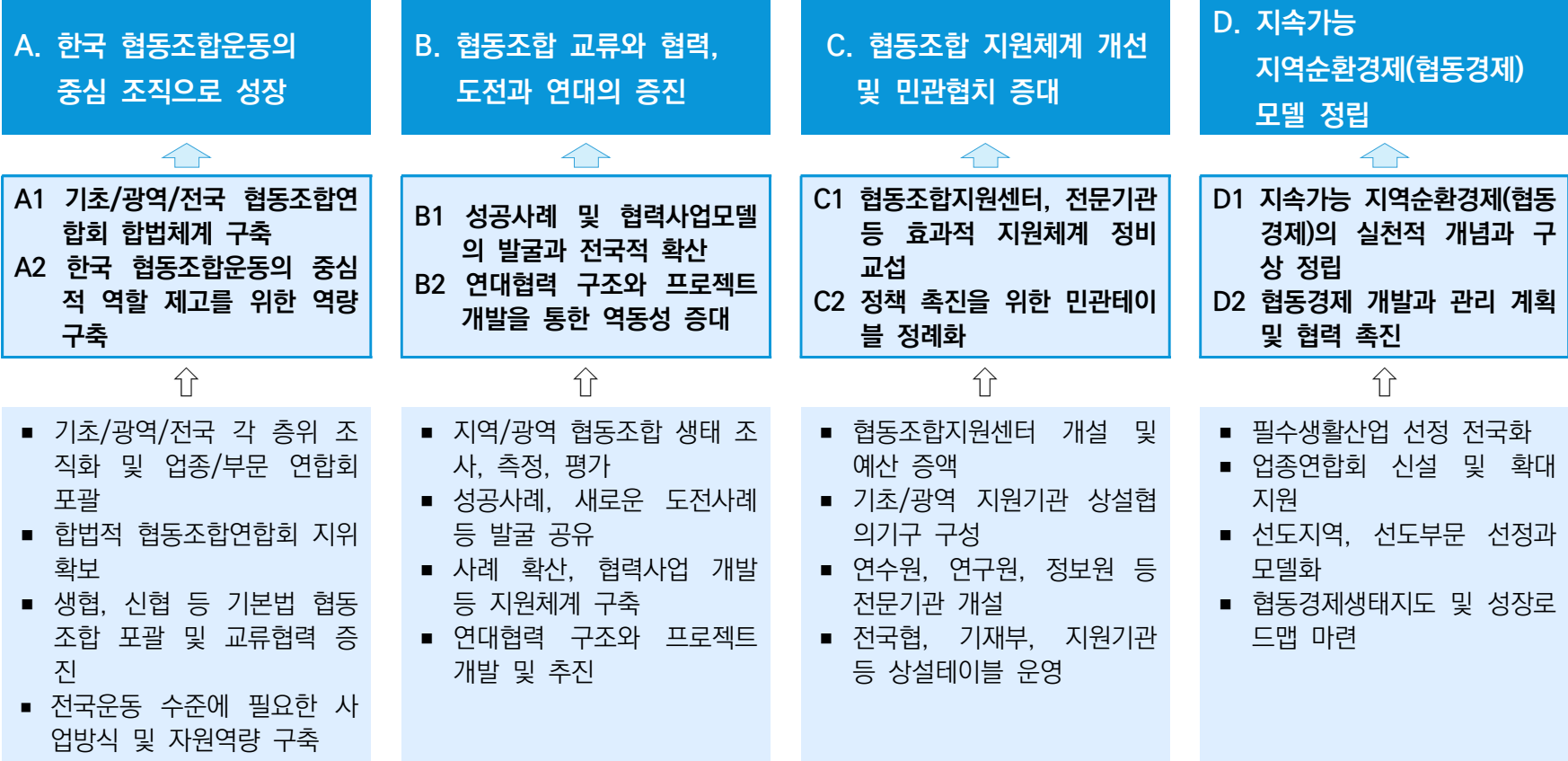
- A1. 기초/광역/전국 협동조합연합회 합법체계 구축 (개별법 포괄)
- A2.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역할 제고를 위한 역량 구축
- B1. 성공사례 및 협력사업모델의 발굴과 전국적 확산
- B2. 연대협력 구조와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역동성 증대
- C1.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기관 등 효과적 지원체계 정비 교섭
- C2. 법제개선, 기본계획, 예산운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
- D1.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의 실천적 개념과 구상 정립
- D2. 지역과 부문을 연계한 협동경제 개발계획 마련 및 협력 촉진

수 슬로건

- ◇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 ◇ 사람과 지역을 지키는 협동조합, 전국협동조합협의회
- ◇ 더 나은 사회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 협동조합 협동경제

전국협 DECADE 2030

협동조합운동의 발전 및 협동경제 조성



전국협 DECADE 2030 해설

4. 배경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구축이 요구됨.
 -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상황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역할은 더욱더 주목 받고 있음.
 - 전국협은 창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인식과 안목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을 구축해야 함.

- ICA 및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제도 및 정책 등의 현황
 - ICA는 협동조합 디케이드 2020-2030을 통해 ‘정체성 강화’, ‘협동조합운동의 성장’, ‘협동조합 간 협동’, ‘세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등 향후 10년간 주력해야 할 협동조합 4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표 1〉 참조).
 - 그리고 현장의 요구와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지역사회 중심 운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의 내실화’ 등 크게 5개 주제로 협동조합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그림 1〉).
 - 한편,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우선출자제 허용’, ‘신고, 인가, 해산 등의 간주제’를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법령에 대한 적절한 활용과 대처가 필요함.
 - 2020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수립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경제정책기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측됨. 이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사업 기회 증진과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정책인 뉴딜정책과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회적경제 관련 영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요구됨.
 - <전국협 기본정책>은 전국 협동조합을 포괄하고 대변하는 전국 협동조합 조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들을 정리

- 반면, <전국협 DECADE 2030>은 전국협이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심 조직으로의 전망을 분명히 하고 그에 부합하는 과제와 목표, 전략 등을 정리하였음.

〈표 70〉 ICA 협동조합 디케이드 2020-2030

A. 협동조합 정체성 촉진	
A1.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강화
A2.	협동조합 정체성을 보존하는 규정 촉진
A3.	소통과 연대 관련 정체성 제고
A4.	협동조합 교육 촉진
A5.	국제정책 아젠다에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A6.	협동조합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ISO 인증 론칭
B. 협동조합 운동의 성장	
B1.	ICA 멤버십의 성장과 참여 촉진
B2.	ICA 단위 간 심화
B3.	세계 파트너십과 연맹 확대 및 심화
B4.	협동조합 운동의 정책 영향 심화
B5.	협동조합 운동의 글로벌 지식 발전
B6.	협동조합 운동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B7.	청년 참여 확대
B8.	성평등 촉진
B9.	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심화
B10.	협동조합 간 협동 기금 건설
C. 협동조합 간 협동	
C1.	지식 구축 및 교환
C2.	대규모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그룹의 공동 행동 강화
D. 세계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D1.	SDGs에 협동조합의 기여에 대한 지표 정의
D2.	SDGs에 협동조합의 기여에 대한 리포트
D3.	SDGs에 기반한 옹호 발전
D4.	협동조합의 국제 발전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운동의 이니셔티브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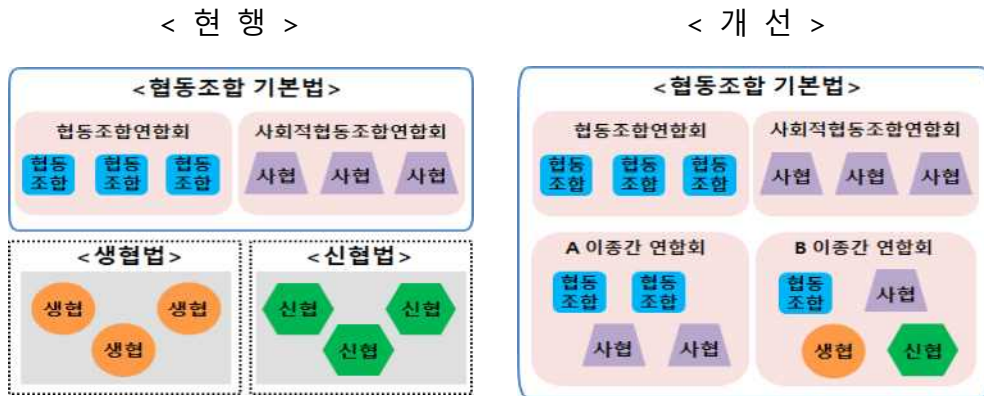


[그림 6]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협력 촉진

- 이종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시행령 마련 예정



- ②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우선주 개념)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의 30% 이내로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만 우선출자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예정

- ③ 협동조합 신고수리·설립인가 등*에 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유도하고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변경 신고 등 7개 신고사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정관변경 인가,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등 11개 인가사무

** 처리기간 내 신고수리(인가)여부 또는 지연사유未통지 경우, 기한종료 다음날 신고수리(인가)로 간주

*** 법원행정처가 최후등기 후 5년 경과 조합 대상으로 영업폐지 여부 확인 후, 2개월내 미신고시 해산간주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근로자 고용 안정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전망 강화

【고용안정사각지대해소】

① 고용보험사각지대에있는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위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월50만원× 3개월) 지급(3차추경)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 등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

* 예비비(1조원)으로 6.1일부터 접수 후 2주일 내 1차분(100만원) 지급 및 3차 추경 통과후 2차분(50만원) 지급

②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안전망 강화

■ 플랫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거리 확보를 지원

* 사회적기업진입지원,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 등을 통해 플랫폼 협동 주의를 추구하는 혁신리더 발굴 및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개발 지원

■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및 공제사업 활성화(‘20.下, 가이드 라인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등 통해 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 등 지원, 공유 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공제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돌봄, 주택, 의료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지원 확충

【아이돌봄 부담 경감】

○ 지역공동체내 돌봄서비스 주민조합 구성을 통한 돌봄 수요 대응

■ 보육, 노인, 온종일 돌봄 등 공적 돌봄사업의 틈새 지원*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서비스(이동, 공간, 프로그램) 지원

* (현행) 돌봄 사각지대 존재(시간, 지역 등) → (개선) 돌봄 사각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 돌봄조합 모델 표준화 및 확산, 공적 돌봄사업 간 연계 추진

5. 협동조합운동의 과제

①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및 조직력 강화

- 현재 전국 협동조합 운동 경험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지 못함.
 - 전국 협동조합 조직이 구성되었지만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점과 방법론, 미래상 등에 대한 통일된 견해와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연대와 협력에 대한 경험과 사례가 아직은 미흡하며, 조직, 재정,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전국협동조합운동의 중심 조직으로서의 준비와 자격은 많이 부족한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전국 조직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전국협'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야 함.
 - 전국협은 협동조합 관련 기구와 기관들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운동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 가급적 모든 지역과 업종, 부문의 조직을 포괄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 한 가지라도 전국적 규모의 통일된 결정과 행동이 작동되도록 하여 명칭 그대로 '전국' 조직답게 운영되는 체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전국협의 역량 및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전국협 스스로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높이고 원칙에 충실하며
 - 다양한 도전적인 프로젝트와 연대협력 활동들이 전국조직의 기반과 연계성 위에서 진행될 때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 이를 통해 전국협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기능을 고도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함.

② 성공사례 및 새로운 도전의 확산과 성장

-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협동조합은 각각의 개별성과 여러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동

일한 원리를 가지고 작동되는 보편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보편적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협동조합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야 함.

□ 협력과 연대를 통해 균형적 발전 추진

- 공통적인 필요와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전개되는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 추구
- 또한 여러 제약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미개척된 영역에 대한 도전 촉진

□ 협동조합 가치에 기반한 운동의 중심 조직과 더불어 그와 정합된 활동 결합 및 증진

- 현존하는 협동조합들의 이해와 요구를 병렬적인 수준에서 대변하는 이해집단이 아니라 미래의 협동조합 영토를 꿈꾸며 역동적인 도전들을 지지하고 협력적 성취를 확산하는 협동조합운동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이 됨.

③ 협동조합 연대협력의 실효성 증대

□ 유효한 연대협력 구조와 콘텐츠 창출 및 활성화

- 당위적이고 구호적인 연대협력의 수준을 넘어 실효적인 연대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효한 연대협력의 구조와 콘텐츠를 창출하고 활성화 해야 함.

□ 연대협력을 위한 학습과 실천 병행

- 아직은 연대협력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합의, 성공체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연대협력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면서 연대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을 통해 실행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학습과 실천을 의식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함.

□ 연대협력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전략 수립

- 실효적인 연대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협의 계획과 전략을 보유해야 함.

- 이를 위해 법제 및 정부 정책과 지원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기획
- 연대협력의 성공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적 협동조합 지원체계와 민·관협치가 중요

□ 협동조합 운동 발전을 위한 환경 체계 구축

- 운동의 중심조직과 성공사례 및 새로운 도전들의 확산과 성장을 위한 활동에 더불어 효과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법론과 이에 대한 지원 환경의 구축은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임.

4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발전에 기여

- 협동경제를 조성하는 것은 전국협이 정관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이지만 협동경제에 대한 정의나 내용, 방안을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협동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현장에 도움되는 실천적 수준의 협동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유익하고 필요함.

- 따라서 협동경제와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위한 노력 필요

-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 원칙들을 종합해 볼 때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는 협동경제의 외연으로 포섭할 만한 의의가 있음.
-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이 약화되고 로컬라이제이션(지역화)의 강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이러한 계기를 통해 협동경제와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를 약진시키고 공통점을 부각하는 노력이 필요 함.

-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교육, 주거, 건강, 교통, 에너지, 식품 등 생활필수 산업에서 보편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또한,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가 갖는 특성에 기반한 개성적인 협동조합 및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창출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 속에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제들을 부각하여 협동경제의 존재를 실증해나가고 경제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음.
- 협동경제가 주는 효과와 파급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협동조합운동의 본령이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대안으로 성장해 나가는 필수적 과정임.

6. 정책 방향

A.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

- 전국협을 합법적인 한국 협동조합운동 중심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사업, 기능과 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B. 협동조합 간 교류와 협력, 도전과 연대의 증진

- 전국협을 협동조합들의 전국적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 도전을 확대하는 연대협력의 구조와 프로젝트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C. 협동조합 지원체계 개선 및 민관협치 증대

- 전국협은 협동조합 연대협력의 촉진, 협동경제의 성장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민·관협치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D.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 모델 정립

- 전국협은 협동경제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 모델에 따른 계획과 구상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실행 전략

A.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조직으로 성장

□ 실행 전략

- A1. 기초/광역/전국 협동조합연합회 합법체계 구축
- A2.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역할 제고를 위한 역량 구축

□ KSF

- 기초/광역/전국 각 층위 조직화 및 업종/부문 연합회 포괄
- 합법적 협동조합협의회 지위 확보
- 생협, 신협 등 기본법 협동조합 포괄 및 교류협력 증진
- 전국 운동 수준에 필요한 사업방식 및 자원역량 구축

B. 협동조합 교류와 협력, 도전과 연대의 증진

□ 실행 전략

- B1. 성공사례 및 협력사업모델의 발굴과 전국적 확산
- B2. 연대협력 구조와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역동성 증대

□ KSF

- 지역/광역 협동조합 생태계 조사, 측정, 평가
- 성공사례, 새로운 도전사례 등 발굴 및 공유
- 사례 확산, 협력사업 개발 등 지원체계 구축
- 연대협력 구조와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C. 협동조합 지원체계 개선 및 민·관 협치 증대

□ 주요 전략

- C1.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기관 등 효과적 지원체계 정비
- C2. 법제 개선, 기본계획, 예산 운용 등 정책 촉진을 위한 민관테이블 정례화

□ KSF

- 협동조합지원센터 개설 및 예산 증액
- 기초/광역 지원기관 상설협의기구 구성
-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등 전문기관 개설
- 전국협, 기재부, 지원기관 등 상설테이블 운영

D.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 모델 정립

□ 주요전략

- D1. 지속가능 지역순환경제(협동경제)의 실천적 개념과 구상 정립
- D2. 협동경제 개발과 관리 계획 및 협력 촉진

□ KSF

- 필수생활산업 선정 전국화
- 업종연합회 신설 및 확대 지원
- 선도 지역 및 선도 부문 선정과 모델화
- 협동경제생태지도 및 성장로드맵 마련

8. 실행전략의 추진

- 전국협은 2030정책기조에 따라 임원 임기에 따른 기간 또는 기본계획 시행 기간에 조응하여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매년 정책목표를 수립하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사람중심의 협동조합 두 번째 10년 전략 2030

국제협동조합연맹(ICA)

A People-Cent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 2020 – 2030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 두 번째 10년 전략 2030

이 문서는 2019년 10월 17일 키갈리의 ICA 총회에서 검토 할 예정이다.

이는 ICA member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이 승인되면 이 과정은 2020년 서울 Congress에서 최종 문서 발표로 마무리 될 것이다.

SECTION 1 세계가 직면해 있는 ICA의 목적과 사명;

SECTION 2 새로운 10년동안 협동조합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SECTION 3 2030까지 지속하기 위한 목적은 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에서 시작된 비전;

SECTION 4 제시되고 있는 Strategic Plan의 4가지 테마와 Blueprint의 5가지 골자 간의 연관성;

SECTION 5 각 테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목표를 정의하며, 운용 업무 계획으로 번역할 구체적인 전략 시책을 기술한다.

① ICA의 목적과 미션 vs. 새로운 10년의 세계 과제

ICA의 목적:

- 상호자조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세계 협동조합 운동 촉진;
-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촉진하고 보호;
- 회원 조직 간의 경제 및 기타 상호 유익한 관계의 발전을 촉진;
-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기여; 그리고
- 협동조합 운동 내의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촉진한다(ICA 정관 제1조).

오늘날 협동조합 운동의 최대 장점은 전세계적인 범위, 즉 모든 지역에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섹터적 특성, 그리고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ICA를 통해, 협동조합 운동은 잘 정의되고, 잘 연계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반면 협동조합운동의 최대 약점은 ICA 세계 네트워크 내에서조차 협동조합들 간의 협력이 제한적이며,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원 공유 이행이 한정적이며, 대규모 협동조합들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협동조합에게 중요한 기회들이-협력에 대한 새로운 기회; 차세대 정보 기술 및 공통 IT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연계 및 정보 공유; 포괄적 협동조합 네트워크 내에서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및 연대 경제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협동조합 확장과 영향력 증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ICA는 교육, 연구 및 협력을 통해 그러한 기회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다음의 조직 미션을 재확인한다:

ICA는 전세계 협동조합을 통합하고, 대표하며 지원한다. 그것은 협동조합의 원칙 및 가치의 수호자이며, 독특한 가치에 기반한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례를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자조의 도구로 개인과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그들의 발전 전반에 영향을 준다. ICA는 협동조합의 이익과 성공을 옹호하며, 모범사례와 지식을 전파하며, 역량 구축을 강화한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ICA 정관 제1조).

우리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우리는 소득 불평등 및 성 불평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이주민과 이재민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시급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우리는 전세계 협동조합 운동에 청년 참여 및 더 큰 확대를 추구한다.
- 디지털 전환은 협동조합의 미래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협동조합은 잠재적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섹터의 불안정과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 세계 거버넌스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정치 및 경제 조직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관찰된다.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정치와 규제가 협동조합의 법적 프레임워크(framework)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역사적 약속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품위 있는 일자리 그리고 일의 미래에서 기술의 역할에 중점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세계인구 증가 및 식량안보를 위해 협동조합은 실질적 기여를 위해 수십억의 식량을 공급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협동조합이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건강 그리고 주거와 일자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을 기반으로 구축된 2020-2030 ICA 전략 계획은 이러한 도전과 우려를 사전 예방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Blueprint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ICA는 확실히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제시된 도전에 대한 모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개인사회,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업 방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그 길을 인도해야 한다. (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p. 36)

② 새로운 10년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 연대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는 여전히 진실이다. 투자자 소유의 영리조직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그 문화에 통합될 수 없다.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선언'에는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네 가지 윤리적 가치도 포함 되어 있다. 영리 투자자 소유 기업은 이 네 가지 윤리적 가치를 구현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협동조합 가치의 힘과 설득력의 증거는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헌신은 오늘날 찢어지고 분열된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진정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표하는 조직들 전체에 그 정체성이 스며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협동조합으로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사업 형태와 대안적 접근방식과 비교할 때 우리와 무관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③ 2030으로 확장된 지평, 협동조합 10년에 대한 청사진의 비전

현재의 전략계획은 협동조합 10년 청사진에 표현된 2020년 비전을 인정하고 2030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본 비전은 다음과 같다. 이 청사진(비전 2020)의 야심찬 계획은 2020년까지 협동조합 비즈니스 형태가 되는 것이다.

1.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있어 인정 받는 리더
2.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델
3.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형태

(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p.3).

새로운 10년의 끝까지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전의 첫 번째 part에서는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와 230개의 지표(Indicators)로 구성된 17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체계를 제공한다. 단, 협동조합에 대한 적용 필요성은 뒷부분에서 다룬다 (아래 전략계획서 D.1. 참조). 두 번째 part에서

는 협동조합이 실제 선호되는 모델임을 입증하기 위한 정확한 지표를 정의할 것이다 (아래 B.5 참조). 세 번째 part에서는 협동조합의 성장 의미를 규정하는 지표를 개발한다(아래 B.9 참조).

④ 전략 계획의 4가지 핵심 테마 vs. Blueprint의 다섯 개의 기둥

2020-2030 전략 계획의 4가지 핵심 테마와 5개의 Blueprint 기둥 간에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촉진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진술이 모든 협동조합, 특히 ICA 회원들에 의해 더 잘 이해되고 내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청사진의 정체성 기둥을 확대하고 확장한다. 새로운 주제 역시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특성을 입법 및 규제에 인식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법적 틀의 기둥으로 확대 및 확장한다.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은 Blueprint 법적 틀과 금융의 기둥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계속 다루는 것에 달려 있다. 두 기둥 모두 ICA 멤버십 확대 및 다양한 섹터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창립되는 것을 지원하는 기본이 된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세계 네트워크에서 협동조합 간 그리고 부문 조직 간의 더 나은 조화와 참여를 위한 필요성에 중점을 둔 Blueprint의 참여형 기둥 위에서 확대 및 확장된다. 2020-2030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많은 사람들은 ICA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핵심으로 상호협력의 현저하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는 UN의 2030 SDG에 대한 강력한 협력적 기여로 재도약함으로써 Blueprint의 지속가능한 기둥(Sustainability pillar of the Blueprint)에 까지 확대 및 확장된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협동조합 기업의 3개의 하위 line을 포괄한다.

⑤ 전략 계획

A. 협동조합 정체성 촉진

ICA의 목적 참조: 협동조합 가치 및 원칙 촉진과 보호

개념

협동조합 정체성은 1995년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명시된 것으로 정의와 함께 가치와

원칙으로 구성된 틀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없다면 협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단일 국제 모델로서의 세계적 인식, UN과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략 목표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인식: 우리는 협동조합이 기업가적 모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풀뿌리 능력의 발현이라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입법자, 규제자, 정부, 국제기구, 일반 대중, 청소년, 언론 등에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적극 홍보하고 옹호해야 한다.

제도적 지원: 우리는 세계적 기관이 협동조합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추구한다. 이것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포함하여(협동조합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들의 목표, 프로그램, 방법론을 통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교육: 협동의 배제와 협동조합 정체성은 전 지구적 모든 레벨의 교육 시스템 즉 비즈니스,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철학 및 개발 및 환경학 뿐만 아니라 기타의 학문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협동조합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커리큘럼에서 기본이 되어야 한다.

대응전략 이니셔티브(INITIATIVES)

A.1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강화

A.2 협동조합 정체성을 보존하는 규정 촉진

A.3 소통과 연대 관련 정체성 제고

A.4 협동조합 교육 촉진

A.5 국제 정책 아젠다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A.6 협동조합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ISO 인증 론치(Launch)

B. 협동조합 운동의 성장

ICA 목표 : 상호 자조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세계 협동조합 운동 촉진

개념

이 전략 테마는 협동조합 운동의 내생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ICA 내의 국제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4 가지 테마 중 가장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전략 목표

협동조합운동 강화 : 성평등과 세대간 전승(transmission)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의 참여, 옹호, 파트너십, 연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대와 성장을 위한 협동조합 운동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성장의 정의 : 협동조합 기업가정신에서 성장은 단순한 성장이 아닌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자율적인 멤버십 조직으로서 협동조합 기업 내 성장의 고유한 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협동조합 운동의 내생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동시에, 우리의 운동을 하는 멤버들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well-being)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혁신적인 역량 : 우리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시장,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협동조합 운동의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대응 전략 이니셔티브

B.1 ICA 멤버십의 성장과 참여 촉진

B.2 ICA 단위(entities) 간 심화

B.3 세계 파트너십과 연맹 확대 및 심화

B.4 협동조합 운동의 정책 영향 심화

B.5 협동조합 운동의 글로벌 지식 발전

B.6 협동조합 운동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B.7 청년 참여 확대

B.8 성평등 촉진

B.9 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심화

B.10 협동조합 간 협동 기금 건설

C. 협동조합 간 협동

ICA 목표 : 회원 조직 간의 경제 및 기타 상호 호혜적 관계 발전 촉진

개념

이 테마는 협동조합 운동의 존재를 위한 핵심 조건이다

전략 목표

공통 관심사에 대한 사전 확인

데이터 :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활용으로 가치창출을 위한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 전반에 걸쳐 협력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 : 리더십을 수행하고 새로운 연계의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협동조합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협동조합을 장려해야 한다.

대응전략 이니셔티브

C.1. 지식 구축 및 교환

C.2. 대규모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그룹의 공동 행동 강화

D. 세계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ICA 목적 :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촉진하고 사람의 경제 및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여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기여

개념

이 테마는 협동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다 :

전략 목표

모니터링:

리포트:

발전 촉진:

대응전략 이니셔티브

D.1. SDGs에 협동조합의 기여에 대한 지표 정의

D.2. SDGs에 협동조합의 기여에 대한 리포트

D.3. SDGs에 기반한 옹호 발전

D.4. 협동조합의 국제 발전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운동의 이니셔티브 심화

최종 고려 사항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Blueprint와 같이 이 문서에서 제안된 이니셔티브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의해 점점 더 표현되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요구에 해당된다. 이는 지속 가능성과 사람의 관심사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되어야만 한다.

협동조합 모델은 민주적인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욕구(needs)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실험된 방법이다.

세계 인구의 약 12%가 협동조합 멤버이지만 대부분은 협동조합 운동의 힘과 잠재력 또는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세계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한 우리 각자 인류와 공통의 지구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작동하도록하는 데있어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한다.